중국농업동향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2009 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농업동향」은 중국 농업정책, 농업·농촌경제의 주요지표 등 중국농업 전반에 관한 최신 동향을 수집·분석하여 일반인, 농업종사자, 정책담당자 및 중국 농업 연구자들이 유익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분기별로 작성하여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 동향자료는 1년에 4회, 봄, 여름, 가을, 겨울호로 작성되어 발간됩니다.

이 동향자료는 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krei.re.kr "중국농업정보"

담당자 및 내용문의: 전형진 hjchon@krei.re.kr

TEL 02-3299-4324 / FAX 02-968-7340

남민지 mj0801@krei.re.kr TEL 02-3299-4359

중국농업동향 2009 봄호(제2권 제1호)

Ⅰ. 농업정책 브리핑	
 2009년도 1/4분기 주요 농업정책 동향 2009년도 농정방향과 시사점 농촌소비 확대 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농산물 지리적 표시제 실시 현황 및 전망 	3 17 32 46
Ⅱ. 농업·농촌경제 동향	
 □ 가격 동향 □ 무역 동향 □ 소득 동향 □ 고추·마늘시장 동향 ■ 축산물 수급 현황과 전망 	67 79 82 84 89
Ⅲ . 농정연구 이슈	
■ 중국 농촌의 집단토지소유권제도 운영 실태 분석	97
 IV. 정책자료 ■ 2009년 '중앙 1호 문건' 전문 ■ 『식품안전법』 전문 ■ 《전국 토지이용 총계획 요강(2006~2020년)》 	115 130 153
V. 농업통계	181

I. 농업정책 브리핑

- ■2009년도 1/4분기 주요 농업정책 동향
 - 2009년도 농정방향과 시사점
- 농촌소비 확대 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농산물 지리적 표시제 실시 현황 및 전망

2009년도 1/4분기 주요 농업정책 동향

□ 6년 연속 삼농문제 주제 '중앙 1호 문건' 발표

-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농업·농촌문제를 주제로 한 '중앙 1호 문건'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2004년부터 연속 6년째임.
 - 올해 '중앙 1호 문건'은 2009년도 농정 방향과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농업의 안정적 발전과 농민소득 증대를 주제로 하고 있음.
- 2009년 '중앙 1호 문건' 제목: "2009년도 농업의 안정적 발전과 농민소득 증대를 촉진하기 위한 약간의 의견(中共中央,國務院《關於2009年促進農業穩定發展農民持續增收的若幹意見》; 中發[2009] 1號)"
- 2009년 '중앙 1호 문건'은 ①농업에 대한 지원 및 보호 강화, ②농업생산의 안정적 발전, ③농업현대화를 위한 지원 및 서비스 체계 강화, ④농업경영제도의 개선 및 안 정, ⑤도농 통합발전 등 5가지의 2009년 농정 목표와 28가지 중점 정책과제를 제시 하였음.('Ⅰ. 농업정책 브리핑'참조)

□『식품안전법(食品安全法)』제정

- 『식품안전법』이 2009년 2월 28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 를 통과하여 공포되었으며,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식품안전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식품안전 위험모니터링과 평가, 제3장 식품안전 표준, 제4장 식품 생산·경영, 제5장 식품 검사, 제6장 식품 수출입, 제7장 식품 안전 사고 처리, 제8장 관리감독, 제9장 법률책임, 제10장 부칙 등 총 10장 104조로 구성

^{*} 작성: 전형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hjchon@krei.re.kr)

되어 있음.(법률 전문은 'IV. 정책자료' 참조)

- 『식품안전법』은 1995년 제정되어 식품안전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규정하였던 『식품 위생법』의 대체 법률임.
-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 중국산 식품의 안전문제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중국 정부는 식품안전 관련 법률과 법규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2004년부터 『식품위생법』개정에 착수한 후 약 4년 동안의 논의를 거쳐『식품위생법』을 대체하여 『식품안전법』을 제정하였음.
 - 2004년 7월 21일 국무원 제59차 상무위원회와 2004년 9월 1일자 국무원 명의의 문건(國務院《關於進一步加強食品安全工作的決定》; 國發[2004]23號)을 토대로 국무원 법제반(法制辦)은 『식품위생법』수정 영도소조(領導小組)를 구성하고 개정에 착수하여 『식품위생법수정(초안)』을 마련하여 각계 의견을 수렴하였음.
 - 국무원 법제반은 각계 대표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식품위생법수정(초안)』을 『식품안전법(초안)』으로 변경하였으며 2007년 10월 31일 국무원 상무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 확정한 후 2008년 4월 15일 초안 전문을 사회에 공표하고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2009년 2월 28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음.1
- 국무원 판공실은 2009년 6월 1일 『식품안전법』시행을 앞두고 3월 4일 '식품안전법 의 충실한 관철 및 시행에 관한 통지'2를 각 지방정부에 하달하였음.
- 국무원 법제반은 2009년 4월 24일 『식품안전법실시조례(초안)』 전문을 사회에 공포하고 5월 4일까지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용을 확정하여 2009년 6월 1일부터 『식품안전법』과 동시에 시행될 예정임.

^{1 『}식품안전법』 제정 동향과 관련한 좀 더 자세한 내용과 『식품안전법(초안)』은 『중국농업동향』 제1권 제1호 'I. 농업정책 브리핑'과 'IV. 정책자료'참조

² 國務院辦公廳《關於認真貫徹實施食品安全法的通知》;國辦發[2009]25號

□ 『농촌토지도급경영분쟁중재법(農村土地承包經營糾紛仲裁法)』제정 예정

-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는 2008년 12월 27일 『농촌토지도급경 영분쟁중재법(초안)』 전문을 사회에 공표하고 2009년 2월 15일까지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안을 최종 제정할 예정임.
- 『농촌토지도급경영분쟁중재법(초안)』은 제1장 총칙, 제2장 중재기구와 중재원, 제3 장 신청 및 처리, 제4장 중재법정, 제5장 법정 개정과 중재 판결, 제6장 부칙 등 총 6장 45조로 구성되어 있음.

□ 축산업 비교우위지역 배치계획(2008~2015년)

- 중국 농업부는 2003년 1월 29일 총 11개 품목(쌀, 밀, 옥수수, 대두, 면화, 유채, 사 탕수수, 사과, 감귤, 돼지, 젖소)이 포함된 '비교우위 농산물 지역배치 계획 (2003~2007년)'3을 발표하고 시행한데 이어, 2008년 8월 22일 총 16개 품목(기존 11개 품목에 육우, 양, 수산물, 감자, 천연고무 추가)이 포함된 '전국비교우위 농산물 지역배치 계획(2008~2015년)'4을 발표한 바 있음.
- 중국 농업부는 2009년 1월 24일 '전국 육우, 양, 젖소 및 돼지 비교우위지역 배치계 획(2008~2015년)에 관한 통지'5을 통해 '전국비교우위 농산물 지역배치 계획 (2008~2015년)'에 포함된 4개 축종에 대한 구체적인 배치계획을 발표하였음.

1. 육우

- 육우 비교우위지역은 중원(中原), 동북(東北), 서북(西部), 서남(西南) 4개 지역으로 구분하며, 총 17개 성(자치구·직할시) 207개 현(縣)·시(市)를 포괄함.
- 207개 현·시는 2007년도 전국 육우 사육두수와 생산량의 35.0%와 40.7% 차지

³ 農業部《關於引發《優勢農產品區域布局規劃(2003-2007年)》的通知》;農計發[2003]1號

⁴ 農業部《關於引發《全國優勢農產品區域布局規劃(2008-2015年)》的通知》,農計發[2008]20號

⁵ 農業部《關於日發全國內牛內羊奶牛和生豬優勢區域布局規劃(2008-2015年)的通知》;農牧發(2009)2號

중국농업동향

○ 중원 육우지역

- 4개 성 51개 현: 산동성 14개 현. 하남성 27개 현. 하북성 6개 현. 안휘성 4개 현
- 경진익(京津冀)6. 장삼각(長三角)7. 환발해(環勃海)8 경제권을 위한 우육 생산기지 조성

○ 동북 육우지역

- 5개 성(자치구·직할시) 60개 현: 길림성 16개 현, 흑룡강성 17개 현, 요녕성 15개 현, 내몽고자치구 7개 현(旗) 및 하북성 북부 5개 현
- 북부지역 주민의 우육 소비수요 충족, 일본, 한국 및 러시아 등 주변국가 시장개척

○ 서북 육우지역

- 4개 성(자치구·직할시) 29개 현: 신강위그루족자치구 16개 현, 감숙성 9개 현(시), 섬서성 2개 현, 영하회족자치구 2개 현(旗)
- 서북지역 주민의 우육 소비수요 충족, 이슬람(淸眞) 우육 생산을 위주로 하며 중앙 아시아와 중동지역으로의 고품질 우육 생산

○ 서남 육우지역

- 5개 성(자치구·직할시) 67개 현(시): 사천성 5개 현, 중경시 3개 현, 운남성 35개 현(시), 귀주성 9개 현(시), 광서장족자치구 15개 현(시)
- 서남지역의 우수 우육 생산 및 공급기지 건설

2. 젖소

○ 젖소 비교우위지역은 대도시 교외지역(북경시, 상해시, 천진시), 동북지역(흑룡강성, 요녕성, 내몽고자치구), 화북지역(하북성, 산서성, 하남성, 산동성), 서북지역(신강위 그르족자치구, 섬서성, 영하회족자치구) 등 4개 지역으로 구분하며, 총 13개 성(자치구·직할시) 313개 현(목장) 포괄

⁶ 북경시, 천진시, 하북성의 석가장(石家莊), 당산(唐山), 승덕(承德), 장가구(張家口), 보정(保定), 랑방(廊坊), 진황도(秦阜島), 창주(滄州), 한단(邯鄲), 형대(邢台), 형수(衡水) 등을 포함하는 경제권

⁷ 상해시, 소주(蘇州), 무석(無錫), 남경(南京), 합비(合肥), 회안(淮安) 등을 포함하는 경제권

⁸ 천진시, 하북성, 산동반도(山東半島)를 포함하는 경제권

○ 대도시(京津滬) 젖소지역

- 북경시, 상해시, 천진시 근교지역 17개 현 포함. 2007년 현재 17개 현의 젖소 사육 두수와 우유 생산량은 각각 33.9만 두, 131.6만 톤으로 전국 사육두수와 생산량의 2.5%와 4.1% 차지
- 젖소 사육두수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젖소의 평균 단수를 2015년까지 6.5톤에 서 7.5톤으로 제고. 기계화 집유 및 규모화 사육, 낙농업 현대화 실현. 대도시시장에 우유 공급 보장

○ 동북-내몽고 젖소지역

- 흑룡강성, 요녕성 및 내몽고자치구의 117개 현(목장) 포함. 2007년 현재 117개 현
 (목장)의 젖소 사육두수와 우유 생산량은 각각 471.1만 두, 1,332.1만 톤으로 전국 사육두수와 생산량의 34.6%와 41.7% 차지
- 2015년까지 젖소 사육두수 730만 두(연평균 증가율 5%), 우유 생산량 2,700만 톤(연평균 증가율 8%), 평균 단수 6.3톤으로 증대

○ 화북 젖소지역

- 하북성, 산서성, 하남성, 산동성의 111개 현(목장) 포함. 2007년 현재 111개 현(목장)
 의 젖소 사육두수와 우유 생산량은 각각 294.2만 두, 1,654.9만 톤으로 전국 사육두수와 생산량의 21.6%와 20.5% 차지
- 2015년까지 젖소 사육두수 540만 두(연평균 증가율 7%), 우유 생산량 1,700만 톤 (연평균 증가율 10%), 평균 단수 3.7톤에서 5.5톤으로 증대

○ 서북 젖소지역

- 신강위그루족자치구, 섬서성, 영하회족자치구의 68개 현(목장) 포함. 2007년 현재 68개 현(목장)의 젖소 사육두수와 우유 생산량은 각각 250.9만 두, 352.6만 톤으로 전국 사육두수와 생산량의 18.4%와 11.1% 차지
- 2015년까지 젖소 사육두수 390만 두(연평균 증가율 5%), 우유 생산량 800만 톤(연 평균 증가율 9%), 평균 단수 1.4톤에서 3.3톤으로 증대

3. 돼지

- 돼지 비교우위지역은 연해지역(강소성, 절강성, 광동성, 복건성), 동북지역(흑룡강성, 요녕성, 길림성), 중부지역(하북성, 산동성, 안휘성, 강서성, 하남성, 호북성, 호남성), 서남지역(광서장족자치구, 사천성, 중경시, 운남성, 귀주성) 등 4개 지역으로 구분하며, 총 19개 성(자치구·직할시) 437개 현 포괄
- 437개 현의 2007년도 돼지 사육두수와 도축두수는 각각 2.2억 마리와 3.2억 마리 로 전국 사육두수와 도축두수의 50%와 56% 차지. 이들 지역의 1인당 도축두수는 0.97마리로 전국 평균 0.42마리의 2.3배
- 연해(沿海) 돼지 생산지역
 - 강소성, 절강성, 광동성, 복건성의 55개 현
 - 주변에 홍콩, 동남아 등 전통적인 돼지고기 무역 지역과 인접하고 있으며, 돼지사육 여건이 좋고, 규모화 및 집약화 수준이 높으며 시장경쟁력이 비교적 높은 수준. 일정 수준의 자급률을 유지하는 가운데 수출기지를 조성하여 수출 증대에 주력

○ 동북 돼지 생산지역

- 흑룡강성, 요녕성, 길림성의 30개 현
- 동북지역은 옥수수 주산지로 사료자원이 풍부하며 생산비가 낮고 생산의 규모화, 조 직화 수준이 높음. 또한 돼지가공업이 발전하여 국내 유명기업의 가공기지 위치
- 높은 가격경쟁력을 발휘하여 고표준의 생산기지 조성, 대규모 기간기업 육성, 가공 기술 개발 등으로 북경시, 천진시 등 대도시로의 출하 확대 및 대 러시아 수출 확대

○ 중부 돼지 생산지역

- 하북성, 산동성, 안휘성, 강서성, 하남성, 호북성, 호남성의 226개 현
- 중국의 전통적인 돼지 생산지역이자 식량 주산지. 식량자원이 풍부하여 돼지 생산량 및 출하량이 많은 것이 특징. 또한 지역 인구가 많아 소비시장의 잠재력이 크고 주변에 상해시, 광동성 등 경제가 발달한 연해지역이 인접하여 시장규모가 큼.
- 전통적인 사육방식 개선 및 농업과 축산업의 연계 강화. 규모화 및 표준화 수준 제

고, 도축 및 가공능력 제고, 우량종 육종 및 번식체계 완비, 우수 종자 이용 확대, 지역 시장의 확대와 중대형 도시로의 공급 증대

- 서남 돼지 생산지역
- 광서장족자치구, 사천성, 중경시, 운남성, 귀주성의 126개 현
- 중국의 전통적인 돼지 생산지역으로 대부분 산간구릉지역. 지역 사정에 맞게 생태형 유기 돼지 사육을 확대하고 고표준화 및 규모화 사육을 확대하는 한편 돼지종자 개 량 등으로 지역 내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 외 시장 개척으로 사육농가의 소득 증대

□ 2009년도 우량종자보조, 농기계구입보조제도 운영 방안

- 중국 농업부와 재정부 판공실은 3월 3일 "2009년 '중앙 1호 문건'의 관철, 우량종자 보조사업의 관리 강화, 정책효과 제고, 자금 사용효율 증대, 농민들의 생산 적극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2009년 중앙재정 농작물 우량종자 보조항목 실시 지도의견'9을 발표하였음.
 - 우량종자보조사업을 통해 올해 식량 재배면적은 1억 720만 ha 수준을 유지하고, 생산량은 5억 톤 이상을 보장하며, 단수 제고, 품종구조 개선, 식량 품질개선 등 보장. 면화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각각 570만 ha와 750만 톤 수준 유지
 - 보조 범위: 벼, 밀, 옥수수, 면화는 전국 31개 성(자치구·직할시), 대두는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내몽고자치구 등 4개 성(자치구·직할시)에서 보조 실시
 - 보조 대상: 생산과정에서 우량종자를 사용하는 농민(농장 노동자 포함)
 - 보조 기준: 조생종 벼, 밀, 옥수수, 대두는 ha당 149.3위안, 중생종 및 만생종 벼, 면화는 ha당 223.9위안
- 중국 농업부와 재정부는 2008년 12월 26일 '2009년 농기계 구입보조 실시방안에 관한 통지'¹⁰를 발표하였음.

⁹ 農業部辦公廳財政部辦公廳《關於引發《2009年中央財政農作物良種補貼項目實施指導意見》的通知》; 農辦財[2009]20號

¹⁰ 農業部,財政部《關於引發《2009年農業機械購置補貼實施方案》的通知》;農財發[2008]190號

중국농업동향

- 농기계구입보조 정책은 2004년부터 실시되었으며, 2004~2008년 동안 중앙재정의 보조금 총액은 69.7억 위안으로 농민들의 소비액 373억 위안, 농기계공업 판매액 443억 위안을 창출하여 내수 확대에 크게 기여
- 중앙재정의 농기계구입보조금 총액이 2008년 40억 위안에서 2009년 100억 위안으로 증가하여 540억 위안의 소비수요를 창출하고, 640억 위안의 농기계공업 판매액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
- 2007년 말 현재 경운, 파종, 수확 등 농작업 기계화 수준은 42.5%로 일본의 70년대 중반, 한국의 80년대 초반 수준에 불과. 2020년에 기계화 수준을 70%까지 증가시킬 계획
- 2009년 농기계 구입보조 실시방안
 - 실시 범위: 전국의 모든 농업 및 축산업 현(縣). 단, 보조금은 대규모 식량·면화 생산 현, 대규모 가축사육 현, 주혈흡충증 발생 현, 사천성 문천지역 지진피해 현, 환경보전형 경작 시범 현, 전국 100개 농기계화 시범지역 소재 현에 우선적으로 분배.
 - 보조대상: 실시 범위와 보조 조건에 부합하는 경종농민, 축산농민, 어민(농장 노동자 포함), 농기계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농업생산경영조직, 현지 공상부문에 등록을 마 친 낙농전문합작사 등을 포함
 - 보조금 규모: 2008년 40억 위안 → 2009년 100억 위안
 - 보조대상 농기계: 2008년 9개 대분류, 18개 소분류, 50개 품목 → 2009년 12개 대분류, 38개 소분류, 128개 품목
 - 보조 기준: ①전국적으로 구매가격의 총 30% 보조. 단, 주혈흡충증 발생지역은 50%의 보조비율을 유지하고, 사천성 문천지역 지진피해 현은 보조비율을 50%로 확대. ②단일 농기계 품목에 대한 보조금은 최고 5만 위안 이하, 100마력 이상의 대형 농기계는 최고 12만 위안까지 보조
 - 농가당 구매가능 수량은 농기계 1세트 4대(주 농기계 1대+부속 농기계 3대) 이하

□ 5천만 톤 식량증산 계획(2009~2020년) 발표

○ 2009년 4월 8일 개최된 국무워 상무위원회에서 '전국 5천만 톤 식량증산 계획(全國

新增1000億斤糧食生產能力規劃(2009~2020年))'이 토론을 거쳐 통과되었음.

- 《계획》은 2020년까지 식량 생산능력을 현재의 5억 톤에서 5억 5천만 톤 이상으로 증대시키고, 경지면적을 1억 2,060만 ha, 절대농지면적을 1억 452만 ha, 식량작물 파종면적을 1억 586만 ha 수준으로 유지하며, 식량작물의 단수를 ha당 5.2톤으로 제고한다는 계획을 제시하였음.
- 《계획》은 과학적으로 식량 증산기술을 확정하고 ①저생산성 농지 개량, ②우량 품종 육종 및 보급 확대, ③경지이용률 제고, ④중대 기술조치 보급, ⑤농업기계화 수준 제고, ⑥병충해 예방 및 방제 등 6가지 방면에서 식량증산 잠재력을 발굴할 것을 강조하였음.

□ 가뭄극복조례(抗旱條例) 제정

- 중국 정부는 올해 초 50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에 대응하여 사상 처음 가뭄 1급 경계령을 발동하고 가물 극복을 위한 물자 구입과 밀 재배지역(특히 화북 밀 주산지) 농민들의 소득 보전을 위해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였음.
- 올해 초 심각한 가뭄을 겪는 상황에서 중국 국무원은 2월 11일 제49차 상무위원회에서 통과된 '가뭄극복조례(抗旱條例)'를 2월 26일 공포하였음.
 - 가뭄극복조례는 제1장 총칙, 제2장 가뭄재해 예방, 제3장 가뭄재해 극복, 제4장 재가 뭄재해 복구, 제5장 법률책임, 제6장 부칙 등 총 6장 65조로 이루어져 있음.
- 중국 정부는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북부지역(특히 화북지역)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강(長江)의 물을 화북지역으로 끌어오는 남수북조(南水北調)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 남수북조 프로젝트는 ①동선(東線) 프로젝트(장강 하류 강소성 양주(揚州)에서 천 진에 이르는 1,156km), ②중선(中線) 프로젝트(장강 중류 단강구(丹江口) 저수지 에서 북경과 천진에 이르는 1,267km), ③서선(西線) 프로젝트(황하 상중류지역과 위하관(渭河關) 평야지역의 물부족 문제 해결) 등 3개 프로젝트로 구분됨.
 - 동선 및 중선 제1기 프로젝트는 각각 2002년과 2003년에 시작되어 201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02~2008.8월까지 215.9억 위안이 투자되었음.

- 중국 정부는 2009년부터 남수북조 프로젝트를 전면적으로 추진하여 올해 213억 위안(중앙재정 65억 위안, 남수북조 프로젝트 기금 20억 위안, 은행 대출 128억 위안)을 투자할 계획임.



く중국의 남수북조(南水北調) 프로젝트 개념도〉

□ 도농통합 개혁·발전 모델 시범 실시

- 중국 국무원은 2009년 1월 26일 중서부지역의 유일한 직할시로서 전국 도농통합 개혁·발전 시범지역인 중경시를 대상으로 '중경시 도농통합 개혁 및 발전 추진에 관한약간의 의견'11를 발표하였음.
 - 《의견》은 개혁·발전의 기본 원칙으로 ①도농 통합, 도농 균형발전 촉진, ②과학적 발전관에 입각하여 발전방식 전환, ③인본주의(人本主義) 정신 견지, 조화로운 사회건설

¹¹ 國務院《關於推進重慶市統籌城鄉改革和發展的若幹意見》;國發[2009]3號

추진, ④개혁개방 견지, 체제 시스템의 혁신 등 4가지를 제시하였음.

- 《의견》은 개혁·발전의 주요 목표로 ①2012년까지 중요 사항의 개혁을 추진하여 도 농 통합발전의 제도적 틀 완성, ②2020년까지 각종 개혁을 심도있게 추진하여 도농 통합발전의 제도적 체계를 형성하고, 서부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샤오캉(小康)사회 건설 목표 실현 등 2가지 목표를 제시하였음.
 - 2012년까지 중경시의 1인당 GDP를 전국 평균에 근접시키고, 도농 주민소득이 서부지역내 고소득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며, 소득격차를 점차 축소하고, 기본적인 공공서비스 수준이 전국 평균에 도달하도록 하며, 에너지 소비를 2007년 대비 20% 절약하고, 삼협댐지역 장강 지류의 수질을 2등급으로 개선
 - 2020년까지 중경시의 1인당 GDP가 전국 평균을 초과하도록 하고, 도농 주민소득이 전국 평균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며, 소득격차를 더욱 축소하고, 기본적인 공공서비스 수준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도록 하며, 에너지 소비를 현저하게 감소시키고, 삼협 댐지역 장강 지류의 수질을 2등급으로 유지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07년 6월 7일 '중경시와 성도시에 전국 도농 통합발전 종합개혁 시범지구를 건설하는 것에 관한 통지'12를 통해 중경시와 사천성 성도시를 '도농 통합발전 종합개혁 시범지구'로 선정한 바 있음(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전형 진. 2007. 중국농업동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M88 참조).

¹² 國家發展改革委員會《關於批準重慶市和成都市設立全國統籌城鄉綜合配套改革試點區的通知》: 發 改經體[2007]1248號

□ 2009년도 1/4분기 주요 농업관련 문건

일자	문건 번호	문건 제목 및 관련 부처
3.30	商建發 [2009]114호	《자동차 소비에 관한 의견 關於促進汽車消費的意見》 · 상무부,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재정부, 세무총국, 공상총국, 은행업감독 관리위원회, 보험감독관리위원회
3.30	農辦 醫 [2009]14호	전국 동물위생 위험평가 전문가위원회 장정 《全國動物衛生風險評估專家委員會章程》 / 농업부 판공실
3.25	農辦 醫 [2009]12호	산가축 경영시장 정비 행동방안《活禽經營市場專項整治行動方案》 · 농업부 수의국
3.24	發改價格 [2009]793호	2009년 담배잎 수매가격 및 보조정책에 관한 통지 《關於2009年煙葉收購價格及補貼政策的通知》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국가연초전매국
3.23	財綜 [2009]21호	남수북조 프로젝트기금의 연도별 납부액 및 관련문제 조정에 관한 통지 《關於調整南水北調工程基金分年度上繳額度及有關問題的通知》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무원남수북조반, 감사원(審計署)
3.18	發改經貿 [2009]728호	당면한 봄철 화학비료 공급업무를 잘할 데 대한 통지 《關於做好當前春耕化肥供應工作的通知》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재정부, 철도부, 농업부, 상무부, 중 국인민은행,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중화전 국소비조합중앙회(中華全國供銷合作總社)
3.18	_	농업의 안정적 발전과 농민소득 증대 촉진, 도농 통합발전 추진에 관한 의견 《關於促進農業穩定發展農民持續增收推動城鄉統籌發展的若幹意見》 · 국토자원부
3.14	農辦市 [2009]7호	농업정보 통계조사 기점 조정방안《農業信息統計調查基點調整方案》 · 농업부 판공실
3.12	農辦農 [2009]26호	2009년도 전국 토지측량 및 비배관리업무 방안 《2009年全國測土配方施肥工作方案》 / 농업부 판공실
3.12	農經發 [2009]3호	2009년도 농민부담 경감 업무를 잘할 데 대한 의견 《關於做好2009年減輕農民負擔工作的意見》 · 농업부, 국무원 규풍반(糾風辦),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무원 법 제반, 교육부, 신문출판본부(新聞出版總署)
3.10	財建 [2009]104호	자동차 오토바이하향사업 실시방안 하달에 관한 통지 《關於印發《汽車摩托車下鄉實施方案》的通知》 ·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상무부, 공상총국, 질검총국
3. 9	財金 [2009]22호	원유 수매 대출금 중앙재정 이자할인정책 기한 연장에 관한 통지 《關於延長原料奶收購貸款中央財政貼息政策期限的通知》 / 재정부

(계속)

(11 -1)		
일자	문건 번호	문건 제목 및 관련 부처
3. 9	商建發 [2009]98호	농업 생산수단의 유통체계의 완비에 관한 의견 《關於完善農業生產資料流通體系的意見》 ·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재정부, 농업부, 국가공상은 행관리총국,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중화전국소비조합중앙회
3. 5	農納制 [2009]20호	2009년도 중앙재정 농작물 우량종자보조 항목 실시 지도의견 《2009年中央財政農作物良種補貼項目實施指導意見》 / 농업부, 재정부
3. 4	國辦發 [2009]25호	식품안전법의 충실한 관철 및 시행에 관한 통지 《國務院辦公廳關於認真貫徹實施食品安全法的通知》 / 국무원
3. 2	財金 [2009]15호	신형 농촌금융기구 비용 보조 실시에 관한 통지 《關於實行新型農村金融機構定向費用補貼的通知》 / 재정부
3. 2	財金 [2009]16호	현지역 금융기구의 농업관련 대출 증대 장려 시범사업 전개에 관한 통지 《關於開展縣域金融機構涉農貸款增量獎勵試點工作的通知》/ 재정부
3. 2	주석령 9호	《식품안전법 中華人民共和國食品安全法》
2.27	國辦發 [2009]11호	"이장촉치"실행으로 심각한 농촌환경문제 해결을 가속화하기 위한 실시 방안 關於實行"以獎促治"加快解決突出的農村環境問題的實施方案》 ·국무원 판공실
2.26	財建 [2009]48호	가전하향 사업 실시 강화에 관한 통지 《關於加大家電下鄕政策實施力度的通知》/ 재정부, 상무부, 공업정보화부
2.26	국무원령 제552호	《가뭄극복조례 中華人民共和國抗旱條例》 / 국무원
2.23	教師 [2009]1호	농촌 의무교육단계 학교 교사 임용 계획의 지속 실시에 관한 통지 《關於繼續組織實施"農村義務教育階段學校教師特設崗位計劃"的通知》 ·교육부, 재정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중앙기구편제위원회
2.23	財教 [2009]2호	농촌 의무교육 경비 보장체계 개혁자금관리에 관한 약간의 의견 《關於進一步加強農村義務教育經費保障機制改革資金管理的若幹意見》 · 재정부, 교육부
2. 9	發改電 [2009]35호	농업가뭄극복 기름, 전력 운송 공급보장업무를 잘할데 대한 긴급통지 《關於切實進一步做好農業抗旱油電運保障供應工作的緊急通知》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판공실
2. 9	財教 [2009]2호	농촌 의무교육경비 보장기제 개혁 자금관리 강화에 관한 의견 《關於進一步加強農村義務教育經費保障機制改革資金管理的若幹意見》 · 재정부, 교육부
2. 9	發改環資 [2009]378호	농부산물 종합이용 계획에 관한 지도의견 《關於編制括桿綜合利用規劃的指導意見》/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농업부
2. 6	農質發 [2009]2호	2009년도 농산물 품질안전 정비 및 연간 법 집행 활동 실시방안 《2009年農產品質量安全整治暨農產品質量安全執法年活動實施方案》 · 농업부
2. 6	發改價格 [2009]368호	칼륨비료가격 관리정책에 관한 통지《關於完善鉀肥價格管理政策的通知》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중국농업동향

(계속)

일자	문건 번호	문건 제목 및 관련 부처
2. 4	-	토지이용 총체계획 편제 심사 방법《土地利用總體規劃編制審查辦法》 ·국토자원부
2. 2	-	농업산업화 대규모 기간기업 발전 합작 지원에 관한 의견 《關於進一步加強合作支持農業產業化龍頭企業發展的意見》 · 농업부, 중국농업발전은행
2. 1	中發 [2009]1호	《2009년도 농업의 안정적 발전과 농민소득 증대를 촉진하기 위한 약간의 의견 中共中央國務院關於促農業發展農民增收若幹意見》 ·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국무원
1.26	國發 [2009]3호	중경시 도농통합 개혁·발전 추진에 관한 약간의 의견 《國務院關於推進重慶市統籌城鄉改革和發展的若幹意見》 / 국무원
1.24	發改電 [2009]19호	2009년 벼 최저수매가격 인상에 관한 통지 《關於提高2009年程穀最低收購價格的通知》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농업부, 국가식량국, 중국농어발전은행
1.24	發改價格 [2009]268호	화학비료 가격 형성 시스템 개혁에 관한 통지 《關於改革化肥價格形成機制的通知》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1.20	衛婦社發 [2009]12호	농촌 임산부의 입원 분만 업무를 강화에 관한 지도의견 하달에 관한 통지 《關於印發《關於進一步加強農村孕產婦住院分娩工作的指導意見》的通知》 ·위생부, 재정부
1.19	財預 [2009]5호	촌단위 공익사업 일사일의 중앙재정 장려 및 지원사항에 관한 통지 《關於村級公益事業一事一議中央財政獎補事項的通知》 / 재정부
1. 9	-	돼지가격의 과도한 하락 방지 조절 방안(잠행) 《防止生豬價格過度下跌調空預案(暫行)》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농업부, 상무부, 공상총국, 질검총국

2009년도 농정방향과 시사점

1. 개요

-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 공동명의로 발표된 2009년도 '중앙 1호 문건'은 '농업의 안정적 발전'과 '농업소득 증대'를 핵심 주제로 2009년도 농정 방향과 추진 과제를 제시하였음.
- 중국 농업부는 '중앙 1호 문건'의 내용을 토대로 2009년도의 농업·농촌관련 업무계획을 담은 '농업부 1호 문건'을 발표하였음.
- 농업부 주최로 2008년 12월 개최된 전국농업공작회의(2008.12.27)에서도 2008년 도 농업부문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2009년도 중점 추진업무를 제시한 바 있음.1
-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2009.3.5~13) 기간 중 원쟈바오(溫家寶) 국무 원 총리의 정부업무보고(政府工作報告)에서는 '국민경제에서 농업의 기초적 지위 강 화, 농업의 안정적 발전, 농민소득 지속적 증대'를 6가지 2009년도 주요 임무의 하나 로 제시하고, 중점 추진과제 5가지와 주요 조치사항 5가지를 제시하였음.
-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2009.3.5~13) 기간 중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2008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집행 현황과 2009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초안) 보고'(2009.3.5)에서 '농업·농촌 발전추세 공고화, 농산물 공급 보장, 농민소득 증대 촉진'을 9가지 2009년도 주요 임무의 하나로 제시하고, 5가지의 주요 추진과제를 제시하였음.

^{*} 작성: 전형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hichon@krei,re,kr)

^{1 『}중국농업동향』제1권 제4호(2009.1) "I. 농업정책 브리핑"참조

2. 2009년도 농정방향과 추진과제

口 '중앙 1호 문건(中央一號文件)'

- 2008년 12월 개최된 중앙농촌공작회의(2008.12.27~28)²에서 채택된 문건 "2009년 농업의 안정적 발전과 농민소득 증대를 촉진하기 위한 약간의 의견"³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 공동명의의 '중앙 1호 문건'으로 발표되었음.
 - 이로써 후진타오 정부는 집권 1기(2002.11~2007.10)인 2004~2007년에 이어 집권 2기(2007.11~2012.10)인 2008~2009년까지 6년 연속 농업·농촌문제를 주제로 한 '중앙 1호 문건'을 발표하였음(표 1 참조).

표 1. 2004 2000년 8명 1포 군단		
발표 날짜	중앙 1호 문건 제목	
2004.2. 8	농민소득 증대 촉진에 관한 정책적 의견 中共中央,國務院《關於促進農民增加收入若幹政策的意見》	
2005.1.31	농업종합생산능력 제고를 위한 농촌업무의 진일보 강화에 관한 정책적 의견 中共中央、國務院《關於進一步加強農村工作提高農業綜合生產能力若幹政策的意見》	
2006.2.21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 추진에 관한 의견 中共中央,國務院《關於推進社會主義新農村建設的若幹意見》	
2007.1.29	현대농업의 적극적인 발전과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의 착실한 추진에 관한 의견 中共中央、國務院《關於積極發展現代農業紮實推進社會主義新農村建設的若幹意見》	
2008.1.20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농업발전 및 농민소득 증대 촉진에 관한 의견 中共中央國務党、關於切實加強農業基礎建設進一步促進農業發展農民會收的若幹意見》	
2009.2. 1	2009년 농업의 안정적 발전과 농민소득 증대를 촉진하기 위한 의견 中共中央,國務院《關於2009年促進農業穩定發展農民持續增收的若幹意見》	

표 1. 2004~2009년 중앙 1호 문건

○ 2009년 '중앙 1호 문건'은 ①농업에 대한 지원 및 보호 강화, ②농업생산의 안정적 발전, ③농업현대화를 위한 지원 및 서비스 체계 강화, ④농업경영제도의 개선 및 안정, ⑤도농 통합발전 등 5가지 2009년 농정 목표와 28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였음.

² 중국은 매년 연말 공산당과 정부의 최고위급이 참여하는 중앙농촌공작회의(中央農村工作會議)에서 당해 연도 농업부문의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다음 해의 농정방향과 세부 실천 과제를 토론을 거쳐 확정하고 이를 성·자치구·직할시에 하달하여 집행하도록 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

³ 中共中央、國務院《關於2009年促進農業穩定發展農民持續增收的若幹意見》;中發[2009]1號

표 2. 2009년 농정 목표와 중점 추진 과제

 농정 목표	중점 추진 과제
① 대 농업지원 및 보호 강화	1. 농업재정 투자 규모 확대 2. 농업보조금 규모 확대 3. 농산물 가격 안정 4. 농촌금융서비스 능력 강화
② 농업생산의 안정적 발전	5. 식량생산 증대 6. 비교우위생산지역에서 경제작물 생산 증대 7. 축산업과 수산업의 규모화, 표준화 수준 제고 8. 농산물 품질안전 관리 감독 강화 9. 농산물 수출입 조절 강화
③ 농업현대화 서비스체계 구축	10. 농업기술 혁신 강화 11. 토지비옥도 향상 12. 수리시설 건설 강화 13. 농업기계화 촉진 14. 생태환경 복구 사업 추진 15. 농산물 시장시스템 건설 강화 16. 기층 농업공공서비스 기구 건설 추진
④ 농업경영제도의 개선 및 안정	17. 농촌 토지도급제 안정 18. 토지도급경영권 유동시장 구축 19. 엄격한 농지보호 및 절약제도 실시 20. 집단임지 재산권제도 개혁 추진 21. 전문농업협동조합과 대규모 기간농기업 발전
5 도농 경제사회 통합발전	22. 농촌사회사업 확대 추진 23. 농촌기초시설(인프라) 건설 확대 24. 농촌노동력 취업 확대 25. 농촌 종합개혁 추진 26. 현 지역경제의 발전 및 활성화 27. 농촌소비시장 개척 28. 농촌 빈곤퇴치 전략 및 정책체계 개선

□ 농업부 2009년 업무계획

- 중국 농업부는 '중앙 1호 문건'을 토대로 2009년도의 농업·농촌관련 업무계획을 담은 "2009년 농업·농촌경제 업무를 잘할 데 대한 의견(農業部《關於做好2009年農業農村經濟工作的意見》; 農發[2009] 1號)"을 '농업부 1호 문건'으로 발표하였음.
 - 《의견》은 2009년도 농정 목표 9가지와 중점 추진과제 21가지를 제시하였음.

표 3. 농업부의 2009년 농정 목표와 중점 추진 과제

 농정 목표	중점 추진 과제
 농업지원 강화 농민들의 생산적극성 제고	l. 농업지원 정책 확대 실시
② 농업생산의 안정적 발전 주요 농산물 공급 보장	2. 식량생산 증대3. 비교우위생산지역에서 경제작물 생산 증대4. 축산업의 안정 및 발전5. 수산업 발전 촉진6. 농업종합개발 확대
③ 농민소득원 개발 농민소득 증대	7. 농업소득 증대 8. 향진기업 및 농산물 가공업 발전 촉진 9. 농민공의 취업 확대 및 임금소득 증대
④ 농산물 품질안전관리감독 강화 농산물 품질안전 수준 향상	10. 농산물 품질안전 관리감독 업무 강화 11. 농산물 품질안전 검사·측정체계 건설, 농업표준 화 수준 제고
5 가축전염병 예방·방제 강화 병충해 예방·방제 및 농업재해 방 지 업무 강화	12. 가축 전염병 예방 및 방제 강화 13. 농작물 병충해 예방 및 방제 강화 14. 농업재해 예방 및 복구 강화 15. 농업 생산 안전 수준 제고
⑥ 농업인프라 건설 확대 농업생산능력 제고	16. 농업인프라 확충 17. 농업기계화 수준 제고 18. 에너지 절약, 생태환경 복구 사업 추진
 동업기술 개발 농업서비스체계 현대화	19. 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 응용 확대 20. 기층 농업공공서비스 기구 설립 21. 농산물 시장체계 구축
⑧ 농업제도개혁 추진	22. 농촌 토지도급제 개선 및 안정 23. 전문농업협동조합과 대규모 기간농기업 발전 24. 각종 농촌개혁 적극 추진 25.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9 농업제도 법제화 추진	26. 농업법제 구축 27. 농업계통체계 건설

□ 농업부, 22개 대 농민 중점 추진업무

○ 중국 농업부는 2000년부터 매년 초 당해 연도 중점 추진업무를 확정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는 22개 업무 선정. 지난 8년 동안 총 104개 중점 업무 해결

표 4. 농업부의 2009년도 대 농민 중점 추진업무

추진 업무	주요 내용	
① 선진(신형) 농민 배양	· 전국 1,000개 이상 현(縣)에서 선진 농민 농업기술 교육 훈련 및 육성 프로그램 실시 · 농업기술 지식 및 실용기술 교육 훈련 전개 · 도시 이전 농촌노동력 교육 훈련 프로그램(陽光工程) 실시 · 식량주산지, 농촌노동력 대량 이전 지역, 빈곤지역 중심으로 이농 취업을 원하는 농민에게 교육 훈련 프로그램 실시 · 귀향 농민공에 대한 취업 교육 훈련 실시 · 교육 훈련 후 도시 이전 취업률 80% 이상 달성, 교육 훈련 농민 수 500만 명 이상	
② 대규모 식량생산 현(縣) 기술보급용 차량 제공	· 대규모 식량생산 현을 중심으로 농가단위에 직접 농업기술을 보급할 수 있도록 275대의 차량 제공 · 농가를 방문하여 교육 훈련, 기술보급, 정보 서비스 제공	
③ 토지측량, 비배관리기술 서비스 제공	· 1.5억 농가에 토지측량 및 비배관리기술 서비스 무료 제공 · 토지측량 및 비배관리 기술 보급 면적 6,700만 ha, ha당 447.8 위안 이상의 생산비 절감 및 수익 향상	
④ 쌀 생산의 기계화 촉진	· 25개 성(자치구, 직할시)에서 145개 시범 현(縣)을 지정하여 벼 기계화 육종 및 이앙기술 교육훈련 시범사업 전개, 〈농기 계 구매 지침서〉 6만 권을 편찬하여 대규모 식량재배 농가 및 농기계 사용 농가 29만 호에 대한 교육 훈련 실시 · 이앙기, 수확기 구매시 보조금 지급 · 2009년도 신규 기계 이앙 면적 53.6만 ha 확대, 벼 기계 이앙 및 수확 비율을 각각 15%, 53%로 제고	
5 환경보호형 경작기술 보급	· 23개 성(자치구, 직할시)에서 134개 시범 현 지정하고 환경보 호형 경작기술 신규 보급 면적 67,000 ha 확대 · 환경보호형 경작기술 교육 훈련 50만 명, 관련 책자 배포 · 환경보호형 농기계 구입 및 농작업 실시 시 보조	
6 농산물 가공기술 보급 활동 전개	· 중소형 농산물 가공기업에 선진 가공기술 및 생산설비 보급 하여 에너지 절약, 생산비 절감, 오염 감소를 통해 원료의 이 용율 및 제품의 경쟁력 제고	
기 농약 안전사용 수준 제고	· 농민과 농약판매상에게 농약제품 구매 및 합리적 사용 요령 지도, 관련 책자 및 포스터, 전단지, 수첩 등 제공 · 안휘성 등 13개 성에서 식량, 과수, 채소 및 차 품목의 주산 지 현을 선정하여 농약 안전사용 기술시범 및 훈련을 실시하 고, 각 현의 시범지역 면적은 134ha 이상	
8 수의약 안전사용 지식 선전 및 보급	· 수의약 관리정책 홍보 및 안전사용 방법 보급 사업 강화 · 농민들의 가짜약 판별 능력 제고 · 사천성, 호북성, 광동성, 산동성 등 11개 성(시)에서 수산양식 업의 약물사용 규범화 및 보급 선전활동 전개 및 〈수산양식 약물사용 지침서〉등 관련 기술자료 배포	

표 4. 농업부의 2009년도 대 농민 중점 추진업무(계속)

 추진 업무	주요 내용
⑨ 빈곤지역의 3품 발전	· 두 차례의 교육 훈련프로그램을 조직하여 592개 국가빈곤퇴치 중점 현(縣)을 대상으로 3품(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 유기식품) 개발, 인증, 관리 및 생산단지 건설 관련 무료 교육 훈련 실시 · 국가빈곤퇴치 중점 현(縣)에서 무공해농산물 생산단지 100개, 녹 색식품 원료 표준화기지 35개 건설 · 중록화하유기식품인증센터(中綠華夏有機食品認證中心)가 빈곤 현 (縣) 2곳 선정하여 유기식품생산단지 건설 시범사업 전개 · 3품 표지 사용 우대정책 실시
10 메탄가스 사용농가 보조	· 500만 호의 농가에 메탄가스 설비 설치 보조 · 1,000곳 이상의 중대형 메탄가스사업 지원
Ⅲ 취사용 에너지절약 시범사업 실시	· 청해성, 사천성, 감숙성, 운남성 4개 성의 주요 장족(藏族)거주지역(Tibetan-inhabited Area) 38개 현(시)에서 농목민을 위해 고효능저배출 난로 3.2만 대 설치
전염병지역	・호북성, 호남성, 강서성, 안휘성, 강소성, 사천성, 운남성 등 주혈 흡충(血吸蟲病) 전염병 위험지역 7개 성의 농기구구입 보조 사 업 실시 강화 ・7개 성의 주혈흡충 전염병 발생 164개 중점 현을 농기구구입 보 조 사업 범위에 지속적으로 포함하여 "기계로 소를 대체"하는 프로젝트 실시
[13] 농부산물 발효 사료 이용 확대	· 전국적으로 농부산물 이용 잠재력이 큰 70개 현(시)을 선정하여 사일리지 사일로 40만 m² 신규 건설, 사일리지 농부산물 처리능 력 35만 톤 추가 확대, 농부산물 처리기계 1,000대 증가, 농민 2 0,000명 교육 훈련 실시
네 어자원 증식방류	· 4대 연해지역 및 흑룡강 유역, 황하유역, 장강유역, 주강유역을 중점으로 어자원 증식방류 사업 전개 · 2009년도에 증식 방류할 각종 어류 종묘 수량 200억 알 이상
15 어업상조보험 보조	· 어선 전손(全損)상조보험과 어민 인신평안 상조보험에 대해 각 각 25%와 20%의 보험료 보조 · 2009년 보험가입 어선 1.2만 척, 어민 2만 명 이상 확보
16 출하기 신선농산물 판매 촉진 활동 전개	· 출하기에 생산과 판매를 연결하는 활동을 실시하여 농민들의 판매난 해소
☑ 농산물 직거래시범사업 추진	· 9개의 대형 마트와 500여 개 산지 농민전문합작사 간 직거래 유통 시범사업 전개하여 농산물 판매 촉진 및 농민소득 증대
IB 삼전합일(三電合—)사업 지속 추진	·TV, 전화, 컴퓨터를 이용한 농업종합정보서비스 제공 사업 지속 추진 ·2009년에 성급(省級) 4개, 지방정부급(地級) 18개, 현급(縣級) 68 개의 농업종합정보서비스 플랫폼 건설

추진 업무	주요 내용
[19] 개간 농장의 농업생산 및 생활 조건 개선	·개간지역 52개 농장을 대상으로 비옥도가 낮은 토지 12만 ha 개 량, 농로 83km 건설, 음용수부족 문제 해결, 우량종자 무상 제공, 농장관리인 130명 육성
20 개간 농장의 위험주택 개량사업 추진	· 흑룡강성, 광동성, 해남성, 운남성, 내몽고 해라얼(海拉爾), 내몽고 대흥안령(大興安嶺) 등 6개 지역 개간 농장의 주택개량사업 전개, 농장 노동자의 생활수준 향상
② 대 농민 도서, 신문 보급 사업 확대	 · 빈곤지역 농민에게 연간 〈농민일보〉 20,800부 발송 · 29개 성(자치구, 직할시)의 "농가책방"에 6만 권의 〈농민 다이제 스트〉 잡지 배송 · 국가의 "농가책방" 사업에 부응하여 100만 위안 상당의 농업과 학기술 도서 증정 · 중앙 CCTV 7 농업프로그램에서 특정 지역을 위해 매일 15초의 무료 빈곤퇴치 관련 광고 방송 · 전국 200여 개 농기계합작조직에 〈농기계감리안전특간〉 책자 증정
② 어선 인터폰 설치 보조	· 요녕성, 산동성, 해남성, 산동성 청도시, 절강성 영파시(寧波市) 지역의 3,000척 어선을 대상으로 인터폰 설치 보조

표 4. 농업부의 2009년도 대 농민 중점 추진업무(계속)

□ 정부업무보고(政府工作報告)

- 2008년 추진 업무 회고(농업관련 부분)
 - 2008년 중앙정부의 농업재정 규모는 5,955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637억 위안 (30%) 증가. 이 중 4대 직접보조(식량직불, 농자재종합보조, 우량종자보조, 농기구구입보조)에 1,030억 위안 지출
 - 식량최저수매가격을 3차례에 걸쳐 인상(인상폭 최대 20% 이상). 주요 농산물에 대해 임시 수매비축 실시
 - 경지보호 및 수리시설 건설을 통해 농업 생산능력 제고. 양돈업. 낙농업의 발전 지원
 - 신형 농촌사회양로보험제도 개선 모색. 농민공 및 토지수용 농민들의 사회보장 강화. 도농 주민최저생활보장제도를 강화하여 6,619만 명 구제
 - 농촌인구 4,800만 명의 음용수 문제 해결. 신형 농촌합작의료제도 참여인구 8.14억 명(참여율 91.5%).

- 2009년 주요 업무 내용
 - 목표: ①8% 내외 GDP 성장률, ②경제구조 조정, ③900만 명 이상 도시 신규취업,
 도시 실업률 4.6% 이내, ④도시 및 농촌가구 소득 증대, ⑤소비자물가 인상률 4%
 내외, ⑥국제수지 개선
 - 원칙: ①내수확대 및 성장유지, ②구조 조정 및 개선, ③개혁 심화, ④민생 보장 및 개선, 조화사회 촉진
 - 주요 6대 임무: ①거시경제 조정 및 개선, 고속 경제성장 유지, ②내수 확대(특히 소비수요 확대), 내수의 경제성장 견인 역할 강화, ③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지위 강화, 농업의 안정적 발전 및 농민소득의 지속적 중대, ④경제성장 및 발전 방식 전환, 경제구조의 전략적 조정, ⑤개혁개방 심화, 과학적 발전체계 완비, ⑥사회사업의 발전, 민생 보장 및 개선, ⑦정부의 혁신, 경제사회 발전 능력 제고

표 5. 2009년도 정부업무보고 중 농업관련 5대 추진 업무

추진 업무	주요 내용
① 식량생산 증대	· 식량 재배면적 안정, 단수 제고, 품종구조 조정, 전국적으로 5천만 톤 식량증산 능력 제고
② 시장수요에 부응한 농업구조 조정	· 농산물 단기공급부족 문제해결, 농산물 품질·수익·경쟁력 제고 · 신규 우수농산물 비교우위생산지역 배치계획 수립, 비교우위생산 지역의 경제작물 생산 지원 · 돼지 생산 안정, 낙농업진흥계획 수립, 축산업과 수산업의 표준화 사양·양식 체계 구축 · 동식물 전염병 예방 및 방제 체계 구축
③ 농업인프라 확충 농촌 민생사업 강화	 · 대규모 토지정리사업 전개, 토지비옥도 개선, 고표준화 농지조성 · 중대형 및 중점 소형 오염저수지 수질개선사업 전개, 관개체계 개선 및 소형 논 수리시설 건설 · 2010년 말까지 기본적으로 전국 향·진, 동중부 지역의 농촌도로 포장 완료, 서부지역은 농촌도로 건설 · 농촌지역 6,000만 명의 음용수 문제 해결, 메탄가스 사용농가 500만 호 증대, 농촌문화시설 건설 지속 추진
④ 농민소득 증대	· 농업현대화, 특색농업의 발전, 농산물 가공·판매 수준 제고, 농촌 2,3차 산업 육성, 소도시 건설 및 현급 지역경제 발전 촉진
5 빈곤퇴치 및 개발	· 농촌 저소득가구 대상으로 빈곤퇴치사업 전면 추진, 빈곤 기준 1 인당 평균 1,196위안, 빈곤퇴치 대상 4,007만 명 · 빈곤퇴치 자금 확대, 농촌정비사업 전개, 도시 이전 농촌노동력 교육훈련 등 사업방식 개발, 대상 농민의 먹는 문제 해결

표 6. 2009년도 정부업무보고 중 농업부문 5대 조치

 추진 조치	주요 내용
① 농업재정투자 확대	· 2009년 농업재정 7,161억 위안(전년대비 1,207억 위안 증가) · 중서부지역 농촌의 공익성 건설 투자 확대, 현 및 현 이하 정 부로부터의 자금 갹출제도 폐지 · 식량주산지 중심의 식량정책 추진, 대규모 식량생산 현에 대한 교부금 지원 확대, 장려금 지원
② 식량최저수매가격인상 농산물가격 안정 → 식량재배 농민의 생산적극성 견인	· 밀, 벼 최저수매가격 kg당 각각 0.22위안, 0.26위안 인상 · 주요 농산물 임시 수매비축 실시: 식량, 면화, 식용 식물유, 돼 지 비축 확대하여 농산물 시장 조절 능력 강화
③ 농업보조 확대	 · 중앙재정의 농업보조금 규모 1,230억 위안(전년대비 200억 위안 증가) · 식량직불제 확대 추진 · 우량종자보조: 보조 기준 제고, 모든 벼, 밀, 옥수수, 면화 품종 포함, 유채와 대두 우량종자 보조 범위 확대, 유채 및 유채차에 대한 우량종자 보조 실시 · 농기구구입보조: 전국의 모든 농업 및 축산업 현(농장)으로 확대. 중앙재정 130억 위안 배정(전년대비 90억 위안 증가) · 농자재종합보조: 농자재가격 상승폭과 농작물 파종면적에 근거하여 농자재종합보조 확대
④ 신형농업사회화서비스 체계 건설 강화	· 농업기술개발 투자 확대, 농업기술 혁신 성과의 보급 및 서비스 강화 · 기층 농업기술보급, 동식물 질병 예방 및 방제, 농산물 품질 관리감독 등 공공서비스 기구 건전화 · 소비조합, 농민전업합작사(전문협동조합), 대규모 기간 농기업에 대한 다양한 생산·경영서비스 제공
⑤ 농업경영제도의 안정 및 개선	・현행 농가토지도급경영제의 장기 불변, 농민들의 토지도급경영 권 보장 및 강화(이농 농민공의 권리도 강화) ・자원(自願) 및 유상(有償)의 원칙에 의거 토지도급경영권의 유 동 활성화 ・엄격한 경지보호 및 절약제도 실시, 경지 1억 2,060만 ha 유지 목표 달성 ・집단임지재산권제도 개혁 추진, 농촌종합개혁 심화 ・향・진 행정기구 개혁, 농촌 채무 경감대책 실시

○ 중국 국무원은 3월 22일 '정부업무보고의 중점 업무에 대한 부처 간 역할분담에 관한 의견'⁴에서 55개 중점 업무를 확정하고 업무별 책임부처를 지정하였음.

⁴ 國務院《關於落實《政府工作報告》重點工作部門分工的意見》;國發[2009]13號

표 7. 2009년 정부업무 중 농업부 책임 과제

추진 조치 	주요 내용
5 민간 소비지출 확대	· 가전하향, 농기계하향, 자동차·오토바이하향 사업 적극 추진, 각 사업별 시행세칙 제정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재정부, 농업부, 상무부 책임
의 식량생산 증대 및 발전 농업구조조정	· 식량 재배면적 안정, 단수 제고, 품종구조 조정, 전국적으로 5천만 톤 식량증산 능력 제고 · 농업현대화, 특색농업의 발전, 농산물 가공·판매 수준 제고, 농촌 2,3차 산업 육성, 소도시 건설 및 현급 지역경제 발전 촉진, 농민소득원 개발 및 소득증대 촉진 * 농업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책임
10 농업지원정책 강화	 · 농업재정 투자규모 확대, 2009년 농업재정 7,161억 위안 · 중서부지역 농촌의 공익성 건설 투자 확대, 현 및 현 이하 정부로부터의 자금 갹출제도 폐지, 농업보조 확대 · 식량주산지 중심의 식량정책 추진, 대규모 식량생산 현에 대한 교부금 지원 확대, 장려금 지원 · 밀, 벼 최저수매가격 kg당 각각 0.22위안, 0.26위안 인상 · 주요 농산물 임시 수매비축 실시: 식량, 면화, 식용 식물유, 돼지 비축 확대하여 농산물 시장 조절 능력 강화 *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농업부 책임
Ⅲ 농업인프라확충 농촌 공익사업 강화	· 대규모 토지정리, 토지비옥도 개선, 고표준화 농지조성 · 중대형 및 중점 소형 오염저수지 수질개선사업 전개, 관개체 계 개선 및 소형 논 수리시설 건설 · 농촌지역 6,000만 명의 음용수 문제 해결, 메탄가스 사용농가 500만 호 증대, 농촌문화시설 건설 지속 추진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국토자원부, 수리부, 농업부, 교통운수부 책임
[13] 신형 농업사회화서비스 체계 건설 강화	· 농업기술개발 투자, 농업기술 혁신 성과 보급·서비스 강화 · 기층 농업기술보급, 동식물 질병 예방 및 방제, 농산물 품질 관리감독 등 공공서비스 기구 건전화 · 소비조합, 농민전업합작사(전문협동조합), 대규모 기간 농기업 에 대한 다양한 생산·경영서비스 제공 * 농업부, 과학기술부 책임
III 농업경영제도의 안정 및 개선	 ・관련 법률, 법규와 정책의 수정 완비 ・현행 농가토지도급경영제의 장기 불변, 농민들의 토지도급경 영권 보장 및 강화(이농 농민공의 권리도 강화) ・자원(自願) 및 유상(有償)의 원칙에 의거 토지도급경영권의 유동 규범화. 엄격한 경지보호 및 절약제도 실시 ・집단임지재산권제도 개혁 추진, 농촌종합개혁 심화 ・향・진 행정기구 개혁, 농촌 채무 경감대책 실시 * 농업부, 국토자원부, 국무원 법제반(法制辦), 임업국, 국무원 농촌종합개혁공작소조 책임

추진 조치	주요 내용
② 제품 품질 및 안전생산 수준 전면 제고	· 식품안전법 홍보 강화, 식품 및 약품 안전 사업 정비 · 제품 품질안전 기준 엄격 집행, 엄격한 시장진입제도, 제품 품질이력제도, 리콜제도 실행 * 질검총국, 위생부, 농업부, 상무부, 공상총국, 공업정보화부, 안전관리감독총국 책임
③ 취업촉진	· 농민공 취업기회 확대, 농민공의 고용 안전, 노무수출 조직화, 귀향 농민공의 농촌 공공사업 참여 조직 *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재정부, 농업부, 교육부 책임

표 7. 2009년 정부업무 중 농업부 책임 과제(계속)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2009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

- 2008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집행 현황
 - 농업지원 강화, 경지보호 업무 강화, 농업 및 식량생산 지원을 위한 10대 조치 제정, '전국 5천만 톤 식량증산능력 계획(2009~2020년)'5 수립
 - 식량최저수매가격을 3차례에 걸쳐 인상(인상폭 최대 20% 이상). 2008년 4대 직접 보조(식량직불, 농자재종합보조, 우량종자보조, 농기구구입보조)에 1,030억 위안 지출(전년대비 100% 증가)
 - 주요 농산물에 대해 임시 수매비축 실시: 벼 1,178만 톤, 옥수수 852만 톤, 면화131만 톤, 유지작물 67만 톤
 - 2008년 중앙정부의 농업재정 규모는 5,955.5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37.9% 증가. 식량, 유지작물, 당료, 면화 생산기지와 한작농업(旱作農業) 시범기지 건설 강화. 동식물 질병 예방 및 방제체계 건설, 규모화된 표준화 사양·양식단지 건설, 우량종자 육종 및 번식기지 건설, 농산물 품질안전 검사검역체계 건설,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 식량·유지작물 저장 및 현대물류시설 건설 진전
 - 2008년 식량 생산량 5억 2,850만 톤(전년대비 5.4% 증가), 면화 750만 톤, 유지작물 2,950만 톤(전년대비 14.8% 증가), 당료 1억 3천 만 톤(전년대비 6.7% 증가), 육류 생산량 7,269만 톤(전년대비 5.9% 증가)증가

⁵ 國務院《關於落實《政府工作報告》重點工作部門分工的意見》;國發[2009]13號

중국농업동향

- 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 유기식품 및 농업표준화 생산 발전 가속화, 우수 품질 밀과 벼의 비중이 각각 68%, 74%로 전년대비 각각 6.3%포인트, 1.9%포인트 증가
- 오염저수지 수질개선사업, 대규모 관개지역 관개설비 개선 및 절수 개조사업, 중부 지역 대형 배수펌프설비 교체 계획 조기 완료, 대규모 수리사업 추진
- 농촌지역 4,824만 명 음용수 문제 해결, 메탄가스 사용 농가 500만호 증가, 농촌도로 39.1km 신설 및 보수. 농촌시장 유통활성화 사업(萬村千郷 및 雙百) 지속 추진
- 2009년 경제사회 발전의 9대 주요 임무와 조치
 - 재정 및 통화 확대 정책 실시, 거시경제 조정 강화
 - 농업·농촌 발전 공고화, 농산물 공급 보장, 농민소득 지속적 증대
 - 산업구조조정, 경쟁력 향상
 - 지역경제의 균형 발전, 지역간 경제격차 축소
 - 개혁개방 심화, 과학적 발전체계 구축
 - 에너지 절약 및 배출 감소, 자원절약형·환경친화형 사회 건설
 - 민생 공익사업 확대 추진, 주민들의 이익 실현 문제 해결
 - 사회사업 추진 강화, 경제와 사회의 협조 발전
 - 재해복구 건설 업무 적극 추진, 재해지역 주민들의 생활조건 개선

표 8. 2009년 경제사회발전의 주요 임무와 조치(농업부문)

추진 조치	주요 내용
① 농업재정투자 확대	· 국가재정의 농촌인프라건설 및 사회사업 투자 대폭 확대, 정부의 토지 양도수익 제고, 경지점용세 수입 중 농업부문 투입비율 확대, 중서부지역 농촌의 공익성 건설사업에 대한 투자비중 확대, 신규 발행 국채의 농업부문 사용 확대 · 2009년 농업재정 7,161억 위안(전년대비 1,207억 위안 증가), 농업농촌부문 투자 유인기제 창출 · 중대형 수리시설 건설사업 추진, 중대형 오염저수지 수질개선사업 완성, 대규모 관개지구 절수개조 사업 추진 가속화

표 8. 2009년 경제사회발전의 주요 임무와 조치(농업부문)(계속)

 추진 조치	주요 내용
① 농업재정투자 확대	· 농촌 음용수 안전사업 추진, 6,000만 명의 음용수 안전 문제해결, 메탄가스 사용 농가 500만호 증대, 농촌 전력망 개조 및 공공도로 신설·보수 · 식량주산지 이익보상제도 수립, 대규모 식량생산 현에 대한 교부금 규모 확대 및 장려금 지원, 식량위험기금 정책 완비 · 중서부지역 농촌의 공익성 건설 투자 확대, 현 및 현 이하 정부로부터의 자금 갹출제도 폐지 · 식량주산지 중심의 식량정책 추진, 대규모 식량생산 현에 대한 교부금 지원 확대, 장려금 지원
② 식량과 농업생산 안정	· 엄격한 경지 보호 및 절약제도 실시, 식량 재배면적은 최소전년 면적 이상 유지 · 5천만 톤 식량증산능력 계획 실시, 국가상품식량 생산기지 건설, 우수품질 식량산업 프로젝트 실시, 다수확 기술 시범 보급 · 식량, 유지작물, 돼지 등 품목별 생산발전 정책 지원, 낙농업정돈 및 진흥 업무 지속 추진 · 화학비료 가격 관리 감독 감화, 축산업과 수산업의 표준화 사양·양식 체계 구축, 동식물 전염병 예방 및 방제 체계 구축, 농산물 품질안전 검사검역체계 건설, 우량종자 육종 및 번식체계 구축,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 식량 및 유지작물 저장 및현대 물류시설 건설 · 2009년 식량생산량 5억 톤 수준 유지
③ 농민소득 증대	· 농업현대화, 특색농업의 발전, 농촌 2,3차 산업(특히 농산물 가 공업) 육성 · 향진기업의 발전 및 소도시 건설 촉진, 경제종합개발 시범 진 (鎭) 사업 지속 추진, 현급 지역경제 발전 촉진 · 농촌직업교육 및 도시 이전 농촌노동력 취업 훈련 실시, 국가 차원의 농민공 권익향상 정책 실시, 귀향 농민공의 취업 및 창업 지원
④ 농산물가격 안정	· 식량최저수매가격, 비축 및 방출, 임시 수매비축, 지역간 이동, 수출입 등 다양한 형식의 조절 수단 활용하여 주요 농산물 가 격 안정 도모 · 밀, 벼 최저수매가격 kg당 각각 0.22위안, 0.26위안 인상
5 농촌종합개혁 심화	· 향·진 정부의 사회관리 및 공공서비스 직능 강화, 촌급 공익 사업에 대한 장려금 지원시스템 구축 · 집단임지 재산권제도 개혁, 토지도급경영권 유동 관리 및 서 비스 강화

3. 평가 및 시사점

- 2004년 이후 올해까지 6년 연속 농업·농촌문제를 주제로 한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 공동명의의 '중앙 1호 문건'이 발표됨으로써 농업·농촌문제의 해결이 집권 2기 (2007.11~2012.10) 후진타오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임을 다시 한번 대내외적으로 천명하였음.
 - 특히 2008년 하반기 이후 각종 지표를 통해 중국경제의 성장둔화가 뚜렷하게 나타 난 상황에서도 장기적 해결과제인 농업·농촌문제를 올해 '중앙 1호 문건'으로 채택한 것은 후진타오 정부의 농업·농촌문제 해결 의지를 반영하고 있음.
 -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은 2008년 '중앙 1호 문건'에서 식량안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지위 강화, 삼농문제 해결을 3가지 시종일관해야 할 과제로 제시한 바 있어 농업·농촌문제 해결이 오랜 기간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가 될수 있음을 시사하였음.
- 올해 '중앙 1호 문건'과 각종 문건에서 제시된 중국의 2009년도 농정 방향과 추진 과 제는 그동안 반복적으로 강조되어 온 것으로 특별히 새로운 정책이나 추진 과제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음.
- 2004년 이후 매년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농정 방향과 추진 과제는 크게 ①농업 재정 투자 확대 및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지위 강화, ②최소 경지면적 기준 및 95% 식량자급률 목표 설정 등을 통해 주요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③농업생산기 반시설 확충을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 ④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 서비스체계 강화, ⑤농촌지역 공공서비스 수준 제고, ⑥토지도급경영제도의 안정 및 개선, 토지사용권 강화 및 토지도급경영권 유동 활성화를 통한 규모화경영 실현, ⑦농촌개혁(행정조직 개혁, 농촌금융체제 개혁 등)의 지속 추진으로 요약할 수 있음.
- 이들 농정 방향과 추진 과제는 대부분 중장기적인 것으로 향후에도 반복적으로 제시 될 것으로 보임.
- 국내외적으로 중국 개혁개방 30주년이 되는 2009년 10월 개최된 중국 공산당 제17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08.10.9~13; 이하 제17기 3중전회라 칭함)에서 최근 의 삼농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농촌 토지제도의 획기적인 개혁이 이루어질 것이라

는 추측이 무성하였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009년 농정 방향과 추진 과제에서도 이전과 구별되는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음.

- 다만 법률적으로 허용되어 있음에도 그 실적이 저조한 농지유동화를 촉진하기 위해 유혀의 토지사용권(토지도급경영권) 시장 설치를 강조함으로써 농민들의 토지사용 권 행사 권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점이 주목됨.
- 중국 정부는 농업농촌문제의 해결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제시한 가운데 '강농·혜농정책 (強農惠農政策)'의 실현을 위해 농업부문에 대한 재정지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 으며 2009년도에도 농업재정을 대폭 증액하여 농업성장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였음.
 - 중국 재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2009년도 중앙재정 중 "삼농"부문에 배정한 자금은 7161.4억 위안(=약 143조 2,280억 원) 으로 작년대비 1,205.9억 위안 증가⁶
 - 이 중 4대 농업보조금(식량직불보조, 우량종자보조, 농기구구입보조, 농자재종합직 불보조) 1,230.8억 위안(=약 24조 6,160억 원)
- 농촌지역 생산 및 생활조건 개선 자금 2,642,2억 위안(=약 52조 8,440억 원)
- 농촌지역 공공투자사업 자금 2.693.2억 위안(=약 53조 8.640억원)
- 주요 농산물 비축 비용 및 이자 지출 576.2억 위안(=약 11조 5.240억원)
- 기타 지방정부 교부금 및 일반성 이전지출

[참고자료]

中共中央、國務院《關於2009年促進農業穩定發展農民持續增收的若幹意見》;中發[2009]1號農業部《關於做好2009年農業農村經濟工作的意見》;農發[2009]1號農業部新聞辦公室。2009.2.18. "2009年農業部決定爲農民辦理22件實事"(http://www.agri.gov.cn)國務院《關於落實《政府工作報告》重點工作部門分工的意見》;國發[2009]13號國務院《關於落實《政府工作報告》重點工作部門分工的意見》;國發[2009]13號

⁶ 중국의 정부지출은 ①일반공공서비스(32항목), ②외교(8항목), ③국방(3항목), ④공공안전(10항목), ⑤교육(10항목), ⑥과학기술(9항목), ⑦문화체육 및 대중매체(6항목), ⑧사회보장 및 취업(17항목), ⑨사회보장기금지출(6항목), ⑩의료위생(10항목), ⑪환경보호(10항목), ⑫도시·농촌사회 사무(10항목), ⑬농림수산 사무(7항목), ⑭교통운수(4항목), ⑯공업·상업·금융 등 사무(18항목), ⑯기타 지출(4항목), ⑰이전지출(8항목) 등 17목 172항으로 구분됨. 2009년도 농림수산 사무 항목의 지출 규모는 3,446.6억 위안으로전년대비 744.4억 위안 증가(27%)

농촌소비 확대 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1. 정책 실시 개요

- 중국 정부는 2007년 2분기 이후 경기하강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내수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2007년 말 부터 농촌소비 확대를 위한 가전하향(家電下郷)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가전하향 사업은 농촌지역의 가전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농민들이 정부가 지정한 가 전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구입가격의 13%를 직접 보조해주는 사업임.
- 중국 재정부는 2007년 11월 15일자 '가전하향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통지'¹에 근거하여 가전하향(家電下鄉)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음.
- 《통지》는 가전하향 사업의 목적을 "농촌소비 확대, 농민생활 수준 향상, 도농 통합 발전 및 국내외시장 발전 촉진, 사회주의 신농촌건설 촉진"이라고 밝힘.
- 시범사업 실시 지역은 산동성, 하남성, 사천성, 산동성 청도시, 보조 대상 품목은 컬러TV. 냉장고, 핸드폰 3개 품목이었음.
- 시범사업 기간은 당초 2007년 12월 1일부터 2008년 5월 31일 까지였으나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시행되었음.
- 중국 상무부와 재정부는 2008년 10월 13일자 '가전하향 사업 확대 실시 방안 하달에 관한 통지'²에 의거하여 2008년 12월 1일부터 보조 대상 품목에 세탁기를 추가하여 4년 기한의 가전하향 사업을 순차적으로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였음.
- 2009년 2월 1일 이후 전국 31개 성(자치구·직할시). 5개 시. 신강생산건설병단(新

^{*} 작성: 전형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hichon@krei.re.kr)

¹ 財政部《關於開展家電下鄉試點工作的通知》;財建[2007]710號

² 商務部,財政部《關於印發'家電下鄉推廣工作方案'的通知》,財建[2008]680號

疆生產建設兵團)3에서 가전하향 사업이 실시되고 있음.

- 중국 국무원 판공실(辦公廳)이 2008년 12월 30일 공포한 문건 '유통활성화, 소비확대에 관한 의견' 4은 보조 대상 품목에 오토바이, 컴퓨터, 온수기, 에어컨, 전자레인지, 전기난로를 추가하고, 각 지역별로 현지 사정에 따라 이들 품목 중에서 추가 보조품목을 선택하도록 하였음.
- 중국 재정부, 상무부, 공업·정보화부는 2009년 2월 26일자 '가전하향 정책의 실시 강화에 관한 통지'⁵에 의거하여 보조 대상 품목과 농가당 구매가능 수량을 확대하는 조치를 실시하였음.
- 보조대상 품목은 오토바이, 컴퓨터, 온수기, 에어컨(지역별로 4개 품목 중 2개 품목 자율 선택), 전자레인지, 전기난로를 추가하여 10개 품목, 농가당 구매가능 수량은 최대 2대로 확대하였음.
- 보조대상 품목 중 오토바이는 가전하향 사업으로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자동차하향 (汽車下鄕) 사업으로 이관하도록 하였음(가전하향 보조 대상 품목은 총 9개).
- 중국 국무원은 2008년 12월 30일자 국무원 판공실(辦公廳) 명의의 문건 '유통활성화, 소비확대에 관한 의견'⁶에서 총 20가지의 추진과제 중 자동차 소비 촉진을 주요 추진 과제의 하나로 제시하였음.
- 중국 국무원은 2009년 1월 향후 3년(2009~2011년) 기간의 '자동차산업 조정 및 진흥 계획(汽車產業調整和振興規劃)'을 발표하고, 주요 조치의 하나로 자동차하향(汽車下郷) 사업의 추진을 제시하였음.7
- 《계획》은 중앙정부 재정 50억 위안(약 1조원)을 재원으로 하여 2009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배기량 1,300cc 이하 소형 자동차 구매시 보조금을 지급 하는 자동차하향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였음.

³ 신강위그르족자치구 변경지역에 위치하며 중앙정부와 자치구가 공동으로 관할하는 특별 행정구역

⁴ 商國務院辦公廳《關於搞活流通擴大消費的意見》; 國辦發[2008]134號

⁵ 商務部財政部工業和信息化部《關於加大家電下鄉政策實施力度的通知》;財建[2009]48號

⁶ 國務院辦公廳《關於搞好流通擴大消費的意見》; 國辦發[2008]134號

⁷ 國務院《關於印發汽車產業調整和振興規劃的通知》;國發[2009]5號

표 1. 농촌소비 확대 정책 추진 일지 및 관련 문건

일자	추진 내용
2007.11.15	중국 재정부, 가전하향 시범사업 추진 계획 발표 -財政部《關於開展家電下鄉試點工作的通知》(財建(2007)710號) -《家電下鄉補貼資金管理暫行辦法》
2007.11.26	중국 상무부·재정부, 가전하향 시범사업 실시방안 발표 -商務部、財政部關於印發《家電下鄉試點工作實施方案》的通知(商綜發(2007)472號) -《家電下鄉試點工作實施方案》
2008. 2. 2	중국 상무부·재정부, 가전하향 시범사업 개선사항 발표 -商務部,財政部《關於家電下鄉試點工作有關問題的通知》(商綜發〔2008〕27號)
2008. 5.26	중국 상무부·재정부, 가전하향 시범사업 기간 연장(2008.12.31까지 연장) -商務部,財政部《關於繼續實施家電下鄉政策的通知》(財建(2008)325號)
2008.10.13	중국 상무부・재정부, 가전하향 사업 확대 실시 계획 발표 -商務部、財政部《關於印發《家電下鄉推廣工作方案》的通知》(財建(2008)680號) -《家電下鄉推廣工作方案》 -商務部、財政部《關於做好家電下鄉推廣工作有關問題的通知》(商綜發(2008)426號, 2008.10.23)
2008.11.28	중국 재정부·상무부·공업정보화부, 가전하향 사업 전국 확대 실시 -財政部、商務部、工業和信息化部《關於全國推廣家電下鄉工作的通知》(財建(2008)862號)
2008.12.16 (2009.2.5)	중국 상무부・재정부, 가전하향 사업 참여 기업 선정 기준 발표 -商務部、財政部、《關係計畫家電下鄉銷售企業的通知》、商院發(2008)502號 -商務部、財政部、《關係計畫市的推薦家電下鄉銷售企業等有關問題的通知》(商院電(2009)324號
2008.12.30	중국 국무원, 유통활성화 및 소비확대 과제의 하나로 가전하향 사업의 보조대 상 품목 확대 및 자동차 소비 촉진 과제 제시 -國務院辦公廳《關於搞好流通擴大消費的意見》; 國辦發(2008)134號
2009.1	중국 국무원, 자동차산업 조정 및 진흥계획 중 자동차하향 사업 계획 발표 -國務院《關於印發汽車產業調整和振興規劃的通知》(國發〔2009〕5號)
2009.2.10	중국 국가질검총국, 가전하향 제품의 품질 확보 5대 조치 발표
2009.2.26	중국 상무부·재정부·공업정보화부, 가전하향 사업 확대 계획 발표 -商務部,財政部,工業和信息化部《關於加大家電下鄉政策實施力度的通知》(財建 (2009)48號)
2009.3.10	중국 재정부·국가발전개혁위원회·공업정보화부·공안부·상무부·공상총국·질검 총국, 자동차·오토바이 하향 사업 실시 방안 발표 -財政部,國家發展改革委,工業和信息化部,公安部,商務部,工商總局,質檢總局《關於印發《汽車摩托車下鄉實施方案》的通知》(財建(2009)104號)
2009.4.15	중국 재정부·공업정보화부, 제1차 자동차·오토바이 하향 생산기업 명단 및 제품 목록 발표 -財政部,工業和信息化部《關於印發汽車摩托車下鄉生產企業名單及產品目錄的的通知》(財建[2009]153號)
2009.4.23	중국 재정부·상무부·공업정보화부·국가발전개혁위원회·중앙선전부·농업부·환경 보호부·공소총사(供銷總計)·세무총국·공상총국·질검총국, 가전하향 사업 시행세칙 발표 -財政部,商務部,工業和信息化部,國家發展改革委,中宣部,農業部,環境保護部,供銷總 社,稅務總局,工商總局,質檢總局《關於印發《家電下鄉操作細則》的通知》(財建〔2009〕 155號);《家電下鄉操作細則》

- 중국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상무부, 공상총국(工商總局), 질검총국(質檢總局)은 2009년 3월 10일자 '자동차·오토바이 하향 사업 실시 방안 하달에 관한 통지'8에 근거하여 자동차·오토바이 하향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자동차·오토바이하향 사업은 농민들이 정부가 지정한 자동차(소형 화물트럭 및 버스), 오토바이를 구입하는 경우 각각 구입가격의 10%, 13%를 직접 보조해주는 사업임.
- 단, 자동차의 경우 5만 위안(약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정액 5,000위안(약 1백만 원), 오토바이의 경우 5,000위안 이상인 경우 정액 650위안(약 13만 원)을 직접 보조하고 있음.
- 당초 가전하향 사업에 포함되었던 오토바이 품목이 자동차하향 사업으로 이관되어 현재 '가전하향 사업'과 '자동차·오토바이 하향 사업' 등 2가지의 농촌소비 확대 정책 이 시행되고 있음.9

2. 주요 정책 내용

2.1. 가전하향(家電下鄉) 사업¹⁰

□ 사업 내용 및 담당 부처

- 농민(농업호적 소유자)이 정부가 지정한 가전제품 구매 시 판매가격의 13% 직접 보조
 - 보조 자금은 중앙정부 80%. 지방정부(성급) 20% 공동 부담
- 사천성 문천(汶川) 대지진 피해 지역 51개 현(縣)과 5개 소수민족 자치구(신강위구르 족자치구, 내몽고자치구, 영하회족자치구, 서장자치구, 광서장족자치구)의 보조 자금 은 전액 중앙재정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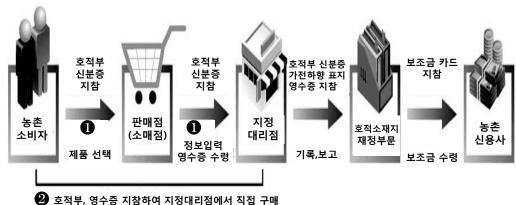
⁸ 財政部,國家發展改革委,工業和信息化部,公安部,商務部,工商總局,質檢總局《關於印發《汽車摩托車下鄉實施方案》的通知》,財建[2009]104號

⁹ 이외에도 2004년보터 시작된 농기계구입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농기계하향(農機下鄕)사업도 농촌소비 확대 정책에 포함시킬 수 있음.

^{10 2009}년 4월 23일 공포된 '가전하향 사업 시행세칙(家電下鄕操作細則)'은 2009년 2월 1일 이후 전국 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가전하향 사업의 전반을 규정하고 있음.

- 사업시행 부처: 재정부(주무부처), 상무부, 공업정보화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 농업부, 환경보호부, 중국소비협동조합중앙회(全國供銷合作總 社), 국가세무총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등 11개 부처
- 상무부는 가전하향 사업과 관련한 제반 정보(지역별 보조 대상 제품 목록, 제품 생산 기업 등)를 제공하는 '가전하향정보관리계통(家電下鄉信息管理系統)' 사이트 운영¹¹

○ 보조금 수령 절차



출처: 중국 공업정보화부 '가전하향 전제보도(家電下鄉專題報道)'(http://www.miit.gov.cn)

□ 보조 품목

- 보조 품목은 시범사업 기간 3개 품목에서 전국 확대 실시 과정에서 총 9개로 증가하 였으며, 구매 품목의 가격 상한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음(표 2 참조).
- 농가당 구매 가능 수량은 시범사업 시 2대였으나 전국 확대 실시 과정에서 1대로 줄 었다가 2009년 2월 가전하향 사업 강화 방침에 따라 다시 2대로 증가
- 보조 대상 품목의 구체적인 제품 목록은 공개 입찰을 통해 상무부와 재정부가 확정하 며, 공개 입찰은 1년 1회를 원칙으로 함.

¹¹ http://jdxx.zhs.mofcom.gov.cn/index.shtml

- 낙찰 기업 및 제품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2009년 3월 현재 보조 대상 품목 및 제품은 냉장고 1,393개 제품(58개 기업), 컬러TV 267개 제품(10개 기업), 핸드 폰 396개 제품(16개 기업), 세탁기 973개 제품(36개 기업), 컴퓨터 182개 제품, 에어컨 303개 제품, 온수기 485개 제품임.¹²
- 중국에 진출한 국내기업 가운데 삼성 제품은 핸드폰 14개 제품(298~1,000위안),
 냉장고 3개 제품(1,990~2,150위안), 세탁기 6개 제품(1,650~1,890위안), LG 제품은 핸드폰 7개 제품(298~998위안), 세탁기 4개 제품(1,450~1,990위안)이 포함되어 있음.

시기	보조 품목의 변화
시범사업	컬러TV(1,500위안), 냉장고(2,000위안), 핸드폰(1,000위안)
2008.10.13	컬러TV(2,000위안), 냉장고(2,500위안), 핸드폰(1,000위안), 세탁기(2,000위안)
2009. 2.26	기존 4개 품목에 컴퓨터, 온수기, 에어컨, 전자레인지, 전기난로 등 5개 품목 추가(오토바이도 포함되었으나 오토바이·자동차 하향 품목으로 이관)
2009. 4.23	컬러TV(3,500위안), 냉장고(2,500위안), 핸드폰(1,000위안), 세탁기(2,000위안), 에어컨(벽걸이형, 2,500위안), 에어컨(입식, 4,000위안), 온수기(태양열, 4,000위안),

표 2. 보조 품목의 변화 및 품목별 가격 상한

○ 가전하향 사업 참여 생산 및 유통기업의 조건

레인지(1,000위안), 전기난로(600위안)

- 각 성(자치구·직할시)에서 연간 가전제품 매출액이 3억 위안 이상(단, 서부지역은 3억 위안 이하 가능)

온수기(전기식, 1,500위안), 온수기(가스식, 2,500위안), 컴퓨터(3,500위안), 전자

- 원칙적으로 각 성(자치구·직할시)의 모든 현(시)까지 배송 및 애프터서비스가 가능한 기업(단, 신강위그루족자치구, 청해성, 서장자치구는 50% 이상 가능)

¹² 중국 상무부 '가전하향정보관리계통(家電下鄉信息管理系統)'(http://jdxx.zhs.mofcom.gov.cn). 중국 공업 정보회부 '가전하향 전제보도(家電下鄉專題報道)'(http://www.miit.gov.cn).

□ 사업 지역 및 기간

- 2007년 12월부터 1년 동안의 시범사업 이후 가전하향 사업 기간은 4년으로 통일
 - 2009년 2월 현재 전국 31개 성(자치구·직할시), 5개 시 및 신강생산건설병단에서 가전하향 사업 실시(표 3 참조)

\	3	가전하향	사어	식시	지연	민	기가
ш.	J.	7111018	$^{\prime}$ 1 \mapsto	2/1	\sim	_	711

기간	지역
2007.12.1 ~ 2011.11.30 (시범사업 기간 포함)	· 시범사업 실시 지역· 3개 성(자치구, 직할시), 1개 시- 산동성, 하남성, 사천성, 산동성 청도시(青島市)
2008.12.1 ~ 2012.11.30	 확대 실시 지역(2008.11.13 추가) 9개 성(자치구, 직할시), 1개 시 내몽고자치구, 요녕성, 흑룡강성, 안휘성, 호북성, 호남성, 광서 장족자치구, 중경시, 섬서성, 요녕성 대련시(大連市)
2009. 2.1 ~ 2013. 1.31	 ・확대 실시 지역(2008.11.28 추가) ・19개 성(자치구, 직할시), 3개 시, 신강생산건설병단 - 길림성, 신강위그루족자치구, 감숙성, 청해성, 영하회족자치구, 서장자치구, 북경시, 천진시, 하북성, 산서성, 상해시, 절강성, 강소성, 북건성, 해남성, 강서성, 광동성, 운남성, 귀주성, 광동성 심천시(深圳市), 절강성 영파시(寧波市), 복건성 하문시(廈門市)

□ 가전하향 사업 관련 표지





<그림 1> <그림 2>

38 • 2009 봄호





<그림 4>



<그림 3>

<그림 5>

- 그림 1: 가전하향 제품 외부포장의 전면 인쇄
- 그림 2: 세탁기, 컬러TV, 냉장고의 외부포장 좌측면 오른쪽 모서리 인쇄
- 그림 3: 핸드폰 외부포장의 전면에 인쇄
- 그림 4: 가전하향 제품 설명서 표지 왼쪽 모서리 및 오른쪽 하단 모서리 인쇄
- 그림 5: 가전하향 제품 판매점 표지

2.2. 자동차·오토바이하향(汽車摩托車下鄉) 사업

□ 사업 내용

- 정책 목표
 - 농민 구매력 제고, 농촌 소비시장 활성화, 농민들의 생활조건 개선,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기술 개선, 자동차 및 오토바이 산업구조 고도화, 내수 및 수출 확대

○ 보조 품목 및 대상, 사업기간

Ξ 1	자동차 오토바이	하향 사언이	보조 포모	대사	사연기가
표 4.	ハラハ・エエリい	어ố 사다리	エエ ㅋㅋ .	uia.	ハロコフロ

보조 품목	보조 대상 및 수량 제한	사업 기간
① 소형 화물트럭 (3륜자동차, 4륜저속화물트럭 폐차)	폐차의 차주와 구매하는 차량의 차주가 동일한 농민(농업호적) 농가당 최대 1대	2009.3.1~12.31
② 배기량 1,300CC 이하 소형버스	농민(농업호적) 농가당 최대 1대	2009.3.1~12.31
③ 오토바이	농민(농업호적) 농가당 최대 2대	2009.3.1~2013.1.31

- 주 1. 3륜 자동차는 3륜 농용차, 4륜 저속화물트럭은 4륜 농용차를 의미함.
 - 2. 소형 화물트럭은 총 중량이 1.8톤 이상, 6톤 이하, 최소 4륜, 화물 적재용 차량 의미함.
 - 3. 소형 승용차는 배기량이 1,300CC 이하, 최소 4륜, 승객 탑승용 차량 의미함(승용차는 포 함하지 않음).

○ 보조 범위 및 재원

- 보조 자금은 중앙정부 80%, 지방정부(성급) 20% 공동 부담
- 사천성 문천(汶川) 대지진 피해 지역 51개 현(縣)과 5개 소수민족 자치구(신강위구 르족자치구, 내몽고자치구, 영하회족자치구, 서장자치구, 광서장족자치구)의 보조 자금은 전액 중앙재정 부담

표 5. 자동차·오토바이 하향 사업의 품목별 보조 범위

보조 품목	보조 범위
① 소형 화물트럭 (3륜자동차, 4륜저속화물트럭 폐차)	 · 판매가격의 10% 직접 보조 · 50,000위안 이상인 경우 대당 5,000위안 정액보조 · 3륜자동차, 4륜저속화물트럭 폐차할 경우 -3륜 자동차: 대당 2,000위안 직접 보조 -4륜 저속화물트럭: 대당 3,000위안
② 배기량 1,300CC 이하 소형버스	· 판매가격의 10% 직접 보조 · 50,000위안 이상인 경우 대당 5,000위안 정액보조
③ 오토바이	· 판매가격의 13% 직접 보조 · 5,000위안 이상인 경우 대당 650위안 정액보조

- 중국 재정부와 공업정보화부는 2009년 4월 15일자 '제1차 자동차·오토바이 하향 생산기업 명단 및 제품 목록 하달에 관한 통지'¹³에서 자동차·오토바이 하향사업에 참여하는 생산기업 및 제품을 공표하였음.
 - 자동차(소형 화물트릭, 소형버스 포함): 생산기업 73개, 소형 화물트릭 4,385개 제품, 소형 버스 360개 제품
 - 오토바이: 생산기업 177개, 8,686개 제품

□ 자동차·오토바이 하향 사업 관련 표지





〈 자동차 하향 표지 〉

〈 오토바이 하향 표지 〉







〈 자동차·오토바이 하향 표지 부착 위치 예시 〉

3. 평가 및 시사점

○ 2002년 이후 경기상승 국면이 지속되었던 중국 경제는 2007년 2분기를 정점으로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기 시작하였으며, 국내경제 부진과 함께 미국발 금융위기로부터 촉발된 세계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수출증가율 둔화, 경제성장률 둔화 등 경기 하강국 면이 지속되고 있음.

¹³ 財政部工業和信息化部《關於印發汽車摩托車下鄉生產企業名單及產品目錄的的通知》(財建[2009]153號

- GDP 성장률 추이: 2006년 11.6%→ 2007년 1/4분기 11.1%→ 2/4분기 12.7%→ 3/4분기 11.5%→ 4/4분기 11.2%→ 2008년 1/4분기 10.6%→ 2/4분기 10.4%→ 3/4분기 9%→ 4/4분기 6.8%→ 2009년 1/4분기 6.1%
- 수출 증가율 추이: 2004년 35.4%→ 2005년 28.4%→ 2006년 27.2%→ 2007년 25.7%→ 2008년 1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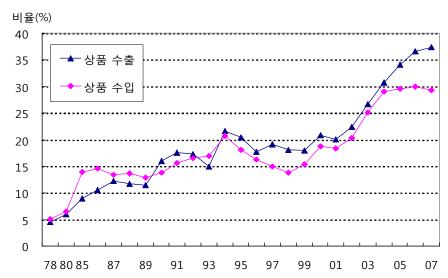


그림 6. 중국 경제의 수출입의존도 추이(대 GDP 비율)

- 개혁개방 이후 중국 경제의 중요한 성장엔진(그림 6 참조) 이었던 수출이 급감하여 성장 이 둔화됨에 따라 중국 정부는 향후 안정적인 성장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 수출주도형 성장모델로부터 내수확대 중심의 경제성장 모델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음.
 - 최근의 경기하강과 성장둔화 국면에서 중국의 거시경제정책 기조도 경기과열과 인플 레이션 방지(兩防)→ 성장유지와 인플레이션 억제(一保一控)→ 성장유지와 발전촉진(保增長促發展)으로 변화하였음.
- 중국 정부는 2008년 12.8~10일 개최된 중앙경제공작회의(中央經濟工作會議)에서 2009년도 경제정책 목표를 '성장유지와 발전 촉진'으로 설정하고, 재정 및 통화확대를 통한 내수 활성화를 5대 추진과제의 하나로 제시하였음.

- 4조 위안 규모의 재정투자 확대를 통해 경기부양을 도모하는 한편 수출에 의한 경제 성장 견인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성장둔화를 내수시장 부양을 통해 보 완한다는 계획임.
- 중국 정부는 내수확대의 가장 큰 잠재력이 농촌 소비시장에 있다는 인식하에 농촌 소비확대를 위한 주요한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가전하향 사업과 자동차·오토바이 하 향 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있음.
- 농촌주민 1인당 소득은 2002년 2,476위안에서 2008년 4,761위안으로 증가하였으며, 농촌지역 소비증가율은 2003년 6.8%에서 2004년 10.7%로 급증하였고 2007년에는 15.8%로 지속적인 성장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개혁개방 30주년을 맞아 제17기 3중전회(2008.10.9~13)에서 채택된 '농촌개혁 발전 추진에 관한 몇 가지 중대문제의 결정'에서는 2020년까지 2008년 대비 농촌주민 소득 2배 중대. 농민의 구매력 향상을 6대 기본 목표와 임무의 하나로 제시하였음.
- 중국의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이 새로운 소비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농민소득 과 농촌지역의 소비증가율이 꾸준히 증가하여 사업 시행 4년 동안 농촌 소비확대를 통한 내수부양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중국의 농촌인구가 총 인구의 55.1%(2007년)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농촌지역이 거대한 소비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국가통계국은 농촌주민이 1,000억 위안을 소비를 실현하면 전체 국민경제에 2,356억 위안의 소비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고 추정하였음.
- 가전하향 사업 보조금은 2008년 90억 위안에서 2009년에는 약 200억 위안으로 증가했으며, 상무부는 2009년도에 약 1,500억 위안의 내수확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중국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전하향 및 자동차오토바이 하향사업의 농촌 소비시장 부양 효과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음.
 -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2009.3.5.~13)에서 공업정보화부장 리이중 (李毅中)은 가전하향 사업의 내수확대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였음.
 특히 전자제품 제조업과 가전공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동시에 철강, 화공, 기계제조업의 성장도 견인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음.

중국농업동향

- 2008년 10월 말 현재 가전하향 제품 판매량이 350만 대 이상으로 전년 동기대비 40% 성장하였으며, 사업 시행 4년 동안 판매량은 4.8억 대, 누적 판매액은 9,20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가전하향 시범사업 지역인 산동성은 2007.12~2009.1.31 동안 총 123만 대(냉장고 76만대, 컬러TV 41만 대, 핸드폰 3.5만대, 세탁기 3만대)의 판매량을 나타냈음. 하남성은 2007.12~2008년 말까지 판매량 160만 대, 판매액 20억 위안 이상 (보조 1.3억 위안), 사천성은 판매량 113만대, 판매액 16억 위안(보조 2.1억 위안)을 나타냄.
- 자동차오토바이 하향 사업은 50억 위안의 재정보조를 통해 농촌지역 자동차 소비 시장을 발전을 촉진하여 150만대의 자동차 소비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대당 평균가격을 3.5만 위안으로 가정하면 약 500억 위안의 농촌소비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
- 상무부 대변인 야오지엔(姚堅)은 2009년 1/4분기 전국 가전하향 제품 판매량 270만 대, 판매액 40억 위안을 나타냈으며, 이 중 3월 판매량 148.5만대, 판매액 22.4억 위안으로 각각 전년 동기대비 70%, 72% 증가했다고 밝힘. 자동차하향 사업도 규모 이상 도소매업 자동차류 소매액이 전년 동기대비 11.1% 증가했다고 밝힘.
- 이와 같은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시행중인 농촌 소비확대 정책이 일부 부농을 위한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구매력이 약한 빈농은 물론 도시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이외에도 사업 시행과정에서 판매상들의 손실 보전 문제, 복잡한 보조금 지급 및 수령 절차, 가짜 제품의 유통 문제 등이 제기되어 안정적인 사업시행과 내수부양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시행과정에서 개선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신랑자동차채널(新浪汽車頻道)와 신화신국제정보자문(북경)유한공사(新華信國際信息咨詢北京有限公司)가 공동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농민생활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소비촉진 효과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56.6%, 영향을 미 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도 41.8%로 높게 나타났음.

- 또한 응답자의 39.4%가 보조금액이 너무 적다고 대답했고, 차 가격의 변동(21.5%), 복잡한 절차(18.7%), 애프터서비스 부족(7.7%) 등을 주요 문제로 지적하였음.

[참고자료]

財政部《關於開展家電下鄉試點工作的通知》;財建[2007]710號

財政部,工業和信息化部《關於印發汽車摩托車下鄉生產企業名單及產品目錄的的通知》(財建[2009]153號

財政部,國家發展改革委,工業和信息化部,公安部,商務部,工商總局,質檢總局《關於印發《汽車摩托 車下鄉實施方案》的通知》;財建[2009]104號

財政部、商務部、工業和信息化部、國家發展改革委、中宣部、農業部、環境保護部、供銷總社、稅務總局、工商總局,質檢總局《關於印發《家電下鄉操作細則》的通知》(財建〔2009〕155號);《家電下鄉操作細則》

國務院辦公廳《關於搞活流通擴大消費的意見》;國辦發[2008]134號

國務院辦公廳《關於搞好流通擴大消費的意見》;國辦發[2008]134號

國務院《關於印發汽車產業調整和振興規劃的通知》;國發[2009]5號

商務部、財政部《關於印發、家電下鄉推廣工作方案的通知》;財建[2008]680號

商務部 "家電下鄉信息管理系統"(http://jdxx.zhs.mofcom.gov.cn)

工業和信息化部"家電下鄉專題報道"(http://www.miit.gov.cn)

新華信·Motorlink·鄭雪芹. 2009. "汽車下鄉將拉動農村市場 補貼太少成潰憾"

농산물 지리적 표시제 실시 현황 및 전망

1. 실시 배경과 의의

- 중국에서 농산물 지리적표시제는 "농산품 지리표지(地理標志)"¹로 표기됨. 이는 세계 무역기구(WTO)가 제정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약칭 TRIPS 협정)》과 중국이 2001년 수정한 《상표법(商標法)》의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로 등장했음. 이것은 상표 권. 특허권. 판권과 병립되는 일종의 지적재산권이라 할 수 있음.
- 이후 중국은 오랜 역사와 전통, 광활한 대지, 다양한 기후풍토에서 나오는 농산품과 공산품을 지적재산권이라는 규정으로 보호하고 이를 경제적 가치로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해왔음.
 - 특히 WTO 가입 이후에는 WTO의 규정을 준수하면서 자국의 농산물을 보호하는 한 편 수출에 적극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중국은 최근 농산품 지리표지에 대한 중요성을 점차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이를 삼농 문제의 해결에 적극 활용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음.
 - 2007년 중공 중앙과 국무원은《현대화농업을 적극 추진하고 사회주의 신농촌건설을 착실히 추진하기 위한 약간 의견(關於積極發展現代化農業, 紮實推進社會主義新農村建設的若幹意見)》에서 법에 의한 농산품등록상표, 지리표지 및 지명상품의 보호 (依法保護農產品注冊商標, 地理標志和知名品牌)를 명확히 제시했음.

^{*} 작성: 정정길(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사무소장, cgchung@krei,re,kr), 박경철(북경대학 박사과정, kcpark@krei,re,kr)

¹ 중국에서의 지리표지(地理標志)제도는 '원산지표시제도' 또는 '지역명칭표시제도' 등으로 번역할 수 있음.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진정한 의미의 "농산물 지리적표시제"는 중국 농업부가 2007년 12월 공표하고 2008년 2월 시행을 시작한 《농산품지리표지관리법(農產品地理標志管理辦法)》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음

- 2004년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과 농업부가 공동으로 《농산품지리표지보호와 상표등록업무에 관한 통지(關於加強農產品地理標志保護與商標注冊工作的通知)》를 발표했음. 국가지적재산권보호작업조(國家保護知識產權工作組)가 제정한 《2007년 중국지적재산권보호행동계획(2007年中國保護知識產權行動計劃)》에서 특히 "지리표지사업의 연결망을 구축해 지리표지가 농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철저히 연구하여 시의적절하게 경험을 전파할 것"을 요구했음.
- 즉, 중국정부는 지리표지의 보호가 지적재산권 보호의 필요조건이자 농민의 수입증대에 중요한 수단임을 강조했음. 이로 인해 지리표지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와 토론 절차를 거쳐 지리표지의 보호 강화, 농민의 소득증대, 농촌의 발전 및 농업의 현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함.
- 더욱이 중국은 우리나라의 농산물 지리적표시제에 해당하는 농산품지리표지에 관한 법률인 《농산품지리표지관리법(農產品地理標志管理辦法)》을 2007년 12월에 제정하여 2008년 2월부터 시행함으로써 그동안 분산 관리되었던 농산물의 지리표시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체계와 관리체계를 갖추게 되었음. 이후 이 제도의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농업부 산하 농산품품질안전중심(農產品質量安全中心)이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중국 농산물 지리표시 인증상품을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발표하였음.

2. 법률적 근거와 실시체계

○ 2008년 2월 《농산품지리표지관리법》이 국무원과 농업부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고 및 시행되기 전까지는 여러 관련법과 관리기관의 분산으로 농산품의 지리표지의 보호와 관리에 혼선을 빚어 온 것으로 보임.

2.1. 법률적 근거

○ 지리표지와 관련한 법률적 근거는 다음과 같은 논쟁을 거쳐 진행되었음. 그 첫 번째 가 《상표법》의 보호문제임. 일찍이 1993년 국무원이 《상표법실시세칙(商標法實施 細則)》(2002년 수정)을 제정해 지리표지를 상표로 증명하기 위해 상표법법률보호체 계로 편입시켰음. 이 실시세칙에 근거해 1994년 국가공상국에서 《집체상표, 상표등

록증명 및 관리방법(集體商標, 證明商標注冊和管理辦法)》(2003년 수정 시 상세히 규정)을 제정했음. 2001년 새로운 《상표법》에서도 지리표지보호의 특별조항을 추가 규정하였음.

- 두 번째는 이전 국가품질기술감독국(國家質量技術監督局)이 발표하고 실시한《원산지역산품보호규정(原產地域產品保護規定》에서는 원산지 명칭에 대한 전문 관리를 위해 "모든 지방은 원산지역산품의 보호를 보고"하고, "반드시 본 규정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하며, "어떤 단위나 개인도 원산지역산품전용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세 번째는 이전 국가출입국검험검역국(國家出入境檢驗檢疫局)이 2001년 발표한《원 산지표기관리규정(原產地標記管理規定)》 제4조 규정에 "본 규정에서의 원산지표기 는 원산국표기와 지리표지"를 지칭한다고 되어있음.
- 네 번째는 이전 국가품질기술국과 국가출입국검험검역국의 합병 후 설립한 국가품질 감독검험검역총국(國家質量監督檢驗檢疫總局)이 《원산지역산품보호규정》과 《원산지표기관리규정》의 지리표지관리를 하나로 통합해 《지리표지산품보호규정(地理標志產品保護規定)》(2005년 7월 15일 발표)을 다시 발표하고 《원산지역산품보호규정》을 폐지함.
- 하지만 이전의 법률체계에 의한 지리표지는 《지리표지산품보호규정》에 근거하고 있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농산물 지리적표시제"와는 일정한 차이가 있음.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산물 지리적표시제의 개념은 2008년 2월 농업부가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농업법령 제11호 《농산품지리표지관리법》의 시행과 함께 실시되었다고할 수 있음.
- 이후 농산품 지리표지 등록과 사용관리를 규범하기 위해 2008년 8월 《농산품품질안 전법(農產品質量安全法)》, 《농산품지리표지관리법》 등의 유관 규정에 근거하여 농업 부는 《농산품지리표지등록절차(農產品地理標志登記程序)》, 《농산품지리표지사용 규범(農產品地理標志使用規範)》을 제정해 발표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음.

2.2. 《농산품지리표지관리법》 제정 의의

- 중국의 지리표지는 그간 국가공상국, 국가질검총국, 농업부 등 여러 행정부처가 혼재 되어 실시하고 관련 규정도 복잡하여 혼란을 겪어오다가 농산품에 대해서는 농업부 가 전문적으로 관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지면서 농업부가 관련 법률을 제정, 공표 하고 시행에 돌입함.
 - 2007년 12월 중화인민공화국농업법령 제11호 《농산품지리표지관리법》이 국무원의 비준을 얻고 농업부의 상무회의심의를 통과해 발표되었으며 이듬해 2008년 2월 1일 부터 시행함. 이 법에는 농산품의 등록, 표지사용, 관리감독, 상표도안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중국의 지리제표시제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물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음.
- 2008년 《농산품지리표지관리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1년 동안 100개의 농산품 지리표지산품이 등록을 마쳐 공시되었거나 공시될 예정임. 이와 같은 빠른 속도는 향 후 농산품지리표지가 더욱 홍보가 되고 심의평가 및 관리체계가 한층 더 체계화되면 향후 등록 상품 수는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할 전망임.
 - 최근 몇 년간의 중앙1호 문건에도 농산품 지리표지를 적극 추진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2.3. 행정적 실시체계

- 위의 법률적 근거에서 행정부문의 통합이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구체적인 실시체계에서는 아직 완전한 통일체계가 이뤄지고 있지는 않고 있는 듯함.
- 최근 지리표지의 관리에는 두 가지 보호유형이 병행하고 있는 국면임. 첫째, 상표의 증명과 집체상표의 증명은 국가공상총국(國家工商總局) 내 상표국에서 주관하고 있 음. 둘째, 지리표지산품은 국가질검총국(國家質檢總局)에서 주관하고 있음.
- 지리표지와 원산지명칭은 본질상 하나인데 법률과 법규가 여러 개로 교차 중첩되고

입법과 집행관리기관이 여러 군데로 나누어져 있음. 이는 TRIPS 협정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지적받고 있음.

- 한편, 농산물의 지리표시에 대해서는 농업부에서 관리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2008년 2월부터 실시함.
 - 세부행정 담당영역을 보면, 농업부가 농산품지리표지의 등기업무에 책임을 지고 농업부 산하 농산물품질안전중심에서 농산품 지리표지 등록의 심사와 전문가 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또한, 성급 인민정부 농업행정주관부문이 해당 행정구역 내 농산품 지리표지 등록 신청의 접수와 1차 심의 작업을 담당하고 있음. 농업부가 설립한 농산품 지리표지 등록 전문가 평가심의위원회(農產品地理標志登記專家評審委員會)에서 전문가 평가심의를 담당하고 있음.

3. 지리표지 실시 현황

3.1. 품질검정측정 체계

- 이전의 농산품의 지리표지 품질검사인증체계는 농업부와 국가질검총국 등 여러 부서 에서 담당을 하다가 농수축산품에 대해서는 2008년 2월 이후 농업부와 농업부 산하의 농산품품질안전중심에서 전문적으로 담당하기 시작함.
- 세부추진체계를 보면,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 농산품품질안전중심은 농산품 지리표지산품 등록관리사업의 수요에 근거하여 각 유관검측기술기구의 신고 를 기초로, 각 성급 농산품지리표지사업기구의 추천과 농업부 농산품품질안전중심이 규정에 따른 종합심사를 실시함. 그리고 농업부 축산물품질감독검정검측중심(북경) 등 18개 검측기구가 농산품 지리표지산품 품질검정측정기구의 자격조건에 근거해 전국 농산품 지리표지산품 품질검정측정기구의 자격 부여를 결정함.
- 농산품 지리표지 생산품 품질검정검측자격을 획득한 검측기구는 농산품 지리표지등 록 신청인, 등록증서 소유자, 표지사용인과 현급 이상 농산품 지리표지사업기구의 위 탁을 받아 농산품 지리표지 생산품의 품질검정검측업무를 담당할 수 있음.

- 각 농산품 지리표지 생산품 품질검정검측기구는 《농산품 지리표지산품 품질검정검측 기구 관리법(農產品地理標志產品品質鑒定檢測機構管理辦法)》과 《농산품 지리표지산품 품질검정규정(農產品地理標志產品品質鑒定規範)》의 규정을 준수하고 수시로 해당 성급 농산품지리표지사업기구와 연계해 지리표지업무를 추진함.
- 《농산품 지리표지산품 품질검정검측기구 관리법》의 요구에 따라 위탁이 허가된 검측 기구는 반드시 농업부 농산품품질안전중심과 위탁자격협정을 체결한 후 상응한 생산 품 품질검정검측사업을 실시함.
- 검측기구는 대부분이 농업부 산하의 검측기관이며 나머지 몇 곳은 지방정부 산하의 검측기관과 검측전문회사임. 2009년 2월 11일 농업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제3차 지리 표지 품질검측기구의 명단은 〈부록 1〉과 같음.

3.2. 지리표지 실시 현황

○ 중국의 지리표지의 실시 현황은 2008년 이전과 이후로 대별할 수 있음. 그 이유는 2008년 이전에는 국가공상국과 국가품질검사총국의 상표법과 지리표지보호규정에 의한 농산품 지리표지 인증이 있었으나, 그 후 농산물 지리표지에 관해서는 2007년 12월 농업부가 《농산품지리표지관리법》을 공표하고 2008년 2월부터 실행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농산물 지리표지(우리나라의 '농산물 지리적표시제")는 2008년부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임.

가. 2008년 이전의 농산품 지리표지

- 중국의 농산품 지리표지의 발전은 일정한 규모를 갖추었음. 많은 성·시·향·진(省·市·鄉·鎭)이 자신의 우세한 자원에 근거해 해당지역의 농산품에 대한 등록을 진행하고 있음. 또한 표준화관리를 통해 그 품질의 안전을 보장받고 이를 경제발전의 수단으로 적극 도모하고 있음.
- 다음은 지역구조, 생산품구조와 비준시간 등 세 가지 각도에서 중국의 농산품 지리표 지의 현황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임.

중국농업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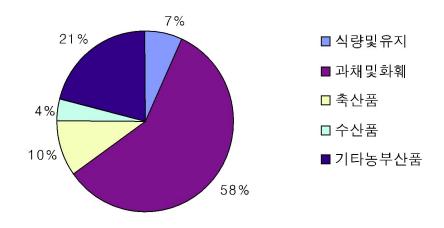
- 아래〈표 1〉를 보면 중국의 농산품 지리표지 실시 지역분포가 광범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러나 발전은 그렇게 고른 편은 아님. 화동(華東)지역이 가장 좋고(전체의 45.4%), 그 다음은 서북, 서남지역이고 동북지역의 발전이 가장 완만함. 이것은 해당지역의 지리조건과 경제발전수준과 상관이 있음.
- 화동지역은 중국에서 경제발전이 가장 빠른 지역이어서 해당지역의 정부 및 인민의 경제관념이 상대적으로 발달해, 국제적인 수준과 궤를 같이함. 또한, 기후조건도 좋음. 서북과 서남지역은 독특한 지리환경과 기후조건으로 물산이 풍부하고 특색있는 농산품이 비교적 많음.
- 생산품 유형별로 보면, 식량과 유지, 과수와 채소, 화훼, 축산품, 수산품, 기타농부 산품으로 구성됨. 그림1과 같이 전체 205개 상품 가운데 과채와 화훼가 대부분을 차지(약 60%)하고 있고, 기타 농부산품의 비중도 적지 않음. 하지만 생산품 간 차이 가 크게 나타남.
- 연도별 등록현황을 보면, 중국 농산품 지리표지의 등록은 1996년부터 시작했으면 1996년에서 1999년이 시작단계이고 이후 2000년부터 2005년이 발전단계임. 2006 년에 이르러 중국의 농산품 지리표지의 심사평가작업이 비교적 안정단계에 들어설 수 있다고 평가됨.
- 〈표 1〉과 〈그림 1〉을 통해 알 수 있듯, 중국의 농산품 지리표지의 초기등록은 매우 느리지만 이후 발전은 비교적 빠르며 심사와 비준수량은 매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비록 다른 다른 국가에 비해 아직 일정한 차이가 있지만 새로운 역량으로써 향후 발전공간은 크며 그 차이도 점점 좁혀질 것으로 평가됨.
- 한편, 중국지리표지(中國地理標志) 연구팀이 실시한 제1차 전국 지리표지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4년 말 현재 중국이 공개적으로 등록 승인한 지리표지는 323개로 나타났음. 그 중 저장(浙江), 허난(河南), 푸젠(福建)성 지역이 각각 42개, 34개, 27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시장판매액은 약 1000억 위안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됨.

표 1. 중국 농산품 지리표지 지역별 현황(2007년 기준)

지역	성시(省市)	수량	총수	지역	성시(省市)	수량	총수	
	북경시(北京)	6			하남성(河南)	9		
	하북성(河北)	5		화중 (華中)	호북성(湖北)	6	17	
화북 (華北)	내몽고(內蒙古)	2	19		호남성(湖南)	2		
(芋オロ)	산서성(山西)	5			광동성(廣東)	5		
	천진시(天津)	1		화남 (華南)	광 서(廣西)	7	15	
 동북	흑룡강성(黑龍江)	2	8		해남성(海南)	3		
(東北)	요녕성(遼寧)	6		6 	귀주성(貴州)	1		
	안휘성(安徽)	6			사천성(四川)	14	24	
	복건성(福建)	25		(西南)	운남성(雲南)	5	24	
	강소성(江蘇)	9			중경시(重慶)	4		
화동 (華東)	강서성(江西)	7	93		감숙성(甘肅)	5		
	산동성(山東)	13		서북	영 하(寧夏)	3	29	
	절강성(浙江)	33		(西北)	섬서성(陝西)	3		
	_	_			신 강(新疆)	18		

자료: 王寒, 陳通(2008)

그림 1. 중국 농산품 지리표지 유형별 등록 현황



○ 이와 같은 수치는 앞의 통계수치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 이는 2008년 이전 실시 한 농산품 지리표지 인증상품의 정확한 통계가 부재함을 보여주는 사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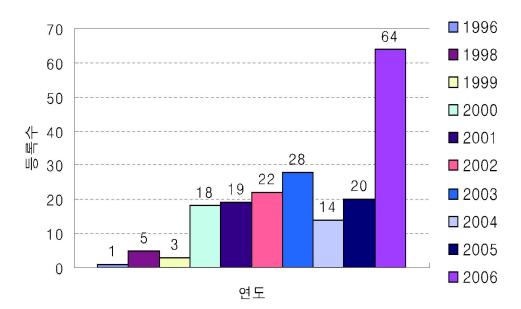


그림 2. 중국 농산품 지리표지 연도별 등록 현황

자료: 王寒, 陳通(2008).

나. 2008년 이후의 농산품 지리표지

- 농업부가 관련 규정과 등록원칙에 따라 각 지역에서 신청한 300여 개 생산품에 대해 엄격한 심사와 선발을 거쳐 2008년 4월 기준 210개 등록 생산품을 접수해 12개 성급 단위에서 125개 생산품이 전문가의 심의평가를 거쳐 등록을 마침. 등록산품 지역보호 면적은 167.5만 km이고 연생산량은 180.4만 톤임.
 - 농업부는 2008년 7월 1일 제1054호 공고를 통해 초기심사, 전문가의 심사평가와 공시를 통해 농산품 지리표지등록조건에 부합한 장치우(章丘)대파 등 28개 농산품에 대한 등록을 비준했으며 중화인민공화국 농산품 지리표지등록증명서를 배포했음을 알림. 이는 농산품 지리표지업무를 농림부에서 관장한 이후 첫 번째 배포한 농산물 지리표지등록증서임(부록 2. 참조).

- 이후 량산저우감자산업협회(涼山州馬鈴薯產業協會) 등의 단위에서 신청한 19개 농산품 지리표지등록보호 신청이 유관기관의 검정을 거치고 정부의 《농산품지리표지관리법》 규정의 등록보호조례에 부합해 농업부가 제2차 농산품 지리표지 생산품의 등록을 인가하고 이를 공시함(부록 3. 참조).
 - 제2차 등록에는 농축산물외에도 싱화민물게(興化大閘蟹) 등 수산물도 포함됨.
- 이후 농업부는 2008년 8월 제4차 등록품목으로 명인복숭아(蒙陰蜜桃) 등 23개 품목에 대해 등록을 공고했음. 여기서 제1차, 제2차 등의 순서는 시기순서가 아닌 심의등록을 위한 분류 목록으로 보임. 따라서 2008년에 신청한 생산품 중 제1차, 제2차, 제4차가 우선 공시되고 3차는 2009년 3월 현재 아직 공시가 되지 않음.

3. 향후 전망

- 그동안 중국은 《농산물품질안전법》에 의한 무공해식품, 녹색식품, 유기식품 등 생산 된 농산물의 품질안전 정책을 줄곧 실시해 왔지만 최근 잇따른 농산물과 식품의 안전 사고가 터지면서 생산단계에서부터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 로 보임.
-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농산물 지리표시(우리나라의 '농산물 지리 적표시제)를 2008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해 적극 추진하고 있음. 농산품 지리표 시는 농업부가 총괄하고 구체적인 검사, 관리, 감독업무는 농업부 산하의 농산품품질 안전중심에서 담당하고 있음.
 - 지리표지는 국가공상국, 국가품질검사총국 등에서도 실시하고 있으나 농산품에 관해서는 농업부가 전문으로 관장해야한다는 여론의 힘에 의해 2007년 말 관련법을 제정 공포하고 2008년 2월부터 적극 시행하고 있음.
- 더욱이 중국은 2007년 단오절, 청명절, 중추절 등 전통명절의 부활과 2009년 프랑스 와의 문화제 논쟁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자신의 전통문화에 대한 강한 자긍심과 부활 을 통해 민족 단결과 통합에 적극 활용하고 있음.

중국농업동향

○ 종합적으로 말하자면, 중국의 농산품 지리표지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은 역사, 인문, 자연환경, 지역의 정체성 등을 내포하고 있는 지역고유의 농산물에 대한 가치의 재평 가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제도를 통해 농민소득의 증대 등 삼농문제의 해결과 국제적 인 표준에 근거한 제도의 실시로 이를 해외수출에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의 반영 이라 할 수 있음.

[참고자료]

王寒·陳通. 2008. "我國農產品地理標志發展現狀分析". 『西安電子科技大學學報』18(4): 101-105. 吳彬, 2008. "中國農產品地理標志保護中存在的問題及原因". 『世界農業』347: 24-26.

楊毅青·鄭龍. 2008. "實施農產品地理標志保護制度發掘我國農產品貿易優勢". 『中國農參通報』4: 317-319.

楊正喜·陳亞平. 2004. "入世與我國農產品地理標志的法律保護". 『廣東青年幹部學院學報』18(58): 51-54.

袁園·盛松華. 2009. "保護農產品地理標志的經濟合理性分析". 『世界農業』358: 64-66. 農業部農產品質量安全網(www.agsc.gov.cn).

부록 1. 제3차 농산품 지리표지산품 품질검정검측기구 명단

번 호	기구 명칭	지역	자격확인증서 번호
1	農業部畜禽產品質量監督檢驗測試中心(北京)	北京市朝陽區	AGI2009-JC-071
2	農業部特種經濟動植物及其產品質量監督檢驗測試中心	吉林市昌邑區	AGI2009-JC-072
3	農業部蠶桑產業產品質量監督檢驗測試中心(鎮江)	江蘇省鎭江市	AGI2009-JC-073
4	江蘇省農產品質量檢驗檢測南通中心	江蘇省南通市	AGI2009-JC-074
5	浙江省農產品質量監督檢驗測試中心	杭州市	AGI2009-JC-075
6	農業部棉花品質監督檢驗測試中心	河南省安陽市	AGI2009-JC-076
7	農業部麻類產品質量監督檢驗測試中心	長沙市	AGI2009-JC-077
8	農業部畜禽產品質量安全監督檢驗測試中心(長沙)	長沙市	AGI2009-JC-078
9	農業部食品質量監督檢驗測試中心(湛江)	廣東省湛江市	AGI2009-JC-079
10	廣州市農業標准與監測中心	廣州市	AGI2009-JC-080
11	江門市農產品質量監督檢驗測試中心	廣東省江門市	AGI2009-JC-081
12	農業部種豬質量監督檢驗測試中心(重慶)	重慶市榮昌市	AGI2009-JC-082
13	農業部農產品質量安全監督檢驗測試中心(銀川)	銀川市	AGI2009-JC-083
14	中國科學院西北高原生物研究所生物化學分析測試部	青海省西寧市	AGI2009-JC-084
15	新疆漁業環境監測及水產品質量檢測中心	新疆鳥魯木齊市	AGI2009-JC-085
16	農業部農產品質量安全監督檢驗測試中心(青島)	青島市城陽區	AGI2009-JC-086
17	農業部煙草產業產品質量監督檢驗測試中心	山東省青島市	AGI2009-JC-087
18	譜尼測試科技(北京)有限公司	北京市海澱區	AGI2009-JC-088

부록 2. 농업부 발표 농산품 지리표지산품 등기공고(제1차) (農業部發布首批農產品地理標志產品登記公告)

○ 2008년 7월1일 농업부는 제1054호 공고를 통해 초기심사, 전문가의 심사평가와 공시를 통해 농산품 지리표지등록조건에 부합한 짱치우(章丘)대파 등 28개 농산품에 대한 등록을 비준했으며 중화인민공화국 농산품지리표지등록증서를 배포했음을 알림. 등록을 비준한 농산품 지리표지의 관련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음.

부표 1. 2008년 제1차 농산품지리표지 등록생산품 공고 내용

번 호	생산품	소재 성시 (省市)	신청인	보호지역 획정범위	품질관리 기술규범 번호
1	리청호두 (黎城核桃)	山田少	黎城縣核桃產業辦公室	山西省 長治市 黎城縣 黎侯 東陽關, 西井, 上遙 등 9개 향진. 동경 113°11′ -113°35′, 북위 36°23′-36°53′.	AGI2008-04 -00001
2		山西省	交城縣農業技術 推廣中心	山西省 交城縣 天寧鎭, 夏家營鎮, 西 營鎮, 洪相鄉, 嶺底鄉, 西社鎮, 동경 111°17'-111°24' 과 북위37°28'-37°54'.	AGI2008-04 -00002
3	우하이포도 (烏海葡萄)	内蒙古 自治區	鳥海市植保植檢站	內蒙古自治區 烏海市 관할 3개 진, 3 개 판사처. 東經106°36′-107°06′, 北緯 39°15′-39°52′.	AGI2008-04 -00003
4	おおり おおり では 黒豆)		彰武縣綠色食品 協會	遼寧省 彰武縣 哈爾套鎮, 滿堂紅鄉, 四堡子鄉, 馮家鎮, 興隆堡鄉, 東六鎮, 大德鄉, 前福興地鄉 등 8개 향진. 동 경 121°53′-122°58′, 북위 42°07′-42°51′.	AGI2008-04 -00004
5	헤이싼진평배 (黑山錦豐梨)	遼寧省	黑山縣農業技術 推廣中心	遼寧省 黑山縣 英城子鄉, 新立屯鎮, 芳山鎮, 八道壕鎮, 太和鎮, 白廠門鎮, 鎮安鄉, 無梁殿鎮, 薛屯鄉, 胡家鎮 등 10개 향진. 동경 121°48′45″-122°37′ 30″, 북위 41°27′30″-42°7′30″.	AGI2008-04 -00005
6	시우이안화쯔 버섯 (岫岩滑子蘑)		岫岩滿族自治縣 蔬菜生產管理局	遼寧省 岫岩縣 지역 내 24개 향진. 동경 122°52′-123°41′, 북위 40°00′-40° 49′.	AGI2008-04 -00006
7	타오난녹두 (洮南綠豆)		洮南市雜糧雜豆 經銷協會	吉林省 洮南市 행정구내 각 향진. 동 경 121°38′20″-123°20′10″, 북위 45°2′ 20″-46°1′20″°	AGI2008-04 -00007
8	신카이허공미 (新開河貢米)	吉林省	集安綠色食品產業協會	吉林省 集安市 지역 내 新開河유역의 財源鎭, 花甸鎭의 水田地. 동경 125° 36'-126°52', 북위 41°16'-41°27'.	AGI2008-04 -00008

9	지안변조삼 (集安邊條參)		集安綠色食品產業協會	吉林省 集安市 지역 내 新開河유역 台上鎭, 花甸鎭, 財源鎭, 淸河鎭, 頭道 鎭의 인삼재배지. 동경 125°36′-126° 09′, 북위 41°07′-41°36′°	
10	빠이안대두 (巴彦大豆)		巴彥縣質量安全協會	黑龍江省 巴彥縣 지역 내 18개 향진. 동경 126°45′53″-127°42′16″, 북위 45° 54′28″-46°40′18″°	
11	쟈인목이버섯 (嘉蔭木耳)	黑龍江省	嘉蔭縣綠色食品協會	照龍江省 伊春市 嘉蔭縣 현 관할 3鎮 6郷: 烏雲鎭, 朝陽鎮, 烏拉嘎鎮, 常勝 郷, 滬嘉鄉,向陽鄉, 紅光鄉, 青山鄉, 保 興郷. 동경 129°09′-130°45′, 북위 49° 25′-48°07′.	AGI2008-04 -00011
12	아청쌀 (阿城大米)		哈爾濱市阿城金 京稻米專業合作 社	照龍江省 哈爾濱市 阿城區 5개 향진 12개 촌: 阿什河城建村, 雙豐鎮東光 村, 雙蘭村, 愛民村, 椴樹村, 料甸滿族 郷紅新村, 聯勝村, 西華村, 新建村, 紅 星郷海東村, 海興村, 亞溝鎮新光村.	
13	짱치우대파 (章丘大蔥)		章丘市大蔥研究所	山東省 章丘市 繡惠, 棗園, 龍山, 寧 家埠, 刁鎮, 明水 등 5개 향진(街道辦 事處), 총 264개 행정촌. 동경 117°10′ -117°35′, 북위 36°25′-37°09′.	
14	웨이하이야생 자삼 (威海野生刺參)	山東省	威海市農業環境 保護站	山東省 威海市 지역 내 연해의 基岩 岬灣,沙壩-瀉湖,海島와 海礁 15미터 이내의 야생자삼자연생장해구(海區). 북쪽 雙島灣에서, 동쪽 成山頭까지 남 쪽 蘇山島에서 서쪽 乳山口까지. 동경 121°11′-122°42′, 북위 36°41′-37°35′.	
15	팡시엔표고버섯 (房縣香菇)		房縣經濟作物技術推廣站	湖北省 房縣 城關鎮, 青峰鎮, 大木鎮, 門古鎮, 軍店鎮, 化龍鎮, 土城鎮, 紅塔 鄉, 榔口鄉, 沙河鄉, 萬峪河鄉, 橋上 鄉, 窯准鄉, 上龕鄉, 九道鄉, 中壩鄉, 白鶴鄉, 五台山林業總場, 姚坪鄉 등 19 개 향진. 동경 110°02′-111°15′, 북위 31°34′-32°31′.	
16	쯔구이도엽귤 (秭歸桃葉橙)	湖北省	秭歸縣柑桔協會	湖北省 秭歸縣 茅坪鎮, 歸州鎮, 屈原鎮, 水田壩, 泄灘鄉, 沙鎮溪鎮, 兩河口鎮, 梅家河鄉, 郭家壩鎮, 周坪鄉, 楊林橋鎮 등 11개 향진. 동경 110°18′-111°00′, 북위 30°38′-31°11′.	AGI2008-04 -00016
17	마청푸바이국화 (麻城福白菊)		麻城市福白菊產 業協會	湖北省 麻城市 北部山區, 그중 福田 河鎮이 주산지이고 黃土崗鎮, 乘馬崗 鎮, 三河口鎮, 順河集鎮이 부산지임. 모두 5개 향진. 동경 114°45′-115°20′, 북위 31°20′-31°40′.	

18	쟝용유자 (江永香柚)	湖南省	江永縣桃川洞名 特優新產品開發 區管理委員會	湖南省 江永縣 粗石江鎮, 桃川鎮, 源 口瑤族鄉, 夏層鋪鎮, 允山鎮과 瀟浦鎮 등 6개 향진. 동경 110°57′20″-111°41′ 15″, 북위 24°55′35″-25°29′40″.	AGI2008-04 -00018
19	우롱고산고추 (武隆高山辣椒)		武隆縣蔬菜產業 發展辦公室	重慶市 武隆縣°동경 107°13′-108°05′, 북위 29°02′-29°40′.	AGI2008-04 -00019
20	량핑유자 (梁平柚)	重慶市	梁平縣經濟作物站	重慶市 梁平縣 관할 33개 진향, 315 개 촌. 동경 107°24'-108°05', 북위 30° 25'-30°53'.	AGI2008-04 -00020
21	ロ <u></u> 四		米脂縣金顆粒小 米專業合作社	陝西省 榆林市 米脂縣. 동경 109°49'- 110°29', 북위 37°39'-38°5'.	AGI2008-04 -00021
22	안량대추 (閻良相棗)		西安市閻良區林 業科技中心	陝西省 閻良區 關山鎮 東丁村,北馮村,康村 등: 武屯鎮 任張村,溝王村,炮張村 등:振興街辦 紅荆村,坡底村 등 촌. 동경 109°08′54″-109°25′37″, 북위 34°35′00″-34°44′37″.	AGI2008-04 -00022
23	빈저우배 (彬州梨)	陝西省	彬縣園藝工作站	陝西省 鹹陽市 彬縣 涇河川道 및 각 지류 수계연안. 그 분포구역은 城關, 新堡子, 太峪, 義門, 新民, 炭店, 小章, 香廟, 龍高, 永樂, 西坡, 北極, 底店, 車家莊, 水口 등 15개 향진. 동경 107° 49'-108°49', 북위 34°51'-35°17'°	AGI2008-04 -00023
24	싱핑완중흑돼지 (興平關中黑豬)		興平市畜牧獸醫站	陝西省 興平市 행정구역 내 14개 향 진(판사처). 동경 108°17′49″-108°37′ 7″, 북위 34°12′50″-34°26′53″.	AGI2008-04 -00024
25	중닝셀레늄오이 (中寧硒砂瓜)		硒砂瓜生產營銷 協會	寧夏 中寧縣 白馬鄉,鳴沙鎭,恩和鎭, 舟塔鄉,喊叫水鄉 등. 동경 105°26′-106° 07′, 북위 37°9′-73°50′, 해발 1184미터.	AGI2008-04 -00025
26	평양고추 (彭陽辣椒)	· 寧夏回 族自治區	彭陽縣紅河辣椒 專業合作社	寧夏 彭陽縣 紅河鄉, 城陽鄉, 白陽鎮, 古城鎮, 新集鄉, 草廟鄉, 孟原鄉, 王窪 鎮, 小岔鄉, 羅窪鄉, 馮莊鄉, 交岔鄉 등 12개 향진. 동경 106°32′-106°58′, 북위 35°41′-36°17′.	AGI2008-04 -00026
27	시지감자 (西吉馬鈴薯)		西吉縣馬鈴薯產 業服務中心	寧夏 西吉縣 吉強鎮, 火石寨鄉, 新營鄉, 蘇堡鄉, 偏城鄉 등 5개 향진의 96개 행정촌. 동경 105°20′-06°04′, 북위 35°35′-36°14′°	AGI2008-04 -00027
28	허란나사채 (賀蘭螺絲菜)		賀蘭縣農牧局鄉 鎮企業培訓服務 中心	寧夏 賀蘭縣 金貴鎮 銀河村,保南村,金貴村,銀光村,漢佐村,聯星村,潘昶村,雄英村,潘西村,紅星村,習崗鎮의紅旗村과 黎民村,洪廣鎮의 高融과金沙村. 동경 105°53′-106°36′, 북위 38°26′-38°48′.	AGI2008-04 -00028

注:質量控制技術規範文本見農產品質量安全網(www.aqsc.gov.cn)

부록 3. 농업부 발표 농산품 지리표지산품 등기공고(제2차)

○ 량싼저우감자산업협회(涼山州馬鈴薯產業協會) 등의 단위에서 신청한 19개 농산품지리 표지등록보호 신청이 유관기관의 검정을 거치고 정부의 《농산품 지리표지 관리법(農產 品地理標志管理辦法)》 규정의 등록보호조례에 부합해 농업부가 등록을 인가하고 이를 공시함. 유관 단위와 개인이 공시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시일로부터 10일이내 농업부 농산품품질안전중심에 서면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과 이유를 제출할 수 있음.

부표 2. 2009년 제2차 농산품 지리표지 등록생산품 공고 내용

번 호	생산품	소재 성시 (省市)	신청인	지역보호 획정범위	품질관리기술 규범번호
1	량산감자 (涼山馬鈴薯)		涼山州馬鈴薯 產業協會	四川省 涼山州 지역 내의 昭覺縣, 布拖縣 등 17개 縣市 610개 향진, 3 752개 촌. 동경 100°15′-103°52′, 북 위 26°03′-29°18′.	
2	난부감미유 자(南部脆香 甜柚)	四川省	南部縣果樹技術推廣站	四川省 南部縣 南隆鎮, 金星鄉, 棗兒鄉, 老鴉鎮 盤龍鎮, 群龍鄉, 平橋鄉, 東壩鎮, 馬王鄉, 梅家鄉, 鐵佛塘鎮, 大富鄉, 石河鎮, 河東鎮, 永定鎮 등 33개 향진. 동경 105°27′-106°24′, 북위 31°04′-31°40′.	AGI2009-02 -00136
3	총칭비파차 (崇慶枇杷茶)		崇州市崇慶枇 杷茶專業合作 社		AGI2009-02 -00137
4	완위안감자 (萬源馬鈴薯)		萬源市農業技 術推廣站	四川省 萬源市 지역 내, 전 시 52개 향진 371개 촌. 동경 107°29'-108°31', 북위 31°39'-32°20'.	AGI2009-02 -00138
5	빠이치안강 낭콩 (拜泉芸豆)	黑龍江省	拜泉縣興國鄉 芸豆協會	黑龍江省 拜泉縣 지역 내의 拜泉鎮, 豊產鄉,長春鎮,大眾鄉,興農鎮,興 華鄉,上升鄉,國富鎮,新生鄉,三道 鎮,興國鄉,愛農鄉,富強鎮,龍泉鎮, 永勤鄉,時中鄉 동경 125°30′-126°33′, 북위 47°17′-47°52′.	AGI2009-02 -00139

6	푸진대두 (富錦大豆)	黑龍江省	富錦市綠色食品協會	黑龍江省 富錦市 지역 내 大榆樹鎮, 向陽川鎮, 二龍山鎮, 硯山鎮, 頭林鎮, 興隆鎮, 宏勝鎮, 長安鎮, 上街基鎮, 錦山鎮斗 城關社區. 동경 131°49′48″ -133°09′40″, 북위 46°42′40″-47°13′40″.	AGI2009-02 -00140			
7	란깡수박 (蘭崗西瓜)					寧安市蘭崗鎮 西瓜協會	黑龍江省 寧安市 蘭崗鎮 지역 내의 蘭崗村,軍馬場,牡丹村,民和村,永 政村,新中村,依蘭村,自興村,文化 村,東升村,新農村,河南村. 동경 128° 08′54″-130°00′44″, 북위 43°31′24″-44° 27′46″.	
8	이춘목이버섯 (伊春黑木耳)		伊春市綠色食品協會	黑龍江省 伊春市 지역 내의 鐵力市, 嘉蔭縣,伊春區,友好區,上甘嶺區, 五營區,紅星區,新青區,湯旺河區, 烏伊嶺區,烏馬河區,翠巒區,帶嶺區, 南岔區,美溪區,西林區,金山屯區, 鐵力局,雙豊局,桃山局,朗鄉局 등 21개 현(시),구,국. 동경 127°42′-130° 14′,북위 46°28′-49°21′.				
9	이춘개암버 섯(伊春榛蘑)		伊春市綠色食品協會	黑龍江 省伊春市 지역 내의 鐵力市, 嘉蔭縣,伊春區,友好區,上甘嶺區, 五營區,紅星區,新青區,湯旺河區, 烏伊嶺區,烏馬河區,翠巒區,帶嶺區, 南岔區,美溪區,西林區,金山屯區, 鐵力局,雙豊局,桃山局,朗鄉局 등 21개 현(시),구,국. 동경 127°42′-130° 14′,북위 46°28′-49°21′.				
10	짜오위안쌀 (肇源大米)		肇源縣富農水 稻標准化生產 專業合作社	照龍江省 肇源縣 지역 내의 古龍鎮, 新站鎮, 民意鄉, 茂興鎮, 古恰鄉, 肇 源鎮, 二站鎮, 三站鎮, 和平鄉, 超等 郷, 薄荷台郷 등 11개 향진. 동경 123° 57′-125°45′, 북위 45°23′-45°59′.	AGI2009-02 -00144			
11	엔서우쌀 (延壽大米)	黑龍江神	延壽縣亮珠稻 米生產專業合 作社	黑龍江省 延壽縣 지역 내의 延壽鎮(일부분), 六團鎮(일부분), 中和鎮, 加信鎮, 安山鎮, 壽山鄉, 玉河郷, 延河鎮 등 8개 향진. 동경 127°54′20″-129°04′30″, 북위 45°10′10″-45°45′25″.	AGI2009-02 -00145			
12	싱화민물게 (興化大閘蟹)	江蘇省	興化市大閘蟹 行業協會	江蘇省 興化市 지역 내 35개 향진으로 沙溝鎮 周奮鄉, 紅顧鄉, 李中鎮, 西郊鎮, 昭陽鎮, 開發區, 陳堡鎮, 周莊鎮, 茅山鎮, 戴南鎮, 張郭鎭, 陶莊鎮, 荻垛鎮, 昌榮鎮 등이 포함됨. 동경 119°43′-120°16′, 북위 32°40′-33°13′.	AGI2009-02 -00146			

13		福建省	漳平市茶葉協 會	福建省 漳平市 南洋郷, 雙洋鎮, 赤水鎮, 新橋鎮, 吾祠郷, 靈地郷, 溪南鎮, 象湖鎮, 永福鎮 등 9개 향진. 동경117°10′-117°45′, 북위 24°54′-25°47′.	AGI2009-02 -00147
14	이위안사과 (沂源蘋果)	, l, t	沂源縣生態農 業與農產品質 量管理辦公室	山東省 沂源縣 지역 내의 南麻鎮, 土門鎮, 魯村鎮, 徐家莊鄉, 大張莊鎮, 燕崖鄉, 中莊鎮, 西裏鎮, 東裏鎮, 張 家坡鎮, 石橋鄉, 悅莊鎮과 三岔鄉 등 13개 향진. 동경 117°54′-118°31′, 북 위 35°55′-36°23′.	AGI2009-02 -00148
15	이위안전갈 (沂源全蠍)	山東省	沂源縣畜牧獸 醫協會	山東省 沂源縣 지역 내의 南麻鎮, 土門鎮, 魯村鎮, 徐家莊鄉, 大張莊鎮, 燕崖鄉, 中莊鎮, 西裏鎮, 東裏鎮, 張 家坡鎮, 石橋鄉, 悅莊鎭과 三岔鄉 등 13개 향진. 동경 117°54′-118°31′, 북 위 35°55′-36°23′.	AGI2009-02 -00149
16	・	河南省	延津縣貢參果 蔬專業合作社	河南省 延津縣 지역 내. 동경 113°57′ -114°46′, 북위 35°07′-35°29′.	AGI2009-02 -00150
17	스린단감 (石林甜柿)	雲南省	石林彝族自治 縣農牧局茶桑 果站	雲南省 石林彝族自治縣 지역 내의 鹿阜鎮, 石林鎮, 路美邑鎮, 板橋鎮, 圭山鎮, 西街口鎮, 長湖鎮和大可鄉, 地理坐標爲東經103°10′-103°41′, 北緯 24°30′-25°03′°	AGI2009-02 -00151
18	칭양사과 (慶陽蘋果)		慶陽市經濟林 木工作管理站	甘肅省 慶陽市 西峰區,慶城縣,合水縣,正寧縣,寧縣,鎮原縣,環縣과 華池. 동경 106°21′16″-108°42′48″,북위 35°14′18″-36°35′12″.	AGI2009-02 -00152
19	칭양원추리 (慶陽黃花菜)	甘肅省	慶城縣農業技 術推廣中心	甘肅省 慶陽市 慶城縣의 15개 향진 122개 촌, 西峰區의 7개 향진 94개 촌村, 鎮原縣의 19개 향진 227개 촌, 寧縣의 18개 향진 64개 촌, 合水縣의 12개 향진 79개 촌. 동경 106°24′-108°42′, 북위 35°14′28″-37°09′13″.	AGI2009-02 -00153

注:質量控制技術規範文本見農產品質量安全網(www.aqsc.gov.cn)

Ⅱ. 농업·농촌경제동향

- ■가격 동향
- ■무역 동향
- ■소득 동향
- 고추·마늘시장 동향
- ■축산물 수급 현황과 전망

가격 동향

1. 식량작물

□ 벼(稻穀)

- 2009년 1월 만생종 인디카 벼와 자포니카 벼 가격은 다소 하락했으며, 조생종 인디카 벼 가격은 소폭 상승했음.
- 2009년 2월 조생종 인디카 벼 수매가는 톤당 1,819위안으로 전월 대비 0.5% 하락했으나 전년 동기 대비 7.7% 상승했음. 만생종 인디카 벼 가격은 톤당 1,861위안으로 전월 대비 0.2% 하락했으나 전년 동기 대비 7.8% 상승했음. 자포니카 벼 가격은 톤당 1,780위안으로 전월 대비 1.5%, 전년 동기 대비 9.2% 상승했음.
 - 중국 정부는 1월 24일 조생종 인디카 벼, 중장립종 인디카 벼, 자포니카 벼의 최저수 매 가격을 1근당 0.9위안, 0.92위안, 0.95위안 올리는 정책을 실시함. 이로 인해 2009년 2월 벼 가격이 소폭 상승했음.
- 2009년 3월 조생종 인디카 벼 수매가격은 톤당 1,866위안으로 전월 대비 2.5%, 전년 동기 대비 9.4% 상승했음. 만생종 인디카 벼 수매가격은 톤당 1,923위안으로 전월 대비 2.7%, 전년 동기 대비 10.4% 상승함. 자포니카 벼 수매가격은 톤당 1,985위안으로 전월 대비 9.9%, 전년 동기 대비 19.8% 상승했음.

ㅁ 쌀(大米)

○ 2009년 1월에는 춘절의 영향으로 쌀 수요가 급증하여 조생종 인디카 쌀, 만생종 인디

^{* 2009}년도 1/4분기 주요 농산물 도매시장 가격 동향

중국농업동향

카 쌀. 자포니카 쌀 가격이 0.2~1.0% 상승했음.

○ 2009년 2월에는 학교 개학, 농민공 귀성 등의 영향으로 소비지의 쌀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했음. 조생종 인디카 쌀 도매가격은 톤당 2,731위안으로 전월 대비 0.7%, 전년 동기 대비 7.4% 상승했음. 만생종 인디카 쌀 가격은 톤당 2,861위안으로 전월 대비 0.7%, 전년 동기 대비 6.3% 상승했음. 자포니카 쌀 가격은 톤당 3,070위안으로 전월 대비 3.1%, 전년 동기 대비 10.1% 상승했음.

□ 밀(小麥)

- 2009년 1월에는 설과 정부의 밀 가격 상승정책 영향으로 국내 밀 가격이 약 1% 상승 하였음.
- 2009년 2월에도 밀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정주식량도매시장의 톤당 보통 밀 가격은 1,825위안으로 전월 대비 2.5%, 전년 동기 대비 16.9% 상승했음. 우량 밀 가격은 1,980위안으로 전월 대비 1.0%, 전년 동기 대비 19.3% 상승했음.
- 2009년 3월 국내 밀 가격은 소폭 상승하는 추세를 보임. 정주식량도매시장의 톤당 보통 밀 가격은 1,870위안으로 전월 대비 2.9%, 전년 동기 대비 18.8% 상승했음. 우 량 밀 가격은 2,000위안으로 전월 대비 1.0%, 전년 동기 대비 21.6% 상승했음.

口 옥수수(玉米)

- 2009년 1월 옥수수 도매가격은 전체적인 등락 속에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09년 2월 옥수수 주산지의 톤당 도매시장 가격은 1,386위안으로 전월 대비 0.3%, 전년 동기 대비 11.8% 하락했음. 한편 주소비지의 톤당 도매시장 가격은 1,634위안으로 전월 대비 0.2% 상승했고, 전년 동기 대비 16.1% 하락했음.
- 2009년 3월 옥수수 주산지의 톤당 도매시장 가격은 1,455위안으로 전월 대비 3.3% 상승했으나 전년 동기 대비 7.1% 하락했음.

- 동북지역의 옥수수 톤당 가격은 1,415위안으로 전월 대비 5.3%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 2.8% 하락했음.
- 화북 황회해(黃淮海)지역의 옥수수 톤당 가격은 1,473위안으로 전월 대비 3.3% 증가했으나. 전년 동기 대비 11.6% 하락했음.
- 주소비지의 옥수수 톤당 도매시장 가격은 1,691위안으로 전월 대비 3% 상승했고, 전년 동기 대비 10.7% 하락했음.

口 대두(大豆)

- 2009년 1월에는 정부의 지속적인 수매비축계획의 영향으로 국산 대두가격이 소폭 상 승하였음.
 - 동북지역의 착유용 대두의 수매가격은 톤당 3,421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4% 하락했음.
 - 수입 대두 가격의 하락으로 국내 대두유와 대두박 가격이 비교적 크게 하락함.
- 국산 대두가격이 소폭 상승한 1월과 달리 2월에는 대두가격이 안정세를 보임.
 - 산동지역 4급 대두유 공장도가격은 톤당 6,756위안으로 전월 대비 5.3%, 전년 동기 대비 44.9% 하락했음.
 - 산동지역 중등품 대두박의 공장도가격은 톤당 2,930위안으로 전월 대비 5.1%, 전년 동기 대비 10.0% 하락했음.
- 2009년 3월 대두, 대두유, 대두박의 가격이 모두 하락하여 지난해 3월 가격보다 낮게 형성되었음.
- 흑룡강성의 착유용 대두의 수매가격은 톤당 3,350위안으로 전월 대비 2.3%, 전년 동기 대비 32.7% 하락했음.
- 산동성의 국산 대두 공장도가격은 톤당 3,505위안으로 전월 대비 2.6%, 전년 동기 대비 32.8% 하락했음.
- 산동성의 4등급 대두유의 공장도가격은 톤당 6,410위안으로 전월 대비 3.9%, 전년

중국농업동향

동기 대비 51.8% 하락했음.

- 산동성 중등품 대두박의 공장도가격은 톤당 2,980위안으로 전월 대비 4.8%, 전년 동기 대비 22.1% 하락함.

2. 축산물

□ 돼지고기

- 2009년 1월 설 영향으로 돼지고기의 소비수요가 확대되어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했음. 1월 돼지고기 도매시장 가격은 kg당 18.7위안으로 전월 대비 2.6% 상승했고, 전년 동기 대비 17.4% 하락했음.
 - 복건성 돼지고기 가격은 kg당 23위안으로, 전월 대비 4.38% 상승하여 가장 높은 가격을 유지하였음.
 - 두 번째로 돼지고기 가격이 높은 곳은 호북성으로 kg당 21.67위안임. 이는 전월 대비 3.37% 하락한 것임.
 - 2009년 1월 호북성, 하남성, 청해성, 산서성에서는 돼지고기 가격이 하락했으나, 기타지역에서는 3~8% 상승했음.
 - 돼지고기 가격이 최저인 지역은 강서성과 감숙성 지역으로 각각 kg당 15.83위안, 14.5위안임.
- 2009년 2월 돼지고기 도매시장 평균 가격은 kg당 17,91위안으로 전월 대비 4.2% 하락했고, 전년 동기 대비 23.4% 하락했음.
- 2009년 1월 이후 돼지고기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3월에는 역대 최저 가격을 기록했음. 3월 돼지고기 도매시장 kg당 가격은 16.28위안으로 전월 대비 9.1%, 전년 동기 대비 27.9% 하락했음.
 - 복건성 돼지고기 가격은 kg당 23.1위안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음.
 - 돼지고기 가격이 두 번째로 높은 지역은 운남성으로 kg당 21위안이며 이는 전월과

비슷한 수준임.

- 3월에는 하남성 지역에서만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하였고, 기타지역에서는 모두 가격이 하락했음. 하락폭이 가장 큰 지역은 14.9% 하락했음.
- 돼지고기 가격이 제일 낮은 두 지역은 북경시와 천진시로 kg당 각각 14.14위안, 13.89위안임.

□ 쇠고기

- 2009년 1월 쇠고기 가격은 소폭 상승했음. 월 평균가격은 kg당 28.75위안으로 전월 대비 0.98%, 전년 동기 대비 7.75% 상승했음.
 - 4고기 가격은 광서장족자치구 지역이 kg당 36.27위안으로 가장 높음. 이는 전월
 대비 1.02% 하락한 것임.
 - 호남성, 운남성, 청해성, 호북성, 안휘성 등 지역의 쇠고기 가격은 kg당 평균 30위안 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며, 신강위그루족자치구, 하북성, 상해시 등지의 쇠고기 가격은 소폭 하락했음.
 - 쇠고기 가격이 제일 낮은 곳은 천진시로 평균 가격이 kg당 21.1위안임. 이는 전월 대비 5.3% 상승한 것임.
- 2009년 2월 쇠고기 도매시장 가격은 kg당 29.1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0.1% 상승했음.
- 2009년 3월 쇠고기 가격은 소폭 하락하여 월 평균 가격이 kg당 28.7위안을 기록했음. 이는 전월 대비 1.66% 하락했고, 전년 동기 대비 2.07% 상승한 것임. 3월 기온 상승의 영향으로 채소 소비가 많아짐에 따라 쇠고기 수요량이 감소했으며 이에 따라가격 또한 하락했음.
 - 쇠고기 가격이 제일 높은 지역은 운남성으로 kg당 38위안이며 이는 전월과 비슷한 수준임.
 - 2009년 3월에는 약 90% 지역에서 쇠고기 가격이 하락했음. 복건성이 1~5% 하락했으나 강소성, 사천성, 상해시 세 개 지역의 경우는 쇠고기 가격이 상승했음. 북경시, 하북성, 내몽고자치구 등은 평균 가격이 kg당 26위안 이하로 비교적 낮은 편임.

ㅁ 계란

- 2008년 9월 계란가격이 최고치에 달한 후 4개월 연속 하락하여 2009년 1월 평균 계란 가격은 kg당 6.2위안을 기록했음. 이는 전월 대비 1.17%, 전년 동기 대비 1.95% 하락한 것임.
 - 광서장족자치구와 복건성의 계란 가격은 각각 kg당 8.3위안, 7.8위안으로 비교적 높은 편임.
 - 광서장족자치구, 내몽고자치구, 신강위그루족자치구, 천진시 지역의 계란가격은 전월 대비 평균 2% 이상 하락했음.
 - 산서성, 하북성, 영하회족자치구, 신강위그루족자치구, 청해성, 북경시, 천진시 지역의 평균 계란 가격은 kg당 6위안 이하임.

표 1. 주요 축산물의 주간 도매시장가격 동향, 2009.1~3월

단위: 위안/kg, %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계란	
	가격	증감률	가격	증감률	가격	증감률	가격	증감률	가격	증감률
2009년 1주	11.6	0.5	28.5	-0.8	18.7	0.4	29.3	-1.0	6.3	0.8
2009년 2주	11.8	1.4	28.3	-0.7	18.6	0.1	28.7	0.3	6.2	1.0
2009년 3주	11.8	0.6	29.0	2.4	18.6	0.5	29.0	3.3	6.3	2.4
2009년 4주	11.5	-2.8	29.5	1.9	19.1	2.2	29.7	2.2	6.1	-3.9
2009년 5주	11.2	-2.6	29.6	0.1	19.2	0.6	29.9	0.7	6.4	5.2
2009년 6주	11.3	1.0	29.3	-0.7	18.8	-2.2	29.8	-0.3	6.2	-3.9
2009년 7주	11.2	-0.7	29.2	-0.5	18.0	-2.3	29.9	0.1	6.1	-0.5
2009년 8주	11.2	-0.1	29.1	-0.4	17.7	-1.8	29.6	-0.9	6.1	-1.3
2009년 9주	11.4	2.7	28.8	-1.2	17.3	-2.2	29.3	-0.8	6.0	-1.6
2009년 10주	11.4	-0.1	28.7	-0.1	16.9	-2.2	29.3	_	6.0	0.7
2009년 11주	11.5	1.4	28.5	-0.6	16.4	-3.2	29.5	0.3	-	_
2009년 12주	11.7	1.4	28.3	-0.7	16.0	-2.2	29.0	-1.5	6.2	1.7
2009년 13주	11.6	-0.1	28.9	2.0	15.9	-1.1	29.4	1.4	6.3	2.2

자료: 農業部. 2009.1-3. "2009年第1周~13周鮮活農産品國內價格周報"

- 2009년 3월 계란가격은 소폭 상승 했음. 3월 계란 평균 가격은 kg당 6.13위안으로 전월 대비 0.9% 상승했고, 전년 동기 대비 0.1% 하락했음.
 - 상해시와 호남성 지역의 계란 가격은 각각 kg당 7.3위안, 7.2위안으로 가격이 비교적 높은 편임.
 - 70% 지역에서 계란 가격이 소폭 상승했으나, 하락추세를 보이는 지역도 몇 군데 있음. 특히 복건성의 경우 하락폭이 가장 커 10.9%에 이름.
 - 영하회족자치구, 섬서성, 하북성, 산서성, 천진시, 북경시, 신강위그루족자치구 지역은 계란 평균 가격이 kg당 6위안 이하임. 그 중 신강의 계란 가격은 kg당 5.63위 안으로 가장 낮음.

표 2. 채람자 농산물의 월간 도매시장 가격, 2009.1~3월

구분	도마	시장 가격(위인	<u>ł</u> /kg)	3월 가격 증감율(%)					
一七	2009.1	2009.2	2009.3	전월 대비	전년 대비				
돼지고기	18.7	17.9	16.3	-9.1	-27.9				
소고기	28.8	29.1	28.7	-1.7	2.1				
양고기	29.1	29.7	29.3	-1.3	1.1				
계란	6.3	6.2	6.1	0.9	-0.2				
해수어	19.0	19.2	18.7	-2.6	21.0				
담수어	9.3	9.5	9.7	2.5	1.9				
과채류	4.5	4.3	4.2	-1.7	-7.8				
엽채류	1.8	1.9	2.0	5.9	30.3				
과일	4.1	3.9	3.7	-4.9	-8.9				

자료: 農業部. 2009.3.4. "2009年1月份"菜籃子"產品批發市場價格動態分析",農業部. 2009.4.22. "2009年3月份"菜籃子"產品批發市場價格動態分析"

3. 채소류

□ 엽채류

○ 2009년 1월 설 영향으로 엽채류 가격이 대폭 상승했음. kg당 평균 가격은 1.82위안으

중국농업동향

- 로 전월 대비 38.3%, 전년 동기 대비 25.5% 상승했음.
- 배추, 셀러리, 시금치, 청경채 가격은 각각 0.61위안, 2.10위안, 2.64위안, 2.29위 안으로, 전월 대비 24%, 35.8%, 42.1%, 51.7% 상승했음.
- 배추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13.7% 하락한 것을 제외하고 셀러리, 시금치, 청경채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50.4%, 22.9%, 20.8% 상승했음,
- 상해시의 엽채류 평균 가격이 kg당 3.36위안으로 가장 높음.
- 광서장족자치구, 운남성, 귀주성 세 개 지역을 제외하고 기타 지역 엽채류 가격은 대폭 상승하여 평균적으로 약 50% 이상 상승했음.
- 하북성, 하남성 두 지역의 엽채류 가격은 kg당 평균 1.50위안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2009년 3월 엽채류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평균 가격이 kg당 2.02위안임. 이 는 전월 대비 5.8%, 전년 동기 대비 30.2% 상승한 것임.
 - 배추, 셀러리, 시금치, 청경채 가격은 각각 0.92위안, 2.62위안, 2.23위안, 2.62위안으로, 시금치 가격이 전월 대비 13.7% 하락한 것을 제외하고 배추, 셀러리, 청경 채는 각각 51.7%, 15.8%, 1.1% 상승했음.
 - 양배추, 셀러리, 시금치, 청경채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21.1%, 42.4%, 16.5%, 36.9% 상승했음.
 - 상해시의 엽채류 평균 가격은 kg당 3.48위안으로 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높으며 이는 전월 대비 18.2% 상승한 것임.
- 요녕성, 천진시, 북경시, 섬서성, 하북성 지역의 엽채류 가격은 하락했으나, 기타지역은 모두 상승했으며 상승폭은 최대 1.1배임.
- 운남성과 하남성의 엽채류 가격은 kg당 각각 1.60위안, 1.54위안으로 비교적 낮은 편임.

□ 과채류

○ 2009년 1월 과채류 평균 가격은 kg당 4.54위안으로 전월 대비 49.3%. 전년 동기

74 • 2009 봄호

대비 27.1% 상승했음.

- 토마토, 콩꼬투리, 오이, 가지, 청고추 가격은 kg당 각각 3.07위안, 6.42위안, 3.73 위안, 3.40위안, 6.61위안으로, 전월 대비 44.0%, 35.5%, 33.1%, 35.7%, 95.1% 상승했음.
- 신강위그르족자치구와 흑룡강성의 과채류 가격은 각각 kg당 6.09위안, 5.93위안으로 가격이 비교적 높은 편임.
- 광서장족자치구의 과채류 가격이 kg당 2.91위안으로 전국 최저임. 이는 전월 대비 24.9% 상승한 것임.

표 3. 주요 과채류의 주간 도매시장가격 동향, 2009.1~3월

단위: 위안/kg, %

	청그	고추	토마토		오이		감자		배추	
	가격	증감률	가격	증감률	가격	증감률	가격	증감률	가격	증감률
2009년 1주	4.7	22.2	2.4	5.3	2.9	-5.2	1.2	-2.0	0.5	_
2009년 2주	5.6	12.5	2.7	12.9	3.1	10.7	1.3	4.7	0.5	9.2
2009년 3주	6.7	20.9	3.2	15.9	3.8	22.8	1.3	3.1	0.6	7.5
2009년 4주	7.5	12.0	3.5	10.8	4.4	16.2	1.3	0.7	0.7	14.0
2009년 5주	7.6	1.1	3.4	-2.5	4.2	-4.9	1.3	-1.1	0.8	18.6
2009년 6주	6.7	-10.2	3.1	-7.1	3.7	-9.7	1.4	3.0	0.6	-16.8
2009년 7주	5.7	-15.6	2.9	-4.9	4.0	8.4	1.4	2.4	0.6	-6.2
2009년 8주	5.1	-10.4	2.9	-1.0	4.2	5.0	1.4	-2.2	0.6	-3.3
2009년 9주	4.6	-10.1	3.0	1.4	3.9	-8.5	1.4	1.4	0.6	3.0

자료: 農業部. 2009.1-3. "2009年第1周~13周鮮活農産品國內價格周報"

- 2009년 3월 과채류 평균 가격은 kg당 4.24위안으로 전월 대비 1.7%, 전년 동기 대비 7.8% 하락했음.
 - 토마토, 콩꼬투리, 가지 가격은 각각 전월 대비 3.0%, 1.1%, 16.9% 상승했으며, 오이, 청고추 가격은 각각 8.9%, 12.4% 하락했음.
 - 토마토, 콩꼬투리, 가지, 청고추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0%, 19.7%, 10.1%,

- 14.0% 하락했으며, 오이는 전년 동기 대비 5.7% 상승했음.
- 과채류 평균 가격이 가장 높은 지역은 신강위그르족자치구로 kg당 6.15위안임. 동시에 가격이 비교적 높은 지역은 흑룡강성과 상해시로 평균 가격이 kg당 각각 5.0위안 이상임.
- 과채류 가격이 비교적 낮은 지역은 호남성, 광동성, 광서장족자치구 지역으로 평균 가격이 kg당 3위안 이하임.

 구분	도매	시장 가격(위인	3월 가격 증감율(%)		
一	2009.1	2009.2	2009.3	전월 대비	전년 대비
콩꼬투리(豆角)	6.4	6.0	6.1	1.1	-19.7
오이(黃瓜)	3.7	3.9	3.6	-8.9	5.7
가지(茄子)	3.4	3.5	4.1	16.9	-10.2
피망(青椒)	6.6	5.5	5.5	-12.4	-14.0
시금치(菠菜)	2.6	2.6	2.6	-13.7	16.6
셀러리(芹菜)	2.1	2.3	2.4	15.8	42.4
청경채(油菜)	2.3	2.6	2.6	1.2	36.9
토마토(西紅柿)	3.2	3.0	3.0	2.9	-3.9
<u> </u>	0.6	0.6	0.6	51.7	21.1

표 4. 주요 과채류의 월간 도매시장가격, 2009.1~3월

자료: 農業部. 2009.3.4. "2009年1月份"菜籃子"產品批發市場價格動態分析", 農業部. 2009.4.22. "2009年3月份"菜籃子"產品批發市場價格動態分析"

4. 과일류

- 2009년 1월 과일 평균 가격은 kg당 4.13위안으로 전월 대비 2.6%, 전년 동기 대비 6.7% 하락했음.
 - 수박, 배(鴨梨), 부사,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의 kg당 평균 가격은 각각 3.63위안, 2.03위안, 3.81위안, 3.51위안, 20.41위안, 2.44위안으로 수박, 배(鴨梨), 부사, 바나나와 방고 가격은 전월 대비 6.9%, 0.05%, 4.1%, 2.4%, 42.7% 상승했음. 파인애플은 전월 대비 8.7% 하락했음.

- 망고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6.1% 상승한 것을 제외하고, 수박, 배(鴨梨), 부사, 바나나, 파인애플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3%, 6.4%, 13.9%, 1.5%, 42.9% 하락했음.
- 과일 평균 가격이 제일 높은 지역은 흑룡강성으로 kg당 6.88위안을 기록했음. 이는 전월 대비 46.5% 상승한 것임.
- 광동성, 감숙성, 산동성, 안휘성, 강소성은 과일 가격이 평균 20% 이상 상승함.
- 영하회족자치구, 운남성, 하북성, 하남성 지역은 과일 평균 가격이 kg당 3위안 이하로 가격이 비교적 낮은 편임.
- 2009년 3월 과일 평균 가격은 kg당 3.72위안으로 전월 대비 4.9%, 전년 동기 대비 9.0% 하락했음.
- 수박, 배(鴨梨), 부사, 바난, 망고, 파인애플 가격은 kg당 평균 4.23위안, 2.23위안, 3.89위안, 10.51위안, 2.27위안임.
- 수박, 망고, 파인애플 가격은 전월 대비 0.3%, 31.9%, 4.2% 하락했으며 배(鴨梨),부사. 바나나 가격은 전월 대비 3.8%, 1.3%, 0.5% 상승했음.

표 5. 주요 과일의 주간 도매시장가격 동향, 2009.1~3월

단위: 위안/kg, %

	귤(활	귤(蜜桔)		사	배(鴨梨)		
	가격	증감률	가격	증감률	가격	증감률	
2009년 1주	1.7	-3.7	3.6	-2.4	1.9	-4.5	
2009년 2주	1.9	9.1	3.7	2.8	1.9	-1.0	
2009년 3주	1.9	-0.1	3.8	1.9	2.2	5.1	
2009년 4주	2.2	16.8	3.8	0.8	2.2	7.7	
2009년 5주	1.8	-17.2	3.8	0.5	2.0	-10.5	
2009년 6주	2.3	23.6	3.9	1.1	2.3	6.3	
2009년 7주	2.3	-2.8	3.8	-2.6	2.3	-1.5	
2009년 8주	2.2	-1.8	3.8	-0.5	2.1	-1.9	
2009년 9주	2.5	13.0	3.8	-0.4	2.3	3.0	

자료: 農業部. 2009.1-3. "2009年第1周~13周鮮活農産品國內價格周報"

중국농업동향

- 배(鴨梨), 부사, 바나나, 파인애플 가격은 전년 동기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인 반면 수박, 망고 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높음.
- 과일 평균가격이 제일 높은 지역은 신강위그르족자치구로 kg당 5.77위안임. 이는 전월 대비 20.39% 하락한 것임.
- 과일 평균 가격이 3.0위안 이하인 지역은 하북성, 강서성, 운남성, 광서장족자치구, 하남성 4개 지역으로 이 중 하남성 과일 가격이 kg당 2.02위안으로 가장 낮음.

표 6. 주요 과일의 월간 도매시장가격 동향, 2009.1~3월

구분	도매	시장 가격(위인	3월 가격 증감율(%)					
一	2009.1	2009.2	2009.3	전월 대비	전년 대비			
수박(西瓜)	3.6	4.2	4.2	-0.3	5.7			
배(鴨梨)	2.0	2.2	2.3	3.8	-5.7			
부사(富士蘋果)	3.8	3.8	3.8	1.3	-13.9			
바나나(香蕉)	3.5	3.4	3.4	0.5	-5.8			
파인애플(菠蘿)	2.4	2.4	2.4	-4.2	-31.8			
여지(荔枝)	25.2	18.0	18.0	0.0	33.7			
망고(芒果)	20.4	15.4	15.4	-31.9	7.8			

자료: 農業部. 2009.3.4. "2009年1月份"菜籃子"產品批發市場價格動態分析",農業部. 2009.4.22. "2009年3月份"菜籃子"產品批發市場價格動態分析"

[참고자료]

國家統計局農村司. 2008.11.23. "前三季農產品生產價格同比上漲19.1%"

農業部. 2009.3.4. "2009年2月份"菜籃子"產品批發市場價格動態分析"

農業部. 2009.4.22. "2009年3月份"菜籃子"產品批發市場價格動態分析"

農業部. 1~3월 "稻米市場監測信息"

農業部. 1~3월"小麥市場監測信息"

農業部. 1~3월"玉米市場監測信息"

農業部. 1~3월"大豆市場監測信息"

무역 동향

□ 개요

- 2008년도 중국의 농산물 수출입 총액은 991.6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7% 증가
- 수출액은 405.0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7.9% 증가했고, 수입액도 586.6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42.8% 증가했음.
- 수입 증가폭이 수출 증가폭보다 커 무역적자가 확대되었으며 적자액은 전년의 40.8 억 달러에서 181.6억 달러로 3.4배나 증가했음.
- 2008년 중국 농산물의 주요 수출시장은 일본, 유럽, 미국,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중국 홍콩특별행정구, 한국 순임. 수출액은 각각 76.9억 달러, 62.7억 달러, 51.3억 달러, 45.8억 달러, 36.3억 달러, 29.1억 달러 임.
- 일본과 한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8.1%, 12.1% 감소했음. 중국농산물 수출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9.0%, 7.8%로 전년 동기 대비 3.6%, 2.0% 감소한 것임.
- 유럽, 미국,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0%, 16.1%, 16.0% 증가 했음. 중국농산물 수출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5.5%, 12.7%, 11.3%로 전년 동기 대비 0.9%, 0.7%, 0.6% 증가했음.
- 2008년 중국 농산물의 주요 수입시장은 미국, 동남아시아국가연합, 브라질, 아르헨 티나, 유럽임. 수입액은 각각 144,2억 달러, 92.4억 달러, 82.2억 달러, 84.1억 달러, 37.2억 달러 임.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7.9%, 30.2%, 89.8%, 62.2%, 32.5% 증가한 것임.

^{* 2008}년도 중국의 농산물 수출입 실적임.

□ 곡물

- 2008년 곡물 수출은 186.1만 톤으로 전년 대비 81.2% 감소하였고, 수입은 154.0만 톤으로 1.1% 감소하여 전년 대비 96.2% 감소한 32.1만 톤의 순 수출을 기록했음.
- 쌀(大米) 수출은 94.7만 톤으로 전년 대비 27.4% 감소하고, 수입은 28.9만 톤으로 38.0% 감소하여 전년 대비21.5% 감소한 65.7만 톤을 순 수출했음.
- 옥수수 수출은 25.2만 톤으로 전년 대비 94.9% 감소한 반면 수입은 4.9만 톤으로 전년 대비 95.8% 감소한 20.3만 톤을 순 수출했음.
- 밀 수출은 12.6만 톤으로 전년 대비 94.6% 감소하고, 수입은 3.2만 톤으로 전년 대비 61.8% 감소하여 전년 대비 95.8% 감소하 9.4만 톤을 순 수출했음.

□ 축산물

○ 2008년 축산물 수출액은 43.9억 달러로 전년 대비 8.5% 증가했으며, 수입액도 77.3 억 달러로 19.4% 증가하여 33.3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37.6% 증가한 것임.

□ 채소류

○ 2008년 채소 수출은 819.5만 톤으로 전년 대비 0.3% 감소하고, 수입은 10.4만 톤으로 전년 대비 5.1% 증가하여 전년 대비 0.2% 증가한 809.1만 톤을 순 수출했음.

□ 과일류

○ 2008년 과일 수출은 484.1만 톤으로 전년 대비 1.4% 증가했고, 수입은 169.2만 톤으로 전년 대비 25.6% 증가하여 저년 대비 8.1% 하락한 314.9만 톤을 순 수출했음.

□ 기타

- 2008년 중국의 식용 유지종자(oilseed)의 수출은 118.8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7.4% 감소했으며, 수입도 3,900.5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22.2% 증가했음.
 - 이 중 대두 수출은 48.4만 톤으로 전년대비 2.1% 증가했고, 수입도 3,743.6만 톤으로 21.5% 증가했음.
- 2008년 중국의 식용 식물유 수출은 24.9만 톤으로 전년대비 48.7% 증가했으나 수입 은 817.1만 톤으로 전년대비 2.7% 감소했음.
 - 콩기름(豆油) 수입은 258.6만 톤으로 전년 대비 8.4% 감소했음.
 - 종려기름(棕櫚油)의 수입은 528.2만 톤으로 전년대비 3.7% 증가했음.
- 2008년 중국의 면화 수출은 2.1만 톤으로 전년대비 10.2% 감소했고, 수입도 218.9 만 톤으로 전년대비 16.3% 감소했음. 식용당(食糖) 수출은 6.2만 톤으로 전년대비 43.5% 감소한 반면, 수입은 78.0만 톤으로 전년대비 34.6% 감소했음.
- 2008년 중국의 수산물 수출액은 106.1억 달러로 전년 대비 8.9% 증가했으며, 수입액도 54.0억 달러로 14.4% 증가하여 52.1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3.8% 증가한 것임.

[참고자료]

農業部. 2009.3.4. "2008年我國農產品進出口情况"

소득 동향

- 전국 31개 성·자치구·시의 6.8만 호의 농촌가구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9년 1~3월 농촌주민 1인당 평균 현금소득은 1,622위안으로 실질 소득은 전년 동기대비 8.6% 증가했음.
- 동 기간 농촌주민 1인당 평균 현금소득 중 임금소득은 655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7.7% 증가했음.
 - 그 중 노무수입이 383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8.2% 증가했고, 현지 노무수입은 135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9.7% 증가했고, 외지 노무수입은 248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7.2% 증가했음.
- 동 기간 농촌주민 1인당 평균 현금소득 중 농산물 판매소득은 592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했음.
 - 그 중 경종작물의 판매소득은 333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7.5%, 수산물은 25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4% 증가했음. 임산물은 11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4.0%, 축산물은 223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5.6% 하락했음.
- 동 기간 농촌주민 1인당 평균 현금소득 중 겸업소득은 190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4.2% 증가했음.
 - 겸업소득의 구성을 보면 공업부문에서 얻은 소득이 34위안으로 9.2% 감소했고, 건축업은 29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9.2% 감소했으며, 제3차 산업은 127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4.8% 증가했음.
- 동 기간 농촌주민 1인당 평균 현금소득 중 자산소득은 51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9.8% 증가했고, 이전소득은 121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36.9% 증가했음.

^{* 2009}년도 1/4분기 농촌주민 소득 동향임.

	丑 1	. 중국의	긔 도시와	농촌	주민	1인당	소득 달	및 격차,	1978~2009.3
--	-----	-------	-------	----	----	-----	------	-------	-------------

 연 도	1인당 주민 4	노득(경상가격)	소득격차		
선 포	농촌(A)	도시(B)	절대(B-A)	상대(B/A)	
1978	133.6	343.4	209.8	2.57	
1980	191.3	477.6	286.3	2.50	
1985	397.6	739.1	341.5	1.86	
1990	686.3	1,510.2	823.9	2.20	
1995	1,577.7	4,283.0	2,705.3	2.71	
2000	2,253.4	6,280.0	4,026.6	2.79	
2001	2,366.4	6,859.6	4,493.2	2.90	
2002	2,475.6	7,702.8	5,227.2	3.11	
2003	2,622.2	8,472.2	5,850.0	3.23	
2004	2,936.4	9,421.6	6,485.2	3.21	
2005	3,254.9	10,493.0	7,238.1	3.22	
2006	3,587.0	11,759.5	8,172.5	3.28	
2007	4,140.0	13,786.0	9,646.0	3.33	
2008	4,761.0	15,781.0	11,020.0	3.31	
2009.1~3	1,622.0	4,834.0	3,212.0	2.98	

주: 농촌주민 소득은 순소득, 도시주민 소득은 가처분소득을 나타냄.

不豆: 國家統計局國民經濟綜合統計司編. 2005.『新中國五十五年統計資料彙編』. 中國統計出版社;國家統計局編. 2007.『2007中國統計年鑒』. 中國統計出版社;國家統計局綜合司. 2008.『2008中國統計年鑒』. 中國統計出版社;國家統計局綜合司.2009.4.27."一季度我國農民人均現金收入實際增長8.6%";國家統計局綜合司. 2009.4.27."一季度全國城鎮居民人均可支配收入實際增長11.2%".

[참고자료]

國家統計局綜合司. 2009.4.27. "一季度我國農民人均現金收入實際增長11.2%" 國家統計局綜合司. 2009.4.27. "一季度全國城鎮居民人均可支配收入實際增長11.2%"

고추 · 마늘시장 동향

1. 고추시장 동향

가 사지동향

- 금년 중국 고추 재배 면적은 2008년산보다 2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이는 2년에 걸친 가격 약세로 고추 재배를 기피하려는 농가들이 많기 때문임. 품목별로는 익도산 재배 면적이 18%, 금탑 재배 면적이 10% 감소할 것으로 조사됨.
- 산동성 지역에서 생산되는 창산 고추는 금년에 두번째로 농산물지리표시 인증을 획득 하였음. 비준된 등기제품 명칭은 "창산고추"이고, 등록 신청기관은 창산현평양(平陽) 채소 생산판매 전업합작사이며, 등록번호는 AGI00104임.
- 운남성은 쌀 농사 후작으로 고추를 재배함. 고추 수확은 10~11월에 시작되며 익년 4월까지도 수확할 수 있음. 10a당 고추 생산량은 약 3~4톤이고 재배 노하우가 있는 농가는 8~10톤까지도 생산함. 운남성 고추는 대부분 사천 지역으로 출하됨.
- 최근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 침체로 신강생산건설병단(新疆生産建設兵團)의 고추판 매가 매우 저조한 상황임. 따라서 당위원회에서는 판매난을 해결하기 위해 "1보조 2 장악(1補2抓)" 정책을 실행하여 판로를 개척하도록 하였음.
 - 여기서 "1보조"란 고추품종에 따라 종자 구입비에 대한 차등 보조를 실시하는 것인 데 품종에 따라 kg당 0.3-0.8위안을 보조함.
 - "2장악"이란 첫째. 신강생산건설병단 고추 수매. 저장. 장기 선물시장 판매를 총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정보센터 채소관측팀(신용광, 박영구, 윤종렬)이 해외모니터 조사를 토대로 작성한 자료임.

- 하여 내수 시장을 장악하는 것이고 둘째, 각종 우대 정책을 시행하여 상인들로 하여 금 이 지역의 고추 수매를 유도하여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는 것임.
- "1보조 2장악(1補2抓)" 시행이후 30여개의 고추 판매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500 여톤을 판매하였는데 이는 신강 생산건설병단에서 수매하는 고추의 60%를 차지함.
- 중국은 신농촌건설 정책을 추진하여 "1촌 1품목" 즉, 1개 농촌 지역에서 1개의 특산품 재배를 장려하고 있음.
- 일례로, 복건성 녕화(寧化)현 쌍석(雙石)촌의 경우 "왕중왕(王中王) 고추"를 지역 특산품으로 생산함. 재배 면적은 164ha이고, 10a당 건고추 360kg를 가공하여 kg 당 12위안에 판매하고 있음.
- 금년에는 녕화현을 포함한 11개 행정촌에서 "왕중왕(王中王) 고추"를 지역 특산품으로 지정하여 육성시킬 계획에 있음. "왕중왕(王中王) 고추"는 시장에서 호응이 높아현재 사천, 무한 지역의 상인들과 20톤을 수매 계약하였으며 계약 단가는 kg당 40위안임.
- 한편, 광서장족자치구 흠주(欽州)시 농업부 농업기술보급소은 최근 연구개발한 "삼피 (三避)"고추품종을 지역 농가와 협력하여 재배 보급하였음. 이 품종의 재배면적은 약 4,900ha이고 연간 생산량은 약 11만 톤임.

나. 가격동향

- 해남성 해구(海□)시 고추 수매가격은 수확 초기 kg당 8.0위안에서 2월말 현재 kg당 1.6위안으로 작년보다 10% 하락한 수준임.
 - 이는 연초보다 작황이 호전되면서 생산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금년에는 생육초기 작황 부진으로 수확 시기가 작년보다 한 달 이상 늦춰져 2월에 본격적인 수확이 시작되었음. 고추 농가의 10a당 조수입은 5,000위안, 순소득은 3,000위안임.
- 운남성의 1/4분기 건고추 산지 수매가격은 수확 초기에 kg당 7.2위안이었지만, 설이후 가격이 하락하여 2월에는 kg당 2.2~2.4위안으로 하락하였음. 10a 당 농가 순소득은 1만 위안으로 타 지역보다 높은 편임.

- 1/4분기 건고추 kg당 도매가격은 작년보다 18~50% 하락한 수준임. 이는 2008년 산 고추 재배면적이 증가한데다 기상여건 호조로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임.
 - 베이징 시장의 1/4분기 홍고추 kg당 도매가격은 10.3위안으로 작년보다 18% 낮고, 산동 시장의 홍고추 kg당 도매가격도 작년보다 50% 낮은 4.9위안임.

표 1. 1/4분기 고추 도매가격

단위: 위안/kg

	북경시(新發地시장)	산동성(壽光시장)
2009년	10.3	4.9
2008년	12.5	9.7
증감률(%)	-17.6	-49.5

주: 가격은 홍고추 상품 기준임.

다. 국내 도입가격

- 1/4분기 중국 건고추(양건) 산지 거래가격은 6,250위안으로 작년보다 22% 낮은 수준임. 이는 2008년산 중국 고추 재배면적이 증가한데다 작황도 좋아 생산량이 2007년 산보다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임.
- 1/4분기 중국산 건고추 국내 도입가격은 600g당 5,000원, 도매가격은 5,500원으로 작년보다 각각 7% 높은 수준임. 이는 국내 건고추 가격이 강세임에도 불구하고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수입 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임.
 - 하지만 최근 환율이 1,300원대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2/4분기 건고추 수입량은 1/4분기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1/4분기 냉동고추 민간 수입 가능가격은 600g당 490원, 가공 후 국내 판매 원가(국내 도입가격)는 3,600원으로 작년보다 각각 15%, 11% 높은 수준임.
- 1/4분기에 고환율로 주춤했던 냉동고추 수입은 환율이 점차 안정화되면서 크게 증가하고 있음. 더욱이 중국 냉동고추 수매가격이 약세인데다 재고량도 많아 향후 수출증가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됨.

2. 마늘시장 동향

가. 산지동향

- 최근 국제경제위기의 영향으로 중국도 큰 영향을 받고 있음. 이에 정부는 마늘산업에 대한 발전계획을 발표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전담팀을 구성하여 각 지역의 마늘동향을 조사
 - 둘째, 각 지역의 부현장은 전담팀과 협조하여 발전계획을 실행
 - 셋째, 국가와 지방은 각각 자금을 책정하여 마늘산업 농가에 대한 직접보조를 진행
 - 넷째, 마늘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처벌
 - 다섯째, 마늘 전자상거래시장의 규범화
- 하남성은 산동성 다음으로 마늘재배 주산지이며, 하남성의 중머우(中牟)지역은 10여년의 역사를 지닌 주산지임. 금년 하남성의 마늘 재배면적은 4.7~5,4만 ha(중머우지역 1,340ha)이며, 생산량은 100만 톤내외임.
- 4월은 마늘종 출하기이지만 2007년까지 마늘종에 대한 시장 수익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 산지구입가격은 kg당 2.0위안이며 판매가격은 1.7위안으로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추세임.
- 따라서 약 2년간 큰 손실을 보게 된 산지 수집상들이 2008년에 수집을 포기함에 따라 최근에는 가격이 다시 상승하는 추세에 있음. 마늘종 산지 구입가격은 kg당 1.0~1.2위안, 판매가격은 kg당 1.6~1.8위안에 거래되고 있음.
- 마늘종 가격 상승으로 금년 신선마늘 수확기 가격도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됨. 특히 2009년 하반기부터 국제 금융위기 해소 전망에 따라 마늘 가격 회복 속도가 빠를 것으로 시장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음.
- 따라서 마늘업계에서는 금년도 중국의 마늘 재배면적이 30% 감소하고 경기회복으로 7월과 8월에 마늘의 국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물량확보에 노력하고 있음. 또한 수출량이 증가하면서 중국내 가격도 동반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나. 가격 동향

- 현재 마늘가격은 큰 변화가 없이 안정화되면서 수출량이 증가하고 있음. 수출 가능한 마늘 재고량은 28만 톤 정도로 추산되며 이는 햇마늘 수확기 가격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음.
- 구체적인 금년산 마늘 재배 감소면적은 21만 4,400ha가 될 전망이며 이에 따라 마늘 생산량도 320만 톤 정도 감소할 전망임.
- 시장관계자에 따르면 7월 마늘출하 성수기 가격은 kg당 1.2~1.6위안으로 전망하고 있음.

표 2. 주요도시 농산물도매시장 마늘가격

단위: 위안/kg

- 지 역		마늘		마늘종		
∕1 ∃	2009년	2008년	2007년	2009년	2007년	
#경시(新發地시장)	0.52	0.50	2.70	4.20	3.0	
산동성(壽光 시장)	0.56	0.44	2.80	4.02	3.6	

축산물 수급 현황과 전망

1. 쇠고기

- 지난 9년 동안 세계 쇠고기 생산량은 브라질, 중국, 인도 등의 사육두수 증가로 매년 1%의 성장세를 거듭해왔음.
- 2009년 세계 쇠고기 생산량은 2008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브라질, EU-27, 중국, 아르헨티나 등 주요국의 생산량 감소로 당초 전망치(2009년 5,925 만 톤, 2008년 10월 전망치)보다 2.2% 감소한 5,896만 톤으로 전망됨. 이는 2008년 생산량 5,854만 톤보다 1.5% 감소한 것임.
- 2008년 중국의 쇠고기 생산량은 610만 톤이며, 소비량은 606만 톤으로 추정됨. 경제 성장으로 중국 소비자의 육류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2007년 1인당 쇠고기 소비량은 전년대비 0.3kg 증가한 4.6kg를 기록하였음.

표 1. 중국의 쇠고기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 천 톤

	2005	2006	2007	2008(p)	2009(f ₁)	2009(f ₂)
 공급	5,681	5,767	6,134	6,100	6,360	6,000
생 산	5,681	5,767	6,134	6,100	6,360	6,000
수 입	_	-	_	_	-	_
수 요	5,681	5,767	6,134	6,100	6,360	6,000
소 비	5,614	5,692	6,065	6,062	6,324	5,968
수 출	67	75	69	38	36	32
1인당 소비량(kg)	4.3	4.3	4.6	4.6	4.7	4.5

주: 2008년은 추정치이며, 2009년 f₁은 2008년 10월 전망치이며 f₂는 2009년 4월 전망치임. 자료: 미농무부(USDA).

^{*} USDA, 2009. Livestock and Poultry: World Markets and Trade(http://www.fas.usda.gov)을 토대로 한 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정보센터 축산관측팀 이형우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중국농업동향

- 2009년 중국의 쇠고기 생산량 또한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2008년 10월 전망), 투입비용(사료비, 연료비, 용수, 전기, 노동력 등)의 상승으로 당초 전망치(2009년 636만 톤)보다 5.6% 감소한 600만 톤으로 전망됨. 이는 2008년(610만 톤)보다 1.6% 감소한 것임.
 - 2009년 중국의 쇠고기 1인당 소비량 또한 2008년(4.6kg)보다 0.1kg 감소한 4.5kg 으로 전망됨.
- 인도, 브라질에 이어 세계 3위인 중국의 2009년 소 사육두수는 세계 사육두수(9억 8천만 두)의 10.8%를 차지한 1억 6백만 두(연초 사육두수 기준)로 전망되며, 이는 당초 전망치보다 약 1백만 두가 감소한 수치임.
 - 2009년 송아지 생산두수는 2008년보다 1.3% 감소한 4천 4백만 두로 전망됨.

표 2. 소 사육두수와 생축 수출입

단위 : 천 두

	2005	2006	2007	2008(p)	2009(f ₁)	2009(f ₂)
연초 사육두수	112,354	109,908	104,651	105,948	107,095	106,123
송아지 생산두수	39,441	39,827	45,353	45,000	48,500	44,400
 수 입	50	15	15	15	8	16
수 출	54	54	51	33	30	30

자료: 미농무부(USDA).

2. 돼지고기

- 세계 돼지고기 생산량의 50%를 차지하는 중국의 사육두수 증가로 지난 1998년 이후 돼지고기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 2009년 세계 돼지고기 생산량은 2008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중국의 돼지고기 생산량 증가로 당초 전망치보다 2.5% 증가한 1억 톤으로 전망됨. 이는 2008년(9,844만 톤)보다 1.9% 증가한 것임.

표 3. 돼지고기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 첫 톤

	2005	2006	2007	2008(p)	2009(f ₁)	2009(f ₂)
공 급	45,641	46,595	43,076	46,580	46,360	49,000
생 산	45,553	46,505	42,878	46,150	46,000	48,700
수 입	88	90	198	430	360	300
수 요	45,641	46,595	43,076	46,580	46,360	49,000
소 비	45,139	46,051	42,726	46,357	46,190	48,790
수 출	502	544	350	223	170	210
1인당 소비량(kg)	34.6	35.0	32.3	33.7	34.5	36.3

자료: 미농무부(USDA).

- 경제 성장과 더불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던 중국의 돼지고기 생산량은 2007년에는 PRRS(돼지 생식호흡기증후군) 일명 청이병(靑耳病)이라는 질병의 발생으로 양돈 농가의 생산성이 크게 악화되면서 일시적으로 크게 감소하였음.
- 2008년 돼지고기 생산량은 2007년보다 7.6% 증가한 4,615만 톤으로 추정됨. 2008년 돼지고기 1인당 소비량 또한 2007년보다 1.4kg 증가한 33.7kg를 기록하였음.
- 당초 2009년 중국의 돼지고기 생산량은 2008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음 (2008년 10월 전망). 그러나 중국 정부의 양돈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보조정책, 질병 (청이병)으로부터 회복, 중국내 돼지고기 수요 증가 등으로 2009년 돼지고기 생산량은 2008년보다 5.5% 증가한 4,870만 톤으로 전망됨.
-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중국내 돼지고기에 대한 수요 증가는 여전하여 2009년 중국의 돼지고기 1인당 소비량은 2008년(33.7kg)보다 2.6kg 증가한 36.3kg으로 전망됨. 중국은 돼지고기 수요 증대로 2008년부터 돼지고기 순수입국으로 전환됨.
- 세계 최대의 돼지고기 생산국인 중국의 2009년 돼지 사육두수는 세계 사육두수(7억 8천만 두)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4억 6천만 두(2009년 초 기준)로 전망되며, 이는 당초 전망치보다 약 1천 2백만 두가 증가한 수치임. 2009년 돼지 도축두수는 2008년 보다 5.0% 증가한 6억 7천만 두로 전망됨.

표 4. 돼지 사육두수와 생돈 수출입

단위 : 첫 두

					L 1	
	2005	2006	2007	2008(p)	2009(f ₁)	2009(f ₂)
연초 사육두수	421,234	433,191	418,504	439,895	446,662	462,640
돼지 도축두수	618,587	605,823	592,080	635,978	615,000	667,769
 수 입	3	2	3	12	7	9
수 출	1,769	1,723	1,609	1,645	1,400	1,700

자료: 미농무부(USDA).

3. 닭고기

- 지난 3년간 세계 닭고기 생산량은 미국, 브라질, 중국의 주도하에 비약적인 성장세를 보였음(13% 증가).
 - 이러한 닭고기 생산량 증가세는 2009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세계 경제 침체에 따른 공급 과잉, 가격 하락, 수입 감소 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2009년 닭고기 생산량은 당초 전망치(2009년 7,424만 톤, 2008년 10월 전망치)보다 3.9% 감소한 7,135만 톤으로 전망됨. 이는 2008년과 비슷한 수치임.
- 2008년 중국의 닭고기 생산량은 세계 총생산량(7천 1백만 톤) 중 17.6%(1천 2백만 톤)를 차지하였음.
 - 2009년에는 중국의 닭고기 생산량은 2008년보다 8.0% 증가한 1천 4백만 톤으로 전망됨(2008년 10월 전망치).
 - 그러나 중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 도계장 폐업 등으로 2009년 중국의 닭고기 생산량은 2008년 수준과 비슷한 1천 2백만 톤으로 예상됨. 2009년 중국의 닭고기 수출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경제 성장과 함께 중국의 육류 소비량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음. 중국의 1인당 닭고 기 소비량은 최근 3년 사이에 크게 증가하여 2008년에는 9.6kg까지 증가하였음.

- 중국의 경우 국민들이 돼지고기를 닭고기나 쇠고기보다 선호한다는 점, 높은 실업률로 인한 소득 감소 등으로 2009년 닭고기 1인당 소비량은 당초 예상치(10.4kg)보다 크게 적은 9.6kg로 전망됨.

표 5. 닭고기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 천 톤__

	2005	2006	2007	2008 (p)	2009 (f ₁)	2009 (f ₂)
공급	10,419	10,693	11,773	12,294	14,150	12,558
생 산	10,200	10,350	11,291	11,895	13,700	12,133
수 입	219	343	482	399	450	425
수 요	10,419	10,693	11,773	12,294	14,150	12,558
소 비	10,088	10,371	11,415	12,009	13,867	12,343
수 출	331	322	358	285	283	215
1인당 소비량(kg)	7.7	7.9	8.7	9.6	10.4	9.6

자료: 미농무부(USDA).

Ⅲ. 농정연구 이슈

■ 중국 농촌의 집단토지소유권제도 운영 실태 분석

중국 농촌의 집단토지소유권제도 운영 실태 분석

1. 현지조사 개요

- 집단토지소유권제도의 실제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농촌토지문제 입법연구"라 는 연구 주제로 2007년 5월 초부터 8월 초까지 3개월 동안 현지조사를 진행하였음.
- 조사지역은 전국을 동부, 남부, 중부, 서부, 북부지역으로 구분하여 강소성(江蘇省), 산동성(山東省), 광동성(廣東省), 호북성(湖北省), 호남성(湖南省), 하남성(河南省), 산서성(山西省), 사천성(四川省), 귀주성(貴州省), 흑룡강성(黑龍江省) 등 10개 성 을 선정하였음.
 - 10개 성 별로 각각 3개 현, 각 현 별로 3개의 향·진, 각 향·진 별로 2개의 촌, 각 촌 별로 무작위로 약 10호의 농가를 선정하였음.
- 현지조사는 10분 정도의 설문 응답과 1분 정도의 인터뷰를 기본으로 하였음. 인터뷰 대상은 촌 간부와 보통 농민이었으며, 인터뷰 시 조사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먼저 인 터뷰 요강을 제공하였음. 이 밖에, 조사팀은 토지관련 분쟁 및 해결 구조 등의 관련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각 현 지방법원에 협조를 요청하였음.
- 이번 조사에서는 10개 성에 1,8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총 1,799부의 유효 응답지가 회수되어 〈표 1〉과 같은 표본을 얻었음.
 - 또한 200여 분의 녹취 기록과 수십 건의 토지분쟁 판결문 및 중재문을 수집할 수 있었음.
- 본문에 사용된 분석 자료는 모두 현지조사에서 얻은 성과를 토대로 한 것임.

^{*} 高飛 2008. "集體土地所有權主體制度運行狀況的實證分析一基於全國10省30縣的調查." 『中國農村觀察』 2008年第6期(總第84期): 33-43을 번역 정리하였음.

표 1. 유효 설문지 회수 현황

단위: 부

	산동성 (山東省)	강소성 (江蘇省)	광동성 (廣東省)	귀주성 (貴州省)	사천성 (四川省)	산서성 (山西省)	흑룡강성 (黑龍江省)	하남성 (河南省)	호북성 (湖北省)	호남성 (湖南省)	합계
수량	178	180	181	181	176	180	181	178	181	183	1,799

2. 도급토지의 도급수여자에 대한 농민들의 인식

- 중국의 현행 법률규정에 의하면 법적으로 국가소유의 토지 외에 농촌과 도시 교외의 토지는 전부 농민집단(農民集體) 소유임.
 - 농민집단의 표현 형식은 ①촌 농민집단, ②촌민소조 농민집단 ③ 향·진 농민집단 등 세 가지임.
- 농촌토지소유권의 귀속 현황은 법률상 매우 명확하지만 집단토지소유권의 실제 권리를 확립하는 과정 중에 촌 농민집단, 촌민소조 농민집단과 향·진 농민집단 사이에서 권리 귀속에 대한 쟁의가 종종 발생하기도 함.
- 집단토지소유권 주체는 반드시 법률이 규정한 경영 및 관리 주체에 근거하여 확정 되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두 가지의 기준이 있음.
 - 첫째는 토지도급경영의 토지도급 수여자를 소유권 주체로 하는 것이며.
- 둘째는 토지집단생산·경영의 실제 생산·경영단위를 소유권 주체로 하는 것임.
- 1995년 국가토지관리국이 발표한《확정토지소유권과 사용권의 규정(確定土地所有權 和使用權的若干意見)》에 의하면 향·진 농민집단 소유의 토지에 주로 포함되는 것은 일부 지역 기업, 사업체가 사용하는 농민집단토지로서 법의 비준을 받은 지역에 공동 설비나 공익사업으로 사용하는 농민집단토지 등임.
- 즉, 향·진 농민집단 소유의 토지는 전부 비농업용 토지로, 농업용지와 농민 주택용 지는 원칙상 촌 농민집단 혹은 촌민소조 농민집단 소유여야 함.
- 《농촌토지도급법(農村土地承包法)》 제12조 규정에 의하면 농민집단 소유의 토지가

촌 농민집단의 소유인 경우 촌 집단경제조직 또는 촌민위원회에서 도급을 맡김. 농민 집단에서 사용하는 국가의 모든 농촌 토지는 해당 토지를 사용하는 농촌집단경제조직, 촌민위원회 또는 촌민소조에서 도급을 맡김.

- 이것은 국가가 농촌 토지에 대한 도급수여자가 아니며, 향·진 농민집단 역시 국가 소유의 토지에 대한 도급수여 권리를 가질 수 없음을 뜻함.
- 그러나 촌 농민집단과 촌민소조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농촌 토지를 도급 줄 권리가 있으며, 또한 국가 소유의 농촌 토지도 도급 줄 수 있음.
- 이를 통해 국가 소유의 토지를 제외한 농촌 토지의 도급수여자는 바로 해당 토지의 소유권자임을 알 수 있으며, 만약 어떤 농촌 토지가 비(非)국가 소유로 확인된다면 해당 토지의 소유권자도 바로 명확하게 알 수 있음.

표 2. 도급토지의 도급수여자 조사 결과

단위: %

구 분	산동성 (山東省)	강소성 (江蘇省)	광동성 (廣東省)	귀주성 (貴州省)	사천성 (四川省)	산서성 (山西省)	亭룡강성 (黑龍江省)	하남성 (河南省)	호북성 (湖北省	호남성 (湖南省)	합계
국가	3.4	0.0	1.1	10.5	3.4	5.6	2.2	12.4	2.2	6.0	4.7
향(진) 집단	7.3	0.0	1.1	12.7	11.4	5.0	3.9	11.2	3.3	7.1	6.3
촌집단	78.7	44.4	92.3	38.1	27.8	83.9	83.4	44.4	73.5	18.0	58.5
촌소조	6.2	55.6	4.9	4.9	25.0	3.3	2.2	25.4	14.9	34.4	17.7
개인	1.1	0.0	0.6	2.8	1.7	1.1	1.7	1.1	0.0	0.0	1.0
기타	2.6	0.0	0.0	29.3	29.6	0.0	5.5	4.5	6.1	33.3	11.1

- 이번 조사에서는 국유농장의 토지 도급문제는 제외하였기 때문에 농민의 도급토지는 촌 농민집단 혹은 촌민소조 농민집단 소유라고 단정할 수 있음. 집단이 가지고 있는 농촌 토지의 도급수여자와 소유권자가 중복된다는 것을 감안하여, 조사팀은 농민의 도급토지 도급수여자의 실제 현황을 명확히 알기 위해 "귀하가 농지를 도급 받았을 때 도급 계약을 맺은 상대는 누구입니까?"라는 질문을 하였음.
 -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균 4.7%의 농민이 도급수여자가 "국가"라고 응답하였으며 6.3%가 향·진 집단, 58.5%가 촌 집단, 17.7%가 촌민소조이라고 답하였음.

중국농업동향

- 또한 일부 농민은 이미 오래된 일이라 토지도급 계약을 맺은 상대를 기억하지 못하였는데 이런 경우 도급수여자를 "기타"로 분류하였음.
- 이 외에 토지도급경영권의 유통으로 현재의 농민이 이미 도급토지의 최초 도급인이 아닌 경우와 기타 여러 원인으로 도급수여자를 확실히 알 수 없는 경우의 도급수여 자 또한 "기타"로 분류하였음.
- 조사 결과 대부분의 농민이 자신이 도급 경영하는 토지의 도급수여자가 촌 집단과 촌민소조라 여기고 있었으며, 일부 농민은 도급경영 토지의 도급수여자가 향·진 집단혹은 국가라 생각하고 있었음. 농민이 도급수여자를 정확히 알지 못 하는 상황은 귀주성, 사천성, 호남성 등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음.
-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다수 농민이 촌 집단을 "국가"의 토지 도급 대리 조직이라고 여기고 있었음. 즉, 토지도급 계약을 체결한 상대가 촌 집단인 것을 명확히 알아도 실제 도급수여자(혹은 농민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상대)은 국가라고 확신하고 있었음.
 - 실제로 국가와 향·진 집단은 근본적으로 도급수여자 자격으로 농촌 토지 도급 활동을 할 수 없음.
 - 이러한 잘못된 인식은 주로 농민들이 촌 집단을 국가 혹은 향·진 집단의 대리 조직이라고 오해하여 토지도급 계약을 체결한데 그 원인이 있음. 일반적으로 해당 도급 토지의 실제 도급수여자는 촌 집단임.
- 조사결과 대부분의 농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농촌 토지의 소유권주체는 촌 농민집단과 촌농민소그룹(촌민소조) 농민집단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도급토지 도급수여자에 대한 농민의 이해와 법률 규정 간에는 괴리가 있어 도급토지 도급수여자에 대한 농민의 인식 조사결과로는 도급토지의 소유권 주체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었음.

3. 집단토지 소유권주체에 대한 농민의 인식

○ 조사결과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신이 경작하는 도급토지의 소유권이 국가에

100 • 2009 봄호

있다고 생각하는 농민이 41.9%에 달하였음.

- 또한 3.6%는 향·진 집단, 29.6%는 촌 집단, 6.2%는 촌민소조에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개인이라는 응답도 17.6%를 차지하였음.
- 조사결과 도급토지 소유권자가 국가라고 응답한 농민의 비율(41.0%)이 가장 높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향·진, 촌, 촌민소조 등 3급(三級) 집단이라 응답한 농민의 비율(39.4%)보다 높았음.
 -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농민이 촌 집단을 국가(의 대리조직)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음.
 - 행정 권력이 집단토지소유권의 행사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여 개인 권리를 약화시킴에 따라 농민의 이러한 오해가 더욱 심화되었으며, 이는 결국 농민이 농촌토지 소유권 귀속 문제의 실제 현황을 확실히 알기 어렵게 만들었음.

표 3. 농민의 집단토지 소유권 주체에 대한 인식

단위: %

구 분	산동성 (山東省)	강소성 (江 <u>蘇省</u>)	광동성 (廣東省)	귀주성 (貴州省)	사천성 (四川省)	산서성 (山西省)	亭룡강성 (黑龍江省)	하남성 (河南省)	호북성 (湖北省	호남성 (湖南省)	합계
국가	4.3	3.3	14.9	53.0	64.0	38.3	41.9	58.4	49.7	53.0	41.9
향(진) 집단	3.9	0.0	1.1	4.4	6.3	2.8	2.2	3.9	9.9	1.1	3.6
촌집단	37.6	66.1	76.2	14.9	7.9	23.9	19.9	19.1	16.6	13.1	29.6
촌소조	6.7	22.8	4.9	2.8	3.4	1.1	1.1	6.7	6.1	6.6	6.2
개인	8.9	7.8	2.8	20.9	16.5	31.7	32.6	11.8	16.6	26.2	17.6
기타	0.0	0.0	0.0	3.3	1.1	1.7	1.1	0.0	1.1	0.0	0.83

- 토지도급경영권은 일종의 용익물권으로서 성격상 민사 권리에 속함.
 - 도급기간 동안 도급토지에 대한 조정을 진행하는 것은 실제로는 농민들의 권리를 잠시 양도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마땅히 농민들의 자발성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어느 누구도 강요할 수는 없음.

중국농업동향

- 만약 농민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도급토지의 조정을 실시한다면 이는 농민이 이미 취득한 물권을 박탈하고 파괴하는 것과 같음.1
- 중국의 법률과 정책은 토지도급경영권 조정에 있어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음. 비합리적인 토지도급경영권 조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농촌토지도급법》 제27조 규정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음.
- 도급기한 내 도급수여자는 도급 토지를 조정할 수 없음.
- 도급기한 내 자연재해 등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개별 농가 간 도급 경작지, 초지에 대해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촌집단경제조직 구성원으로 이루어지는 촌 민회의에서 2/3이상이 동의하거나 2/3이상의 촌민대표의 동의를 얻고 동시에 향·진 인민정부 또는 현급 인민정부의 농업 등 행정주관부문에 보고하여 비준을 얻어야함. 도급계약서 상의 계약 내용은 조정할 수 없음.
- 토지도급경영권의 조정은 집단토지소유권의 권리 가운데 하나임. 따라서 토지도급경 영권 조정 여부는 순전히 도급수여자와 도급인 간의 일로 공권력이 절대 개입될 수 없음.
 - 그러나 입법 과정에서 지방정부는 집단토지도급경영권 조정 여부를 결정하는 관제권 (管制權)을 부여 받았음. 이로 인해 지방정부가 농민이 토지권리를 행사하는 데 간섭하고, 권력을 이용하여 토지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결과를 초래하였음.²
- 행정 권력의 과다 개입은 토지소유권자인 농민집단의 권리를 침해하여 농민으로하여 금 촌 집단(혹은 촌민소조)과 국가의 경계를 혼동하는 사태를 초래하였음.
- 토지도급경영권 조정에 행정 권력이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에 대해 농민들이 수긍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설문조사 항목에 "도급기간 내, 귀하는 도급토지는 어떠한 절차를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을 제시하였음.
 -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도급수여자의 결정만 있으면 도급토지의 조정이 바로 가

¹ 陳小君等. 2004. 『農村土地法律制度研究—田野調査解毒』, 中國政法大學出版社.

² 張廣榮 2007. 『我國農村集體土地民事立法研究論綱從保護農民個體土地權利的視角』,中國法制出版社。

능"하다고 응답한 농민은 3.8%에 불과하였음.

- "도급수여자가 마련한 조정 방안과 촌민(대표)대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농민이 35.0%, "도급수여자가 마련한 조정 방안과 정부 비준"이 있으면 바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농민이 38.8%를 차지하였음.
- 8.7%의 농민은 "기타"의 절차를 통해 도급토지의 조정이 가능하다고 응답하였으며, 7.7%의 농민은 도급토지는 조정할 수 없다고 응답하였음.

표 4. 도급토지 조정 과정에서 농민의 정부 지위에 대한 인식

단위: %

	산동성 (山東省)	강소성 (江蘇省)	광동성 (廣東省)	귀주성 (貴州省)	사천성 (四川省)	산서성 (山西省)	亭룡강성 (黑龍江省)	하남성 (河南省)	호북성 (湖北省	호남성 (湖南省)	합계
A	2.3	0.0	6.6	1.7	2.8	5.0	1.1	6.2	4.9	7.7	3.8
В	34.3	65.6	35.9	11.1	20.5	26.7	19.3	42.1	55.3	38.8	34.9
С	2.8	0.0	15.5	3.9	2.8	8.3	2.8	5.1	7.2	6.6	5.5
D	55.6	8.9	40.9	60.8	63.6	33.3	57.5	35.5	9.4	22.9	38.8
Е	0.0	24.4	0.6	14.4	6.3	2.2	8.8	8.4	11.6	10.9	8.8
F	3.4	1.1	0.6	7.2	3.9	23.9	10.5	2.3	11.1	12.6	7.7

- 주: A: 도급수여자의 결정만 있으면 도급토지 조정이 바로 가능, B: 도급수여자가 제정한 조정 방안과 촌민(대표)대회의 동의, C: 도급수여자가 제정한 조정방안과 정부 비준, D: 도급수여 자 제정한 조정 방안과 촌민(대표)대회의 동의 및 정부 비준, E: 기타, F: 조정할 수 없음.
 - 현지조사 결과 대다수 농민은 도급토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었으며, 도급토지에 변화가 없으면 인간과 토지의 불공평한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 생각 하고 있었음.
 - 농민들은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에서 소규모의 조정을 실시하는 것을 대체로 찬성하였는데, 이러한 "큰 안정, 작은 조정(大穩定, 小調整)"은 중국정부가 추구하는 정책이기도 함.
 - 조사결과 농민들이 도급토지 조정 자치권을 절실히 원하고 있으며 농민의 73.8%는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촌민(대표)대회의 동의"(즉, B+D)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

- 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 또한 그동안 법률이 도급수여자의 토지도급경영권의 조정을 계속하여 기각하여 왔으며, 정부는 대대적인 선전을 통해 이러한 상황을 농민들에게 각인시켜 왔음. 따라서 농민들은 기본적으로 도급수여자가 스스로 토지도급경영권 조정을 결정할 수 없다고 믿고 있었음.
- 토지도급경영권이 "정부 비준"(즉, C+D)이 있어야 비로소 조정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농민도 무려 44.3%에 달했음. 이것은 토지도급경영권 조정에서 행정 권력을 결코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함. 도급토지 조정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농민 중 대부분이 토지도급경영권의 조정 권한은 반드시 정부로부터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음.
- 즉, 적지 않은 농민이 도급토지의 조정은 반드시 정부에서 추진해야 하며, 만약 정부가 조정을 승인하지 않거나 개입하지 않는다면 설사 촌민(대표)대회에서 통과된 도급토지 조정 방안이 법률 규정에 부합한다 하여도 도급토지는 조정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음. 정부권력에 대한 농민들의 이러한 인식은 비록 차이는 있으나 중국유관 법률 규정의 기본 정신에 완전히 부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집단토지소유권제도의 운영 중 행정 권력의 월권 행위, 농민집단의 권리 침해, 촌민위원회(촌민소조)의 역할 착각은 농민이 국가와 촌민위원회(촌민소조)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 이런 상황은 농민이 집단토지소유권을 국가토지소유권과 동일하게 인식하도록 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음.
- 농촌토지소유권 주체에 대한 인식이 지역에 따라 비교적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도 주 목할 만 함.
 - 귀주성, 사천성, 하남성, 호남성 등 남부지역 4개 성에서는 도급토지 소유권자가 국 가라고 답한 농민 비율이 50% 이상이었지만, 광동성, 강소성은 각각 3.3%와 14.9% 로 매우 낮았음.
- 광동성 농민이 도급토지를 국가소유라 여기는 비율이 비교적 낮은 것은 경제가 발달

하였고, 실제로 촌민이 집단소유 토지로부터 비교적 많은 경제 이익을 얻는다는 것과 관련 있음.

- 예를 들어 이번 조사지역 중 하나인 불산시(佛山市) 남해구(南海區)는 주강(珠江) 삼각주 내지에 위치하여 홍콩, 마카오 등과 인접하고 있음. 1986년 하반기부터 남해 구는 국무원이 선정한 농촌종합개혁시범구역의 하나로 규모화 경영을 시작하였음. 토지주식합작제를 실시하여 토지를 모아 통일된 계획하에 관리, 이용, 개발을 진행하였음. 토지주식합작제 실행 후 남해구는 농업 생산기반이 안정되고 비농업부문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으며, 농민생활 환경이 개선되고 농민소득이 증가하였음.
- 해남구의 토지주식회사는 토지소유권을 자산으로 환산하여 거주 기간에 따라 농민에 게 토지주식의 형태로 배분해 주었음. 이러한 실제적인 이익을 통해 도급토지는 집 단의 소유라는 관념이 농민의 의식 중에 형성되었으며, 이러한 제도는 광동성에서 매우 보편적임.
- 강소성의 경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농촌토지의 권리 주체를 명확히 확립하고 토지소유권 증서를 배포하고 있어 집단토지의 권리 귀속이 매우 명확하며 도급토지를 국가소유로 여기는 농민 비율도 극히 낮음.
- 농민의 도급토지 도급수여자에 대한 인식 현황과 농촌토지소유권 주체에 대한 인식 현황을 함게 결합하여 고찰하면 강소성과 광동성 2개 성에서 도급토지 도급수여자를 촌 집단과 촌민소조라고 응답한 농민 비율이 가장 높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음.
 - 강소성에서는 조사대상 농민 100%, 광동성에서는 조사대상 농민 97.2%가 도급토지의 도급수여자가 촌 집단이나 촌민소조라고 답하였음.
 - 이러한 조사 결과는 2개 성에서 도급토지가 국가소유라고 응답한 농민의 비율이 가장 낮았다는 조사결과와 서로 일치함.
- 이와 같은 결과는 경제가 발전하거나 농민이 농민집단의 구성원으로서 토지소유권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면, 혹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권리를 인정해 주고 집단토지소유 권 증서 배포를 가속화 한다면 농민의 집단토지소유권 귀속과 관련한 인식상의 편차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은 물로 막을 수도 있다는 가설을 증명해 줌.

중국농업동향

- 이 외에도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7.6%의 농민이 도급토지의 소유권자가 농민 개인이라고 응답하였음.
 - 귀주성, 산서성, 흑룡강성, 호남성 등 4개 성에서 이러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각각 20.9%, 31.7%, 32.6%, 26.2%에 이름.
- 조사결과 이러한 잘못된 인식은 주로 농민 스스로가 도급토지경영권과 농촌토지 소유 권의 성격에 대해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토지도급경영권을 토지 소유권이라고 생각한다는 데서 기인했음을 발견할 수 있었음.
- 농민의 합법적인 이익 보호, 농민의 생산 적극성 유도, 농촌사회의 장기적인 안정 유지, 농업과 농촌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측면에서 출발한 각종 정책과 법률은 모두 농민들의 토지사용권의 장기불변을 규정하고 있고, 농민에게 토지도급경영권을 토지소유권처럼 인식하도록 하여 모종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 농민의 장기적인 토지사용, 특히 농업세 폐지는 농민으로 하여금 토지로부터 이익만 취하고 아무런 의무도 부담하지 않도록 하였음. 이러한 조치 또한 농민들의 위와 같은 잘못된 인식을 초래하였음.
- 중국 농촌에서는 집단토지소유권의 행사주체로서 촌민위원회가 줄곧 국가에 의존하였 기 때문에 국가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집단자산으로부터 이익을 취할 수 있었음.
 - 농민집단은 독립 혹은 자주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없었으며, 집단토지소유 권 주체에 상응하는 실력을 발휘할 수 없었음.
 - 따라서 농민집단의 집단토지소유권자라는 신분은 농민의 의식 속에서 점차 사라졌으며, 농업세를 폐지한 후 농민집단은 토지소유권이 가져다 준 이익 획득의 루트를 완전히 상실하였음. 농촌토지의 소유권자로서 농민과의 관계는 더욱 멀어졌으며, 토지소유권자로서의 역할도 농민의 의식 속에서 점차 사라졌음.
- 조사결과 현재 중국 농촌의 농민들은 집단토지소유권 주체에 대한 인식 상태가 비교적 혼란스럽고 그 원인도 복잡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음.

4. 집단토지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농민의 염원

- 중국의 현행 집단토지소유권제도는 결함이 많아 효과적으로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못 하는 상황임.
 - 이에 따라 많은 학자들이 현행 집단토지소유권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현재 다양한 개혁 조치가 제시되어 있으며 이들 모두 농민 이익에 부합되고 농업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조치로 평가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현행 집단토지소유권제도를 개혁할 것인지,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가 아닌 향후 집단토지소유권 귀속 문제에 대한 농민의 기본적인 의견을 조사하여 이 결과를 새로운 제도 모색에 참고하였음.
-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귀하는 농촌 도급토지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21.2%의 농민이 국가가 갖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음.
 - 이외에도 1.5%의 농민이 향·진 집단, 22.2%의 농민이 촌 집단, 5.1%의 농민이 촌민 소조. 46.4%의 농민이 개인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음.
- 조사결과 집단토지소유권이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답한 농민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집단소유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농민 비율은 28.7%에 불과하였음.
 - 산동성과 강소성 2개 성을 제외한 나머지 성의 농민들은 모두 향후 농촌토지소유권의 이상적인 주체는 농민 개인이라고 답하였으며, 광동성, 사천성, 산서성, 흑룡강성, 호북성, 호남성 6개 성은 50% 이상의 농민이 이에 동의하였음.
- 대부분의 농민들이 향후 농촌 토지가 농민 개인 소유로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가운데 산동성과 강소성은 각각 48.9%와 88.9%의 농민이 가장 이상적인 농촌 토지소유권의 주체는 집단이라고 응답하였음.
 - 산동성의 비율이 이와 같이 높은 원인을 이번 조사 자료를 통해서는 알 수 없었음.
 - 그러나 강소성의 경우 절대 다수의 농민들이 이런 견해를 갖는 것은 강소성이 집단토 지소유권 증서 발급에 있어 뛰어난 성과를 보인 것과 관계가 있음.

	₩ 5	농초	집단토지소유권	귀속에	과하	농민의	의
--	-----	----	---------	-----	----	-----	---

단위: %

	산동성 (山東省)	강소성 (江蘇省)	광동성 (廣東省)	귀주성 (貴州省)	사천성 (四川省)	산서성 (山西省)	흑룡강성 (黑龍江省)	하남성 (河南省)	호북성 (湖北省	호남성 (湖南省)	합계
국가	23.6	3.3	5.5	31.5	31.3	11.7	12.7	34.8	29.3	28.9	21.2
향(진) 집단	4.5	0.0	0.0	0.6	1.1	1.7	1.1	2.3	3.3	0.6	1.5
촌집단	42.1	63.3	39.8	8.3	6.8	16.1	13.3	19.7	4.9	7.7	22.2
촌소조	2.3	25.6	2.2	4.5	3.9	1.1	2.2	6.5	0.0	2.7	5.1
개인	25.3	7.8	51.4	49.2	50.0	65.0	67.4	35.9	57.6	54.1	46.4
기타	1.1	0.0	1.1	4.4	5.1	3.9	2.2	1.1	4.4	4.9	2.8

- 조사결과 21.2%의 농민이 향후 농촌 토지가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였음.
- 산동성, 귀주성, 사천성, 하남성, 호북성, 호남성에서는 모두 20% 이상의 농민이 이에 찬성 하였으나, 강소성와 광동성 2개 성은 각각 3.3%와 5.5%에 불과하였음.
- 이런 현상은 강소성과 광동성이 집단경제가 비교적 발달한 것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다른 요인의 영향이 있는지 여부는 진일보한 고찰이 요구됨.
- 조사결과 일부의 농민은 토지 집단소유가 농민이 토지를 개발하고 이용하는 데에 많은 제약을 가하고 있으며, 만약 개인이 토지소유권을 갖는다면 이러한 제약에서 벗어나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개인이 농촌토지소유권을 가질 수 있기를 절실히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많은 농민들이 집단토지를 도급하면 바로 그 소유자가 될 수 있다고 오해하거나 토지도급경영권과 농촌토지소유권을 혼동하고 있음.
- 많은 농민들이 농촌 토지를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응답하고 있는데 이는 결코 농촌 토지 사유화를 희망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더욱 안정된 토지도급경영 권을 누릴 수 있기를 희망하는 것임.
 - 일부 농민은 토지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는 결코 중요하지 않으며, 관건은 농촌토지

도급경영정책의 안정을 유지하고 농민에게 부담이 되는 정책을 감소시키는 것이라고 응답하였음.

5. 결론 및 시사점

- 중국 농촌 사회의 집단토지소유권제도 운영 실태에 관한 현지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음.
- 첫째, 지방정부의 행정 권력이 집단토지소유권제도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나치게 간섭 하고 있음.
- 집단토지소유권은 일종의 민사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농촌토지제도의 법제화 과정에 서 행정 권력이 깊숙이 개입하여 집단토지소유권제도를 변질시키는 결과를 초래하 였음.³
- 중국이 이미 사회주의시장경제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에는 여전히 행정 권력이 집단토지소유권제도 운영 과정에 개입하는 것을 인정하는 조항이 있음.
- 도급 기간 내 토지도급경영권을 조정하려면 반드시 향·진 인민정부와 현급 인민정부 등 행정 주관 부문의 비준을 얻어야 함. 이는 집단토지소유권제도의 운영에 행정 권력의 간섭이 더해졌다는 것을 의미함.
- 행정 권력의 과도한 개입은 집단토지소유권 주체에 대한 농민들의 인식의 혼란을 초 래했으며, 이는 농민들로 하여금 토지의 국가소유와 농민집체소유를 혼동하게 만들었음.
- 둘째, 집단경제의 발전 수준과 집단토지소유권제도의 운영 상태는 서로 밀접한 관계 가 있음.
 - 일반적인 상황에서 집단경제가 발달할수록 집단토지소유권제도의 운영 상태는 더욱 양호해 짐. 이는 경제의 발달이 집단토지소유권제도의 결함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영

³ 劉俊. 2006. 『中國土地法理論研究』,法律出版社.

향을 어느 정도 보완하기 때문임.

- 집단토지소유권 주체로서의 "농민집단"은 하나의 단체로서, 집단토지소유권제도 운영에 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권리 행사시 경제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따라야 함.
- 현행 중국 법률에는 집단토지소유권 주체의 민주적인 권리 행사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규정은 없으나, 집단경제가 비교적 발달한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농민집단 이 얻은 이익을 집단 구성원들 간에 최종적으로 배분하고 있음.
- 이러한 공평하고 합리적인 이익 분배는 각 농민집단이 선택한 것으로 구성원간의 민주적인 협상의 결과물임. 농민집단의 집단경제가 발달되지 못하거나 낙후된 지역에서는 집단토지소유권의 권리행사 주체마저 원동력을 갖기 어려움. 많은 구성원들이해당 농민집단으로부터 아무런 이익도 얻지 못해 참여권을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많음. 농민집단경제는 그 구성원이 의식을 가지고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다할 때 발전할 수 있음.
- 셋째, 농촌토지의 권리를 확립하고 그와 관련된 권리 증서를 발급하는 것은 집단토지 소유권제도의 투명화를 위해 매우 중요함.
 - 집단토지소유권은 일종의 물권임. 물권은 배타성을 갖기 때문에, 투명성이 깨지는 경우 권리 관계는 복잡해 질 수밖에 없으며 제 삼자에게 예측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게 됨.
 - 제 삼자를 위시한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법률은 물권에 변동 사항이 발생할 시 반드
 시 공시를 하여 제 삼자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음. 각국의 물권법은 일반적으로 공시를 원칙으로 함.
 - 중국 《물권법》 제6조 역시 "부동산물권의 설립, 변경, 양도와 소멸은 법률 규정에 따라 등록함. 부동산물권의 설립과 양도는 법률 규정에 따라 교부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집단토지소유권은 부동산물권에 속하기 때문에 등록하여 공시해야 함. 집단토지소 유권은 등록 후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어 농민이 집단토지소유권 주체로서의 "농민 집단"을 정확히 식별하는 데 도움을 주며, 농민이 농민집단과 관련된 정책 결정 및 이익 분배 문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넷째, 향후 집단토지소유권제도의 개선에 대한 농민의 기대와 중국의 현행 토지제도 의 정신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나 이러한 모순이 조율 불가능한 것은 아님.
 - 농촌집단토지의 이상적인 소유권자로 많은 농민들이 농민 개인을 선택하였음. 비록 농촌토지소유권과 토지도급경영권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번 조사를 통해 농민들이 보편적으로 농촌토지의 사유화를 염원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는 없었으나, 이번 조사 결과는 농민들이 "농민집단"의 일원으로서 향유하여야 할 이익과 농촌토지도급경영제도의 장기적인 안정을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 중국의 기본적인 정세와 제도에 비추어 봤을 때, 설사 농민이 진정으로 농촌토지의 사유회를 염원한다 하여도 법률상으로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는 못할 것임. 완벽한 집단토지소유권제도를 통해 농민이 농민집단의 구성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각종 이익을 직접 체험한다면 설령 현재의 집단토지소유권제도가 개편되지 않는다 하여도 농민의 진정한 염원에 위배되진 않을 것임.

Ⅳ. 정책자료

■ 2009년 '중앙 1호 문건' 전문

■『식품안전법』전문

■ 《전국 토지이용 총계획 요강(2006~2020년)》

2009년 '중앙 1호 문건' 전문

당의 17기 3중전회는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업의 총체적인 구도와 샤오캉(小康)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전략적인 국면으로부터 출발하여 중국 농촌의 전면적인 샤오캉사회 건설의 웅대한 청사진을 그렸으며 새로운 상황 하에서 농촌개혁 발전을 추진하는 행동강령을 제정하였다. 각 지역 각 부문에서는 3중전회의 정신을 열심히 학습하고 심도 있게 터득하여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을 확고부동하게 추진하며 중국특색을 지닌 농업현대화의 길로 확고부동하게 나아가야 하며, 도농 경제사회 통합발전이라는 새로운 국면의 형성을 확고하게 가속화하며 《농촌개혁 발전 추진에 관한 약간의 중대 문제 결정(中共中央關于推進農村改革發展若干重大問題的決定)》1에서 제기된 국정방침을 실현시켜 나가야한다.

2008년 각 지역, 각 부문에서 당 중앙의 결정을 열심히 관철시켜 중대 자연재해를 이겨 냈고 다양한 곤란과 위험을 극복하였으며, 농업·농촌은 양호한 발전국면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였다. 농업생산은 다시 풍작을 거두었으며 식량생산량이 또다시 새로운 기록을 돌파하였다. 농민소득은 비교적 빠른 성장을 이루었고 농촌 공공사업은 빠르게 발전하였으며 농촌에서 당과 군중, 간부와 군중의 관계가 계속 개선되고 있다. 농업·농촌의 좋은 형세는 당과 국가가 대사를 성공적으로 잘 치를 수 있도록 하고 난관에 적절하게 대응하는데 건실한 토대를 마련해 주었으며, 경제가 안정적이면서도 비교적 빠른 발전을 유지하고 사회의화합과 안정을 유지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현재, 국제금융위기가 지속되고 세계 경제성장의 뚜렷한 둔화로 인하여 중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농업·농촌 발전에 대한 충격도 차츰 두드러지고 있다. 2009년은 21세기 들어 중국경제에 가장 어려운 한 해가 될 뿐만 아니라 농업·농촌의 양호한 발전을 공고히 하는데 가장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다. 지난 5년간 식량증산

^{*} 中共中央、國務院《關於2009年促進農業穩定發展農民持續增收的若幹意見》(中發[2009] 1號)를 전문 번역하였음.

¹ 중국 공산당 제17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08.10.9~13)에서 채택된 문건

으로 기준치가 높아진 상황에서 식량생산의 안정적인 발전을 유지하는 임무는 더욱 힘들고 무거울 것이다. 국내외 자원성 제품 가격이 보편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농산물가격의합리적인 수준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전 사회가 식품 품질안전에 관심을집중하는 현시점에서 농산물의 품질 제고와 경영위험 회피에 대한 요구가 더욱 절박해지고 있다. 현재 농민공의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농민소득의 빠른 증가를 유지하는데 그제약이 더욱 뚜렷해 졌다. 위기의식을 가지고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여 단호한 조치로식량생산의 감소를 방지하고 농민소득의 파동을 방지함으로써 농업생산의 안정적 발전과농촌사회의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

2009년도에 농업·농촌 업무를 잘 추진하는 것은 특별히 중요한 의의가 있다. 내수를 확대하는 가장 큰 잠재력이 농촌에 있고, 경제의 안정적이고 빠른 발전을 실현하는 버팀목도 농업이며, 민생 보장 및 개선의 중점과 난점도 농민에게 있다. 2009년 농업·농촌 업무의 총체적인 요구는 17차 당대회, 17기 3중전회와 중앙경제공작회의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등소평이론과 "3개 대표" 사상의 지도하에 과학적 발전관을 심도있게 관철하여 농업·농촌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을 유지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인 임무로 설정한 가운데 식량생산을 안정시키고 농민소득을 증대시키며 농업기초를 강화하고 민생 보장 및 개선을위하여 혜농정책(惠农政策)을 강화하고 과학기술역량을 강화하며 투입역량을 증대시켜 산업구조를 최적화하고 개혁을 추진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국가의 식량안전과 주요 농산물의 효과적인 공급을 보장하고 농민소득의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하여 경제사회의 지속적이고 빠른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

1. 농업에 대한 지원과 보호역량 강화

1. 농업·농촌에 대한 투자 확대 내수 확대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하여 "삼농"을 투자의 중점으로 삼아야 한다. 국가의 농촌 기초시설 건설과 사회사업 발전에 대한 투자를 대폭 증가하고 예산 가운데 고정자산의 농업농촌 투자 비중을 높여 새로 증가한 국채의 사용을 "삼농"에 집중되도록 한다. 정부의 토지 양도 수익과 농경지 점용세 중 새로 증가한 수입을 농업·농촌에 투자하는 비율을 대폭 확대한다. 농경지 점용세의 세율을 높여 새로 증가한 수입을 전부 농업에 사용하고 토지 양도 수익은 농업토지개발과 농촌 기초시설 건설에 중점 지원한다. 중서부지역 농촌의 공공건설 항목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2009년부터 중서부지역의 노후화된 위험저수지에 대한 위험 제거 및 보강, 생태건설, 농촌 식수안전, 대형·중형 관개지구 부대시설 개조 등 국가의 공익성 건설 항목을 대폭 확대하고, 현급 및 현급 이하 지방정부로부터의 자금 갹출제도를 폐지한다. 도시유지보호건설세 중 새로 증가한 수입은 농촌 건설계획과 농촌 기초시설 건설 및 유지보수에 중점적으로 사용한다. 조건을 구비한 지역은 정책성 농업투자회사와 농업산업발전기금을 설립할 수 있다.

- 2. 농업보조금 규모 대폭 확대 2009년에는 작년에 이어 보조자금을 더욱 확대한다. 식량재배 농민에 대한 직접보조금를 확대한다. 우량종자보조의 역량을 확대하여 보조금 기준을 높이고, 벼, 밀, 옥수수, 면화 품목은 보조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유채와 대두 품목은 보조범위를 확대한다. 농기계구입보조를 대규모로 확대하여 선진적이고 쓰기 편리하고, 기술이 성숙되고, 안전하고 믿음이 가며,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좋은 서비스의 농기계를 보조 품목에 추가하며 보조범위를 전국의 모든 농목업 현(목장)으로 확대하고 농기계의 보급 및 응용과 농기계공업의 발전을 촉진한다. 농자재종합직불보조의 역량을 강화하여 보조금 동태조정시스템을 완비하고, 비용—수익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농자재가격의 상승폭과 농작물 실제 재배면적에 근거하여 신속히 보조를 증대시킨다. 목표가 명확, 간편하고 고효율적이며 식량생산 유인에 유리한 요구에 근거하여 농업보조 방법을 완비한다. 농업보조 규모가 증가한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점차적으로 대규모 전업농가와 가족농장에 대한 식량재배 보조 역량을 강화한다.
- 3. 농산물 가격의 합리적인 수준 유지 국내외 농산물 시장의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고 적당한 시기에 정부의 조절 능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농산물 가격의 하락을 방지하며, 곡물가격이 지나치게 낮아져 농민이 손해 보는 것을 방지하고 농업경영소득의 안정적인 성장을 보장한다. 2009년에도 계속하여 식량최저수매가를 인상한다. 국가의식량, 면화, 식용 식물유, 돼지고지의 비축을 확대하고, 2009년도 지방정부의 식량 및 식용유 비축을 규정한 규모대로 전부 실시하며 적정 시기에 주요 농산물의 임시비축을 가동하고 기업이 상업비축을 확대하도록 장려한다. "북방지역의 식량을 남방지역으로 운송(北量南运)"하는 사업과 신강지역 면화의 외부운송을 강화하고, 운송비 보조와 감면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소비지의 기업이 산지에 가서 수매하는 것을 지원한다. 주요 농산물의 수출입 시기와 추세를 잘 파악하여 우위 농산물의 수출을 지원하고 일부 품목의 과다수입으로 인해 국내시장이 충격을 받는 것을 방지한다.

4. 농촌금융서비스 능력 제고 현(縣)지역 내 은행업 금융기구의 신규 예금액을 주로 현지 대출금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시행방안 제정을 가속화하고 독립심사시스템을 구축한 다.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위험을 방지하는 전제하에서 다양한 형식의 신형 농촌금융조직 과 농촌 위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성 중소은행의 발전을 강화한다. 금융기구가 농촌 금융상품과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소액신용대출과 소규모 금융 서비스를 대폭 발전시켜 농촌의 소규모(微小型) 금융조직이 다양한 방식으로 금융기구에 서 자금을 유입하도록 한다. 농촌 소비신용 대부시장을 적극적으로 확대한다. 법에 근거하 여 소유권이 명확하고,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대형 농용생산설비, 임지재산권(林權), 황 무지 사용권 등의 담도 대출과 예금잔고, 창고증권(倉單), 양도가능한 주주의 권리, 특허 권. 상표전용권 등 권리를 담보로 대출할 수 있는 업무를 전개한다. 농업관련 대출은 세금 을 감면하고 비용을 보조하며, 정책성 금융은 농업부문에 장기적으로 신용대출을 지원하 고 농민전업합작사에서 신용합작 시범 실시를 전개하는 등의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한다. 금융기구가 농업과 관련된 대출에 대하여 부실채권 심사 후 장부에서 삭제하는 조건 을 완화한다. 정책성 농업보험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시범실시 범위와 보험 종류를 확대하 고 중앙재쟁의 중서부지역에 대한 보험료 보조 수준을 제고하고 농업재보험체계와 재정이 지원하는 위험분산기제를 신속히 구축하며 농촌에서 상호합작보험과 상업보험의 발전을 촉진한다. 농촌신용대출과 농업보험이 결합한 은행·보험 상호작용시스템을 구축한다.

11. 농업생산의 안정적 발전

5. 식량생산 지원 강화 식량 재배면적을 유지하고 품종구조를 최적화하며 단수를 제고하여 식량종합생산능력을 부단히 제고한다. 식량주산지의 이익보상제도를 수립하고 주산지의 국가 식량안전에 대한 공헌도에 따라 일반적 이전지출을 증대시키고 대규모 식량생산 현(縣)에 대해 장려금 지원 및 농업기초시설 건설 투자와 농업종합개발 등 자금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식량산업과 대규모 기간기업의 발전을 지원하며 산지와 소비지의 이익연계 시스템 건립을 유도하여 주산지의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식량재배 농민이 합리적으로 경제적 수익을 얻도록 보장한다. 주산지의 식량위험기금 자금 갹출제도를 폐지한다. 전국적으로 5천만 톤 식량증산 계획을 수립하고 주산지 중점 현(농장)을 단위로 하여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식량성장책임제(米袋子省長負責制)"를 한층 강화하고, 각 지역

에서는 해당지역의 농경지와 수자원 보호, 식량 생산과 판매, 시장조절 책임을 지고 단계 별로 효과적인 식량안전 감독 및 검사와 효과적인 심사체계를 구축한다. 동북지역 등 노후 공업기지 진흥사업과 결합하여 농업현대화를 가속화한다. 현대농업을 건설하고 국가식량 안전을 보장하는데서 국유농장이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도록 한다.

- 6. 비교우위 생산지역에서 경제작물 재배 확대 새로운 비교우위 농산물 지역배치계 획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유지작물 생산을 지원하는 국가의 여러 가지 정책조치를 시행하고, 동북지역과 내몽고의 고품질 대두와 장강유역의 유채생산기지 건설을 강화한다. 전국적으로 목본(木本) 유지작물산업의 생산 발전계획을 조속히 제정 실시하고 비교우위지역을 중점 지원하며 다수확 우량품종의 육종 및 보급을 가속화한다. 면화생산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장강유역, 황해, 회해지역의 면화생산기지 건설에 착수한다. 비교우위 생산지역에서 당료, 감자, 천연고무 등의 농작물 생산을 발전시키고, 채소, 과일, 차, 화훼 등원예작물의 시설재배를 적극 지원한다.
- 7. 규모화 및 표준화된 축산업과 수산업의 발전 촉진 시장경보, 비축조절, 보험확대, 선물거래 등의 조치를 취해 양돈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한다. 돼지 우량종 보조와 번식 가능 암퇘지 보조정책을 계속하여 실시하며, 대규모 돼지 공급 현에 대한 장려정책의 실시 범위를 확대한다. 젖소 우량종보조, 우수 품질 예비젖소 사육보조 등의 정책을 계속하여 실시하고, 주요 젖소생산 현에 대한 재정 장려정책을 실시하며 기업의 표준화 집유소 건설을 지원하여 원유의 질을 보장하도록 한다. 가축·가금의 표준화 및 규모화된 사육 농장(지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신용대출 지원역량을 강화한다. 가축·가금 우량종 프로젝트 실시 역량을 확대하고, 동물방역시스템 건설을 보완하며 동물 표식 및 질병추적시스템 건설을 촉진하고 촌급 방역원의 보조경비를 지급한다. 수산 양식 시범지역(장)의 건설을 확대하고 계속해서 어획 휴식 및 금지제도를 실시하며 증식 방류 등 수생생물자원 보호조치를 강화한다. 어항, 어선항로표시, 어선안전설비 등의 건설규모를 확대하여 원양어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8. 농산물 품질안전 관리감독 강화 식품안전법의 공포 및 시행에 박차를 가하고 농산품 품질안전법 관련 부대규정과 제도를 제정하고 개선하며 각 부문간 분담협력관리감독업무체계를 건전하게 하고 효과적인 식품안전관리감독체제를 모색하여 엄격한 식품품질안

전추적제도, 소환제도, 시장 진입허가 및 퇴출제도를 실시한다. 농산품 품질안전의 검사시스템 구축을 가속화 하고 농산품 품질안전표준을 완벽하게 하며 검사기구 자격인증을 강화한다. 농산품과 식품의 샘플검사 범위를 확대하고 점차적으로 강제성 검사검역비용을 청산하거나 낮추어야 한다. 사료 안전관리감독체계의 건전화를 통해 사료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시킨다. 기업의 품질안전책임을 강화하고 출시 상품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진행한다. 농산품과 식품의 생산경영 품질안전 정보제공서비스체계를 수립한다. 특별 정돈 활동을 전개하여 농약과 수의약품 위법사용 행위를 단절한다. 농업표준화시범지구 건설을 가속화하고 선도기업, 농민전문합작사, 전업대농 등이 솔선하여 표준화 생산을 실시하도록 추진하고 녹색농산품과 유기농산품의 생산기지 건설을 지원한다.

9. 농산물 수출입 통제 강화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건전 농산품수출입조절시스템을 구축하여 내외무역을 조정하고 정부, 협회, 기업 간 소통과 협상을 긴밀하게 한다. 농산물수출신용보험의 보증 범위를 확대하고 수출신용보험과 농업보험, 수출신용대출을 상호 결합하는 리스크예방시스템을 모색한다. 노동집약형과 기술집약형 농산물 수출에 대하여 우대신용대출정책을 실시한다. 다국적 농업경영기업을 육성한다. 세계무역기구의 규정에 의거외국상인이 경영하는 농산물과 농자재 시장진입허가제를 건전히 하고 외자로 경내의 농업관련기업을 합병하는 안전심사 범위와 절차를 명확하게 하며 연석회의제도를 수립한다.

Ⅲ. 현대농업의 물질적 지원 및 서비스 강화

10. 농업과학기술 혁신 강화 농업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다양한 경로로 자금을 모아 농업과학기술 혁신기금을 건립하고 중점적으로 주요 영역과 상품, 핵심기술 관련 과학연구를 지원한다. 유전자변형생물 신품종을 육성하는 과학기술 중대특별항목의 추진을 가속화하고 과학연구자원을 통합하고 연구개발 역량을 확대하고 항병충해, 다수확, 우수 품질, 고효율 유전자변형 신품종을 조속히 육성하여 산업화를 촉진시킨다. 주요 농작물의 우성교잡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중대 항목을 실시한다. 농업지적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한다. 선도기업이 국가과학기술계획항목을 담당하는 것을 지원한다. 현대 농산업기술시스템을 개선한다. 식량, 면화, 유지류의 고 산출 혁신활동을 심도 있게 추진하고 과학기술 인력과 대학생들이 농업기술보급의 일선에서 일하도록 지원한다. 농업과학기술훈련을 실

시하여 신형농민을 양성한다. 위탁, 입찰 등 형식을 통하여 농업전문기술협회 등 사회역량을 유도하여 공익성 농업기술보급서비스를 담당하도록 한다.

- 11. 고표준 농지건설 가속화 토지정리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계획을 잘 수립하여 토지 정리, 농지 개간 및 농업종합개발 등 각종 건설자금을 통합 배분하고 농촌 토지 정비를 집중추진하고 전답, 용수, 도로, 임지의 종합관리를 실시하고 중·저 산출 경지를 대규모로 개조하고 고 표준의 경지 비율을 높인다. "토지 비옥화 공정(沃土工程)"을 계속하여 추진 하고 토지 측량을 통해 시비 방법을 찾아 그에 따라 시비하는 것의 실시범위를 확대한다. 농민이 유기비료를 사용하고 녹비재배하며 수수대를 그대로 두어 비료가 되게 하는 것을 장려하고 시범실시를 지지한다. 보호성 경작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내한 작물시범공정을 가속화한다.
- 12. 수리시설 건설 강화 큰 강, 큰 하천 및 중점 중소형 하천의 정비를 강화하여 일련의 대·중형 수리핵심공정을 건설한다. 대·중형과 중점 소형 위험저수지의 위험 제거 및보강의 진도를 가속화하며 공정건설의 품질을 확보한다. 투자의 규모를 확대하고 중점적으로 대형 관개지구 지속건설과 물절약 개조를 가속화한다. 대형 배수관개 펌프장을 갱신 개조 하는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며 서북 연황(沿黃) 양수관개 펌프장, 동북 장마발생지역배수 펌프장 등에 대한 갱신개조 건설을 실시한다. 농업종합개발 중형관개구 핵심공정의물절약 개조역량을 계속 확대한다. 중앙과 성급 재정의 소형 농전수리공정건설의 특별보조금을 증가하고 계획에 근거하여 통합투자하며 대중형 관개구의 경작지 공정과 소형 관개구의물 절약 개조를 추진하고 고효율적인물절약 관개기술을 보급하고 지역의 실정에맞게 소형(小微型) 가뭄방지 수원공정을 건설하고 목초지구(牧區) 수리를 발전시킨다. 주요 수원공정 및 부대 관개지 건설을 강화한다. 수리공정 관리와 농촌수리체제 개혁을 추진하고 농업관개공정 운영관리재정 보조시스템을 탐구하며 농업용수 부담을 감소하는 종합개혁 시범 실시를 가동한다.
- 13. **농업기계화 촉진** 농업기계화 추진공정을 가동하고 중점적으로 시범기지, 경지용도로 건설을 강화하고 농업기계 보급 서비스와 안전관리감독 능력을 제고한다. 주요 식량과 유지작물의 파종, 수확 등 단계에 기계화를 보급하고 경사지에서 사용하는 가볍고 편리한 농업용 기계와 대 면적 작업에 적당한 대형의 농업용 기계의 연구개발을 강화한다. 농

업기계공업기술의 개조를 지지하고 농기계 제품의 적합성과 내구성을 제고하고 애프터서 비스를 강화한다. 주요단계 농업기계작업보조시범을 실시한다. 농기계대농, 식량재배대농 과 농업기계 서비스 조직에서 대중형 농기구 구매에 대하여 신용대출지원을 실시한다. 농 업용 연료기름의 공급보장시스템을 완벽하게 하고 에너지 소모형 농기계 갱신 폐기에 대한 경제보상제를 수립한다.

- 14. 생태환경보호 중점프로젝트 추진 퇴경환림(退耕還林)정책의 성과를 공고히 하고 계속하여 북경과 천진의 황사발원지 관리 등 중점공정를 추진하며 천연림 보호에 대한 투자를 증가하고 천연림보호공정 실시 기한을 연장하는 관련정책의 연구를 강화하고 3북 방호림공정 투자와 건설시스템을 개선한다. 현대임업을 건설하고 산간 임지 특산품, 생태여행업과 목탄종합임업을 발전시킨다. 퇴목환초(退牧還草)공정의 실시 범위를 확대하고 가축사육초지(飼草地)와 관개초지 건설을 강화한다. 산림초원의 화재감시경보시스템과 방화기초시설의 건설을 강화한다. 중점구역 사막화 방치와 작은 유역 종합관리를 가속화 하고경사진 농경지의 수토유실 종합정비공정을 가동하고 산사태와 돌모래 유실 등 지질재해방지를 강화한다. 중앙재정의 산림생태 수익보상표준을 제고하고 초원, 습지, 수토보호 등생태수익보상의 시범 실시를 가동한다. 전문자금으로 장려제도를 적용한 관리제도를 실시하고 농업농촌의 오염정비를 지지한다.
- 15. 농산물 시장시스템 건설 강화 주산지와 집산지의 농산물 도매시장, 정기(集貿)시장 등 유통기초시설 건설을 지원하는 역량을 강화한다. 대형식량물류거점, 농산물의 냉동시스템과 신선한 농산품 배송센터의 건설을 추진한다. 개인 상공업자의 관리비와 집무(集貿)시장 관리비수납정지정책을 실시한다. 대형마트와 농산품 유통기업간 유통채널을 개설하고 농산품의 직접구매기지를 건설한다. 농촌 대리인의 작용을 발휘한다. 신선한 농산품을 운송 판매하는 녹색통로정책을 장기적으로 실행하고 개선하여 전국 범위 내에서 합법적인 신선농산품 운송 차량에 대한 통행료 면제를 추진한다.
- 16. 기층 농업공공서비스기구 건설 추진 3년 내에 전국의 향진 혹은 지역의 농업기술 보급, 동식물 역병 방지, 농산품 품질 감독관리 등 공공 서비스기구 건전화 요구에 따라 직무와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체제를 완비하며 비용을 보장하여 서비스 능력을 확실하게 증강시킨다. 관리체제와 운행시스템을 혁신하고 공개채용, 경쟁을 통한 채용 등의 방식을

통하여 우수한 전문기술인원을 채용한다. 평가제도, 분배제도를 개혁하여 서비스 인원의수입을 직위직책, 사업업적과 연결한다. 농업 공공서비스 기구에서 직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지방 각 급 재정예산에 편입한다. 촌급 서비스지점 시범사업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다.

Ⅳ. 농촌 기본경영제도의 안정

- 17. 농촌토지도급경영제도의 안정 및 개선 관계 법률 법규 및 정책을 수정하고 완비하여 농민에게 더욱 충분하고 보장되는 토지도급경영권을 부여하며 현행 토지도급관계는 안정적이며 장기불변토록 한다. 토지도급경영권에 대한 물권보호를 강화하고 집체토지소 유권의 권리 확인 등기 및 증서 발급을 잘하고 법적으로 집행소유권이 있는 집체조직에 권한을 부여한다. 토지도급경영권 등기 시범 실시를 안정적으로 전개하여 도급한 땅의 면적, 공간위치와 소유권한증명서를 농가에 부여하며 이 기회를 이용하여 토지도급관계를 조정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위법적으로 농민이 도급한 토지를 회수하는 행위를 단호히 금지하고 수정한다. 초원도급경영제도의 실시를 가속화 한다.
- 18. 농촌토지도급경영권 유동시장 건립 토지도급경영권 양도는 토지의 집체소유 성격과 토지의 용도를 변경할 수 없으며 농민의 토지 도급 권익에 손해를 줘서는 아니 된다. 법에 근거하여 자원유상원칙을 견지하고 농민의 토지양도 주체적 지위를 존중하고 어떤조직 또는 개인도 강압적으로 양도해서는 안 되며 자주적인 양도를 방해해서도 안 된다. 완벽한 관리와 서비스 강화의 요구에 따라 토지 도급경영권 양도를 규범화 한다. 조건이되는 지역에서는 양도서비스 조직을 발전시켜 양도하는 쌍방에게 정보 교류, 법규 자문, 가격 평가, 계약 체결, 분쟁 조정 및 처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장려한다.
- 19. 엄격한 경지보호 및 토지절약사용제도 시행 기본 경지는 반드시 필지까지 실시해야 되고 토지도급경영권 등기증명서에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통일된 영구적인 기본농지보호표시를 설립하여 지방에서 임의로 기획을 조정하고 기본 농경지구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지방정부의 경지보호 책임과 목표 평가를 엄격히 하고 농경지와기본농지를 보호하는 것을 지도계층이 이임 시 심사제도로 한다. 기본농지보호보상의 구

체적인 방법을 조속히 마련한다. 도시와 농촌의 건설용지의 총규모를 엄격하게 공제하고 계획, 표준, 시장배치, 평가심사 등 측면에서 전면적으로 용지절약제도를 건립 및 실시한다. 향진 토지이용계획과 향촌 건설계획을 신속히 수립하여 농촌의 건설용지와 주택기지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안배하고 지역의 자원여건에 근거하여 주택기지사용표준을 수정한다. 농촌의 주택기지와 촌장 정리로 절약되는 토지는 우선 재 개간하여 농경지로 하고 농경지용도를 건설용지로 전환 사용 시, 토지환산 법규를 엄격히 적용시켜 보상하고 토지이용의 총제적인 계획에 반드시 부합하도록 하며 토지계획 관리에 편입되어야 된다. 농촌토지 관리제도의 개혁은 상응한 법률과 법규를 완비하고 구체적인 부대정책 마련 후 규범에 맞춰 절차에 따라 추진한다.

20. 집단 임지재산권제도 개혁 추진 5년 가량의 시간을 이용하여 기본적으로 재산권을 명확히 하고 농가에 도급하는 집체임권제도 개혁 임무를 완성한다. 집체임지 경영권과임목(林木) 소유권을 이미 농가에 시달한 지방에서는 조속히 재산권 교역의 플랫폼을 건전하게 건립하여 임지, 임목양도제도의 건설을 가속화하고 임목채벌관리제도를 완비한다. 아직 농가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방에서는 선전을 강화하고 훈련을 실시하며 현지측량증명서를 발급한 다음 집체임권제도개혁을 가속화한다. 재정이 집체임권제도 개혁에 대한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성 삼림보험 시범 실시를 전개하여야 한다. 삼림자원자산평가, 삼림경영방안편제 등 중개서비스의 건강한 발전을 인도한다. 국유임장과 중점 국유임업지구의 임권제도 개혁의 시범 실시를 더욱 확대한다.

21. 농민전업합작사 및 대규모 기간(농)기업 발전 지원 농민전문합작사의 발전을 가속화 하고 시범합작사의 건설 행동을 전개한다. 합작사 인력 양성을 강화하고 각급 정부의 재정에서 경비를 지원한다. 합작사를 세무등기시스템에 가입시키고 세무등기수수료 납부를 면제한다. 금융이 합작사를 지원하도록 신속히 제정하고 조건을 구비한 합작사는 국가 농업관련항목의 구체적인 방법을 담당한다. 농업산업화 경영을 돕고 농산품가공의 발전을 장려하여 농민들로 하여금 더 많은 유통가공에서의 부가가치 증대 수익을 배당 받도록 한다. 중앙과 지방재정은 농업산업화 특별항목의 자금규모를 확대하고 농가를 선도하는 힘이 큰 선도기업에서 기술 연구개발, 기지 건설, 품질 검사를 전개하는 것을 중점 지원한다. 선도기업이 재정 지원 하에 보증(담보)시스템 건설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한다. 효율적인 대책을 실시하여 대규모 기간기업을 도와 대출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다.

V. 도농 경제사회 통합발전 추진

22. **농촌사회사업 발전 가속화** 안정된 농촌문화투자보장시스템을 건립하여 조속히 완비된 농촌 공공문화서비스체계를 형성한다. 라디오/TV '촌촌통(村村通)' 프로젝트와 문화정보자원 공유, 향진종합문화센터와 촌문화실 건설, 농촌영화 방영, 농가서재 등 중점문화혜민(惠民)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농촌의무교육 보급 및 성과를 공고히 하고 농촌학교의 공용경비와 가정경제가 어려운 기숙생 보조 기준을 제고하고 농촌학교 교사 처우를 개선하고 농촌 중소학교 교사(校舍) 안전 조사, 보강 및 개조를 추진한다. 농촌중등직업교육을 가속화 하고 2009년부터 중등직업학교의 농촌가정경제가 어려운 학생과 농업관련 전공학생의 합비 면제를 실시한다. 국가에서 새로 증가한 장학금은 농촌 학생을 우선 지급 대상으로 고려한다. 신형의 농촌합작의료 발전을 공고히 하고 중병 입원치료를 주로 보장해주면서 진찰의료 보장을 겸하는 것을 견지하고 진찰의료 총괄시범실시를 전개하고 조건을 갖춘 지방은 재정 보조 표준과 수준을 제고할 수 있다. 투자를 한증 증가하여 현, 향, 촌의 의료위생공공서비스체계 건설을 강화한다. 지도성 의견을 시급히 제정하고 개인비용납부, 집체보조, 정부보조의 신형 농촌사회양로보험제도를 건립한다. 중앙과 성급 재정에서 농촌의 최저생활보장보조에 대한 역량을 확대하고 농촌의 최저보장표준과 보조수준을 제고한다. 경작농민의 사회보장문제를 시급히 연구하여 해결한다.

23. 농촌기초시설 건설 가속화 농촌의 식수안전프로젝트 건설계획을 조절하고 투자와 건설역량을 확대하며 농촌학교, 국유농(임)장을 건설범위에 포함한다. 배전망을 확대하여 전기 공급인구비율을 확대하고 도시와 농촌 동일 규격/가격 기준의 배전망을 시급히 추진한다. 농촌의 수력발전 건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작은 수력발전으로 대체연료건설 규모를 확대한다. 농촌의 도로건설을 강화하여 2010년 말에 전국 향진과 동중부지구의 조건이 갖춰진 행정촌에서 아스팔트길이 기본적으로 통하는 것을 실현하고 서부지구의 조건이 구비되는 행정촌에서는 도로가 통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실현하며 중앙재정이 중서부지구 농촌도로 건설에 투자하는 역량을 확대하고 농촌의 여객운송관련 정책성지원제도를 수립한다. 농촌의 메탄가스공정건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짚(대)고체화와기체화의 시범실시를 확대한다. 농촌정보화를 발전시킨다. 국유임구, 개간지구, 판자촌의 개조를 가속하고 유목민정착프로젝트를 실시하고 농촌의 위험한 집 개축 시범실시 지역을 확대한다.

24. 농촌노동력의 취업 확대 현재 농민공이 취업이 어렵고 급여가 내려가는 문제에 대하여 각 지역과 관련부문에서는 고도로 중시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최대한 농민공 을 잘 안치하고 농민의 임금소득을 높이도록 노력한다. 기업을 인도하여 사회책임을 이행 하도록 하고 농민공을 많이 고용하도록 기업을 지원하고 농민공에게 적시에 충분한 액수 의 급여를 발급하도록 기업을 독려하고 노사분쟁을 타당하게 해결한다. 잠시 생산경영이 어려운 기업을 잘 인도하여 탄력적으로 노동력을 사용하고 시간안배하고 직업훈련을 하도 록 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일자리가 되도록 한다. 도시와 농촌의 기초 시설 건설과 새로 증가한 공익성 취업 자리는 농민공을 최대한 많이 고용하도록 한다. 일 을 주어 구제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농민이 농업농촌의 기초시설 건설에 참여하도록 유도 한다. 수출지역 및 수입지역의 정부와 기업에서는 투자를 확대하여 대규모로 실용성이 높 은 농민공의 기술훈련을 전개한다. 여건이 되는 지방에서는 실직한 농민공을 상응한 취업 정책의 지원범위에 포함시킨다. 농민공이 고향으로 돌아가 창업하는 것을 지원하는 정책 을 실시하여 대출, 세금감면, 공상등기, 정보자문 등 방면의 지원을 제공한다. 고향으로 돌아간 농민공의 합법적인 토지도급권익을 보장하고 고향에 돌아간 생활이 어려운 농민공 에 대해서는 임시구제 또는 농촌의 최저생활보장 대상에 포함시킨다. 동시에 농업내부의 취업 잠재력을 충분히 발굴하여 농촌의 비농취업공간을 확장하고 농민이 거주 지점 인근 지역에서 창업하는 것을 장려한다. 농민공의 특성에 부합되는 양로보험 방안을 제정하고 양로보험관계가 사회보험의 타관함구 이전문제를 해결한다. 농민공의 통계감독예측제도를 건립한다.

25. **농촌종합개혁 추진** 사회관리와 공공서비스기능을 증강하여 2012년에 기본적인 개혁임무를 완성한다는 목표에 의거 향진 기구개혁을 계속 추진한다. "향진재정을 현이 관리(鄉財縣管)"하는 개혁을 추진하고 현향재정부문의 농업관련자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3년가량의 시간에 자금이 안정되고 관리가 규범화되고 보장이 유력한 촌급의조직운영경비보장시스템을 점진적으로 건립한다. 시범 실시의 경험을 종합하고 상응한 정책을 완비하며 농촌 공익사업 일사일의(一事一議) 재정장려제도의 시범실시 범위를 확대하고 중앙과 시범실시지구 성급재정에서는 시범실시에 대한 투자를 증가한다. 향촌의 채무를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청산하고 2010년에는 전국 농촌의무교육채무의 청산을 기본적으로 완성하고 계속하여 농민의 이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농촌 공익성 사업 건설에서 형성된 향촌채무 문제를 해소해 나간다.

- 26. 현급 지역경제의 발전 촉진 재정수입 분배 구조를 조정하여 현과 향 재정에 대한 일반 이전지출을 증가하고 점차 성이하의 재력분배 중에서 현급 재정의 비중을 제고하고 현과 향 재정기본재력보장제도의 건립을 탐구한다. 성이 직접 현(시)재정을 관리하는 체제 개혁을 추진하여 식량, 유료작물, 면화와 돼지의 주요 생산 현을 모두 해당 개혁범위에 포함시킨다. 현의 행정권한 강화 시범 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조건을 구비한 성을 격려하여 선도적으로 행정등급을 낮추도록 권장하며 성에서 직접 현(시)을 관리하는 체제를 모색한다. 법에 근거하여 경제발전이 빠르고 인구 수용능력이 강한 소도시(小城鎮)에 투자심사, 공상관리, 사회치안 등 방면의 행정관리권한을 부여한다. 향진기업의 발전을 지지하고 기술혁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산업의 집결과 업그레이드를 촉진한다.
- 27. 농촌시장 적극 개척 유통기업과 생산기업이 합작하여 지역적인 농촌상품구매연맹의 건립을 지원하고 현대유통방식으로 농촌 일용소비품의 유통망을 건설·개조하며 "농가점"보급 범위를 확대하고 중점적으로 배송율과 통일결산율을 제고하고 농촌소비환경을 개선한다. 농촌 특성에 부합하는 생활소비품과 건축자재의 설계 개발을 장려한다. 2009년에 전국적인 "가전하향(家電下鄉)"을 실시하고 농민이 칼라TV, 냉장고, 휴대폰, 세탁기등 지정된 가전품종을 구매할 경우 국가에서 상품가격의 일부를 직불 보조하며 수요에 의해 새로운 보조대상 제품 품목을 확대한다. 농촌으로 간 가전의 품질을 보장하고 애프터서비스를 잘하도록 한다. 농자재 수급조절을 강화하고 비료생산을 지원하고 비수기의 비축을 증가하고 시장공급을 보장한다. 공소합작사, 우체국, 상업무역기업과 농민전문합작사등을 지원하여 농자재 연쇄경영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농자재신용판매를 실시한다. 여건이구비된 지방을 장려하여 농촌종합서비스센터를 개조 건설하게 한다. 농촌시장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농민을 속이고 해를 끼치는 행위를 엄격이 조사 처리한다.
- 28. 빈민지원 전략 및 정책시스템 완비 개발방식의 빈민지원 방침을 유지하고 농촌의 최저생활보장제도와 빈민지원개발의 효과적인 연결방안을 마련한다. 새로운 빈민지원 표준을 실시하고 농촌에 먹고 입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빈곤인구와 저 수입 인구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빈민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먹고 입는 문제를 해결하여 빈곤에서 벗어나 부유를 실현하며 중점적으로 농촌빈곤인구의 자아발전능력을 제고한다. 계속하여 빈민지원자금의 투자를 증가하고 촌별 총괄개혁의 역량을 확대하고 노동력 이전 훈련 수준을 제고하고 산업화 빈곤지원수준을 제고한다. 우선적으로 혁명지역(老區), 민

족지구, 변강지구에 대한 빈곤지원개발을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이민빈민지원을 안정적으로 실시하고 특수한 유형의 빈곤지역에 대하여 종합관리를 실시한다. 항업의 빈민지원 작용을 충분히 발휘하여 계속하여 사회각계가 빈민지원사업에 참여하도록 동원하고 반빈곤지역 국제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각급의 당위와 정부에서는 농업, 농촌, 농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전체 당과 정부의 모든 사업의 중점중의 중점으로 하고 당이 농촌사업에 대한 지도를 확실하게 강화하고 개 선하며 당의 각 항의 농촌정책을 제대로 실시하도록 확보한다. 농촌 기층에서 과학발전관 활동을 심도 있게 학습 실천 하는 것을 착실하게 전개하고 과학발전관과 정확한 정치업적 관의 요구에 근거하여 식량 생산, 농민수입 증대, 농경지 보호, 환경 관리, 화합 안정을 지방. 특히 현(시) 지도자의 업적성과를 평가하는 중요한 내용으로 하며 신속히 지표를 제 정하여 엄격하게 감독검사를 한다. 촌급 당 조직을 핵심으로 하는 촌급 조직의 부대건설을 실시하고 농촌당의 3급 연속 창조 활동 건설을 심화하며 농촌 당 조직의 설치 방식을 혁신 하고 당이 농촌에서 조직과 사업의 영향력을 확대한다. 건전한 도농일체의 당원동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민공 당원의 교육 관리를 강화한다. 광범위한 선두 쟁취 활동을 전개 한다. 당원의 직무와 책임을 정하고 직무에 의거 공약을 수행한다. 농촌의 당 기율 건설을 강화하고 당의 농촌정책 관철 집행 실시 상황에 대한 감독검사를 실시하며 농민의 이익에 손해를 입히는 문제를 열심히 해결한다. 촌 당 조직의 2추1선(군중추천, 당원추천과 당내 선거). 촌위원회에서 직접 선거하는 제도와 방법을 완비하여 농촌간부의 내원을 늘리고 고 등교육을 받은 졸업생이 촌에서 일하는 것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1촌 1 대학생계획(一村 一名大學生計劃)을 실시하고 장기시스템과 정책대안을 완비한다. 선발육성시스템을 혁신 하고 우수인재를 선발하여 촌지부를 건설한다. 제정된 직책과 사업목표에 따른 대우, 발전 전망. 퇴직보장제도에 근거하여 촌간부의 기본보수를 현지 농촌노동력 평균 수준보다 낮 지 않게 정하고 현실에 근거하여 업적평가장려제도를 수립하고 점차적으로 촌간부의 양로 보장문제를 해결하며 향진 영도간부의 선거, 향진 공무원은 시험을 봐서 채용, 향진 사업 편제임원을 채용하는 것은 우수한 촌급 간부 중에서 채용하는 역량을 확대한다. 농촌당원 간부의 현대 원거리교육과 촌급 조직 활동 장소의 건설을 적극 추진한다. 농촌의 민주법치 건설과 정신문명건설을 강화하고 심도 있게 정무 공개, 촌무 공개와 당무 공개를 추진한 다. 농촌의 사회안정사업을 고도로 중시하고 농촌의 토지징수. 환경오염. 이주민 이전. 집 체자산의 처리와 같은 모순을 초래하는 문제를 잘 처리하며 농촌의 민원처리사업을 잘하 고 농촌사회의 치안종합관리를 잘하며 농촌의 경찰업무 건설을 추진하며 종교를 이용하거나 종교 세력으로 농촌의 공공사무를 간섭하는 것을 반대하고 제지하며 외국의 적대세력이 농촌에 침투하는 것을 엄밀히 방지하고 농촌사회의 화합과 안정을 보장한다.

2009년에 농업농촌사업을 잘 수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우리는 후진타오(胡錦濤)를 총서기로 하는 당 중앙의 주위에서 긴밀히 단결하고 진취적으로 개척하며 착실하게 일하고 어려움에 맞서서 전진하며 농촌개혁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창조하기 위해 분투노력하자!

『식품안전법』전문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9호

『식품안전법』이 2009년 2월 28일 제 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7차 회의를 통과하여 공포하며,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후진타오(胡錦濤) 2009년 2월 28일

제1장 총칙

제2장 식품안전 위험모니터링과 평가

제3장 식품안전 표준

제4장 식품 생산 경영

제5장 식품 검사

제6장 식품 수출입

제7장 식품안전사고 처리

제8장 관리감독

제9장 법률책임

제10장 부칙

제1장 총 칙

제1조 식품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생명 안전과 신체 건강을 보장하기 위하여 본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안에서 아래 각 항의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반드시 본 법을 준수

^{* 2009}년 2월 28일 공포된 《中華人民共和國食品安全法》 전문을 번역하였음.

해야 한다.

- (1)식품 생산·가공(이하 식품생산이라 칭함), 식품 유통 및 요식서비스(이하 식품 경영이라 칭함)
- (2)식품첨가제의 생산・경영
- (3)식품에 사용하는 포장재료, 용기, 세척제, 소독제 및 식품 생산·경영에 사용하는 도구와 설비(이하 식품관련제품이라 칭함)의 생산·경영
- (4)식품 생산·경영자의 식품첨가제 및 식품관련제품 사용
- (5)식품, 식품첨가제 및 식품관련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식용으로 제공되는 1차 농산물(이하 식용농산물이라 칭함)의 품질안전관리는 《중화인민공화국 농산물품질안전법》의 규정을 준수한다. 단, 식용농산물의 품질안전표준을 제정하거나 식용농산물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할 경우 반드시 본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3조 식품 생산·경영자는 법률, 법규 및 식품안전 표준에 의거하여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해야 하며, 사회와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식품안전을 보장하며 사회의 감독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 제4조 국무원의 식품안전위원회를 설립하고, 위원회의 업무와 직책은 국무원 규정에 따른다.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은 식품안전을 종합적으로 조절하는 직무를 맡아 식품안전 위험 평가, 식품안전 표준 제정, 식품안전 정보 공개, 식품검사기구의 자격인증조건과 검사 규범의 제정을 책임지고 식품안전 중대사고의 조사 및 처리를 담당한다. 국무원의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및 관리부문은 본 법과 국무원이 규정한 직책에 의거하여, 식품 생산 및 유통, 요식서비스 활동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실시한다.

제5조 縣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는 해당 행정구역의 식품안전관리감독업무에 대해서 통일적으로 지도, 조직, 협조·책임지며, 건전한 식품안전 전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체계를 수립한다. 식품안전 돌발사건 처리업무를 통일적으로 지도·지휘하고 식품안전 관리감독책임제를 도입하여 식품안전 관리감독부문에 대한 평가와 심사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 법과 국무원의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현의 위생행정, 농업행정,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약품관리감독부문의 식품안전 관리감

독 직무와 책임을 확정한다. 관련기관은 각자의 직무와 책임 범위내에서 해당 행정구역의 식품안전 관리감독 업무를 책임진다.

상부 인민정부 소속기관이 하부 행정구역에 설치한 기구는 해당 행정구역 인민정부의 통일적인 조직 및 협조하에 법에 의거하여 식품안전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한다.

- 제6조 현급 이상 위생행정, 농업행정,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약품 관리감독부문은 교류를 강화하고 긴밀하게 협력하며, 각자의 직무와 책임에 의거하여 업무를 분 담하고 법률에 의거하여 직권을 행사하고 책임진다.
- 제7조 식품협회는 업계 자율성을 강화하고 식품 생산·경영자가 법에 의거하여 생산·경 영활동을 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업계의 신용도를 높이고, 식품안전 지식을 홍보, 보급한다.
- 제8조 국가는 사회단체나 지역자치조직이 식품안전 법률, 법규 및 식품안전 표준과 지식의 보급 업무를 추진하는 것을 장려하고, 건강한 식사 방법을 계몽하며, 소비자의 식품안전 의식과 자아보호 능력을 강화시킨다. 뉴스매체는 식품안전 법률, 법규 및 식품안전 표준과 지식의 선전을 전개하고 본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여론 감독을 실시한다.
- 제9조 국가는 식품안전 관련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를 수행하고, 식품 생산·경영자가 식품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선진 기술과 관리규범을 도입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 제10조 임의의 단체 또는 개인은 식품 생산·경영 과정에서 본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고 발하고 관리부문에 식품안전 정보 공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식품안전 관리 감독 업무에 의견을 제시하고 건의할 수 있다.

제2장 식품안전 위험모니터링과 평가

제11조 국가는 식품안전 위험모니터링제도를 수립하여 식원성 질병, 식품 오염 및 식품 에 함유되어 있는 위해요소들을 모니터링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위생행정부문은 국가 식품안전 위험모니터링 계획에 근거하고 해당 행정구역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해당 행정구역의 식품안전 위험모니터링 방안을 제정, 실시한다.

제12조 국무원의 농업행정,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와 관리감독 등 관련부문은 식품안전

위험도관련 정보를 인지한 경우, 즉시 국무원의 위생행정부문에 통보해야 한다. 국무원의 위생행정부문은 관련부문과 함께 정보에 대해서 확인한 후 즉시 식품안 전 위험모니터링계획을 조정해야 한다.

제13조 국가는 식품안전 위험 평가 제도를 수립하여 식품, 식품첨가제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인 위해요소에 대해서 위험 평가를 진행한다.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은 식품안전 위험 평가 업무를 조직할 책임이 있으며 의학, 농업, 식품, 영양 등 방면의 전문가로 식품안전 위험 평가 전문가위원회를 설립하여 식품안전 위험 평가를 진행한다.

농약, 비료, 성장조절제, 수의약, 사료 및 사료첨가제 등 품목에 대한 안전성 평가에는 식품안전 위험 평가 전문가위원회의 전문가가 참가해야 한다.

식품안전 위험 평가는 반드시 과학적인 방법을 운용하고 식품안전 위험모니터링 정보와 과학적인 데이터 및 관련 정보에 근거하여 진행한다.

- 제14조 국무원의 위생행정부문은 식품안전 위험모니터링 혹은 안전을 위해할 가능성이 있는 식품에 대한 고발을 접수하는 즉시 검사와 식품안전 위험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 제15조 국무원의 농업행정,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및 국가식약품관리감독 등 관련부문은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에 식품안전 위험 평가에 관해 건의하고, 관련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 제16조 식품안전 위험 평가결과는 식품안전 표준의 제정 및 수정과 식품안전에 대한 관리감독 실시의 과학적 근거이다.
 식품안전 위험 평가 결과 식품이 안전하지 않다는 결론이 난 경우 국무원의 품질 감독, 공상행정관리 및 관리감독부문은 각자의 직무와 책임에 의거하여 즉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해당 식품의 생산·경영을 중지시키고 소비자에게도 섭취하지 않도록 알려야 한다. 식품안전과 관련된 국가표준을 제정, 수정할 필요가 있을 시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은 즉시 제정, 수정해야 한다.
- 제17조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은 국무원의 관련부문과 함께 식품안전 위험 평가 결과와 식품안전 관리감독 정보에 근거하여 식품안전 현황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종합적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비교적 높은 위험도를 지니고 있을 것으로 판명된 식품에 대해서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은 즉시 식품안전 위험을 경보해야한다.

제3장 식품안전표준

- 제18조 식품안전표준의 제정은 국민의 신체건강 보장을 취지로 해야 하고 과학적, 합리적이며 안전하고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 제19조 식품안전표준은 강제성 표준으로 식품안전표준외에 식품안전에 관한 기타 강제 성 표준을 제정해서는 아니 된다.
- 제20조 식품안전표준에 포함되는 내용:
 - (1)식품, 식품관련제품중의 병원성 미생물, 농약잔류물, 수의약 잔류물, 중금속, 오염물질 및 기타 인체건강에 해가 되는 물질의 허용치 규정;
 - (2)식품첨가제의 품목, 사용범위, 사용량;
 - (3)영·유아와 기타 특정대상에 공급되는 주·보조식품의 영양성분 요건;
 - (4)식품안전, 영양과 관련된 라벨, 표시 및 설명서에 대한 요건;
 - (5)식품생산·경영과정의 위생요건;
 - (6)식품안전 관련 품질요건;
 - (7)식품검사방법과 규정;
 - (8)식품안전표준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는 기타 내용;
- 제21조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은 식품안전 국가표준의 제정, 공표를 책임지며 국무원 표준 화행정부문은 국가표준 일련번호를 제공한다.

식품 중 농약잔류물, 수의약 잔류물의 한계치 규정 및 그 검사방법과 규정은 국무 원 위생행정부문, 국무원 농업행정부문이 제정한다.

도축용 가축의 검역검사 규정은 국무원 관련 주관부문이 국무원 위생행정부문과 함께 제정한다.

관련 제품의 국가표준이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규정된 내용에 관련이 될 경우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22조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은 현행 식용농산물 품질안전표준, 식품위생표준, 식품품질 표준 및 식품 관련 업계표준 중 강제 시행한 표준을 통합하여 식품안전 국가표준으로 총괄 공표해야 한다.

본 법에서 규정한 식품안전 국가표준을 공표하기 전, 식품생산·경영자는 현행 식용농산물 품질안전표준, 식품위생표준, 식품품질표준 및 식품 관련 업계표준에 의거하여 식품을 생산·경영해야 한다.

제23조 식품안전 국가표준은 식품안전 국가표준 심사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통과되어야 한다. 식품안전 국가표준 심사평가위원회는 의학, 농업, 식품, 영양 등 분야의 전문가와 국무원 관계부문의 대표로 구성된다.

식품안전 국가표준의 제정은 식품안전 위험평가결과에 근거하고 식용농산물의 품질안전 위험평가결과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관련 국제표준과 국제식품안전 위험평가결과를 참조하고 식품생산·경영자와 소비자의 의견을 널리 참고해야 한다.

- 제24조 식품안전 국가표준이 없는 경우 식품안전 지방표준을 제정할 수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위생행정부문은 식품안전 지방표준을 제정하고 본 법의 식품안전 국가표준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해야 하며 국무원 위생행정부 문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 제25조 기업이 생산한 식품이 식품안전 국가표준 또는 지방표준이 없는 경우 기업표준을 제정하여 생산의 근거로 한다. 국가는 식품생산기업이 식품안전 국가표준 또는 지방표준보다 더 엄격한 기업표준을 제정하도록 독려한다. 기업표준은 성급 위생 행정부문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하며 해당 기업에 적용한다.

제26조 식품안전표준은 국민이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제4장 식품 생산·경영

- 제27조 식품생산·경영은 식품안전표준과 아래와 같은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 (1)생산·경영하는 식품품목과 수량에 적절한 식품원료처리 및 식품가공, 포장, 저장 등의 장소가 마련되어야 하며, 해당 장소의 청결을 유지해야 하며 유독, 유해장소 및 기타 오염원과 규정된 거리를 유지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 (2)생산·경영하는 식품품목과 수량에 적절한 생산·경영설비 또는 시설이 마련되어야 하며, 상응한 소독, 탈의, 세면, 채광, 조명, 통풍, 부패방지, 방진, 방충, 방서, 세척 및 폐수처리, 쓰레기와 폐기물의 보관설비 또는 시설이 마련되어야한다;
 - (3)식품안전 전문기술인원, 관리인원과 식품안전을 보장하는 규칙과 제도 마련;
 - (4)설비 배치와 생산공정은 합리적이어야 하고, 가공식품과 직접 먹는 식품, 원재료와 완제품의 교차오염을 방지하고, 식품이 유독 물질과 불결한 물질에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5)식기 및 직접 먹는 식품을 담는 용기는 사용 전 반드시 세척, 소독해야 하고 취사도구, 용구는 사용 후 반드시 깨끗이 세척하여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 (6)식품의 저장, 운송, 하역에 필요한 용기, 도구와 설비는 안전, 무해하여야 하고 청결을 유지하여 식품오염을 방지해야 하며 식품안전 보장에 필요한 온도 등 특수요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식품을 유독, 유해물품과 함께 운송해서는 아니 된다.
- (7)직접 먹는 식품은 소포장 또는 무독하고 청결한 포장재, 식기를 사용해야 한다.
- (8)식품생산·경영자는 개인위생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식품을 생산·경영 시 반드 시 손을 깨끗이 씻고 청결한 작업복과 작업모를 착용해야 한다. 포장이 없는 직접 먹는 식품을 판매할 때는 무독하고 청결한 판매용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 (9)용수(用水)는 국가가 규정한 생활음용수 위생표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10)사용하는 세척제, 소독제는 인체에 안전, 무해한 것이어야 한다.
- (11)법률, 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요건.

제28조 다음 식품의 생산·경영은 금지한다.

- (1)비 식품원료로 생산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제 이외의 화학물질과 기타 인체건강 에 해가 될 수 있는 물질을 첨가한 식품, 또는 회수식품을 원료로 생산한 식품
- (2)병원성 미생물, 농약잔류물, 수의약 잔류물, 중금속, 오염물질 및 기타 인체건 강에 해가 되는 물질함량이 식품안전표준의 한계치를 초과한 식품
- (3)영양성분이 식품안전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영·유아와 기타 특정대상에 공급되는 주·보조식품
- (4)부패되어 변질된 것, 유지(油脂)가 쉬고 부패한 것, 곰팡이·벌레가 생긴 것, 불결한 것, 이물질이 섞여있거나 또는 감각기관에 이상한 느낌을 주는 식품
- (5)병사(病死), 독사(毒死) 혹은 사인이 불명확한 가금, 가축, 짐승, 해양동물 육류 및 그 제품
- (6)동물위생감독기구의 검역을 받지 않았거나 검역부적합의 육류, 또는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에 부적합인 육류제품
- (7)포장재, 용기, 운송도구 등에 의해 오염된 식품
- (8)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 (9)라벨이 없는 포장식품
- (10)질병의 예방 등 특수목적을 위해 국가가 생산·경영 금지를 규정한 식품

(11)식품안전표준 또는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기타 식품

제29조 국가는 식품생산·경영에 대해 허가제도를 실시한다. 식품생산, 식품유통, 요식 서비스에 종사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식품생산허가, 식품유통허가, 요식 서비스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식품생산허가를 취득한 식품생산자가 그 생산장소에서 자체 생산한 식품을 판매할 경우 식품유통허가를 받지 않을 수 있으며, 요식허가를 취득한 요식제공자가 그 요식장소에서 자체 가공한 식품을 판매할 경우 식품생산 및 유통허가를 받지 않을 수 있다. 농민이 자체 생산한 식용농산물을 판매시 식품유통허가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식품을 생산 경영하는 소규모 작업장과 식품노점상이 식품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할 경우 본 법에서 규정한 생산·경영규모, 조건에 적절한 식품안전요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생산 경영하는 식품이 위생, 무독, 무해함을 보장해야 한다. 관련 부문은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하고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본 법에 근거하여 제정한다.

- 제30조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식품생산가공 소규모 작업장이 생산조건을 개선하도록 장려하고 식품노점상이 집중거래시장, 점포 등 고정장소에서 경영하도록 한다.
- 제31조 현급이상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약품관리부문은 《행정허가법》의 규정에 의 거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본 법 제27조 제1항~제4항에서 규정한 관련 자료를 심 사하고 필요시에는 신청인의 생산·경영장소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규정조 건에 부합될 경우 허가를 비준하며 규정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허가를 비준 하지 않으며 그 이유를 서면으로 고지해야 한다.
- 제32조 식품생산·경영기업은 본 업체의 식품안전관리제도를 수립 및 건전히 해야 하고 직원의 식품안전지식에 대한 훈련을 강화하며 전직 또는 겸직의 식품안전관리원을 배치하여 자체 생산 경영 식품에 대한 검사업무를 잘 해야 하며 법에 의거하여 식품생산 경영활동에 종사해야 한다.
- 제33조 국가는 식품생산·경영기업이 양호한 생산규범 요건에 부합하도록 격려하고 식품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실시하여 식품안전 관리수준을 제고하는데 대해 권장한다.

인증기구는 법에 의거하여 양호생산규범,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을 통과한 식품생산·경영기업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하며 인증요건에 부합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에 의거하여 인증을 철회하고 즉시 관련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약품관리부문에 통보하여 사회에 공표해야 한다. 인증기구가 추 적조사 실시 시 비용을 수취하지 않는다.

제34조 식품생산·경영자는 직원의 건강관리제도를 수립 및 실시해야 한다. 이질, 장티푸스, 바이러스성 간염 등 소화기 전염병, 활동성폐결핵, 화농성 또는 출혈성 피부병 등 식품안전에 지장이 되는 질환에 걸린 자는 직접 먹는 식품을 다루는 직종에 근무해서는 아니 된다.

식품생산·경영인원은 해마다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건강증명 취득 후 근무가 가능하다.

제35조 식용농산물 생산자는 식품안전표준과 국가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농약, 비료, 성 장조절제, 수의약, 사료와 사료첨가제 등 농업투입물을 사용해야 한다. 식용농산 물의 생산기업과 농민전문협력경제조직은 식용농산물의 생산기록제도를 수립해 야 한다.

> 현급이상 농업행정부문은 농업투입물 사용에 대한 관리 및 지도를 강화해야 하고 건전한 농업투입물의 안전사용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제36조 식품생산자가 식품원료, 식품첨가제, 식품관련제품을 구입 시 공급자의 허가증과 제품합격증명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합격증명서류를 제공할 수 없는 식품원료에 대해서는 식품안전표준에 의거하여 검사해야 하며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원료, 식품첨가제, 식품관련제품을 구입 또는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식품생산기업은 식품원료, 식품첨가제, 식품관련제품 구입검사 기록제도를 수립 해야 하며 식품원료, 식품첨가제, 식품관련제품의 명칭, 규격, 수량, 공급자 이름 및 연락처, 구입일자 등 내용을 사실대로 기록한다.

식품원료, 식품첨가제, 식품관련제품 구입검사기록은 사실에 부합되어야 하며 보관기한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 제37조 식품생산기업은 식품출하 검사기록제도를 수립하여 출하식품의 검사합격증과 안 전현황을 검사해야 하며 식품의 명칭, 규격, 수량, 생산일자, 생산일련번호, 검사합격증번호, 구입자 이름 및 연락처, 판매일자 등 내용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식품출하 검사기록은 사실에 부합되어야 하며 보관기한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 제38조 식품, 식품첨가제와 식품관련제품의 생산자는 식품안전표준에 의거하여 자체 생산한 식품, 식품첨가제와 식품관련제품에 대해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검사 합격

- 후 출하 또는 판매가능하다.
- 제39조 식품경영자는 식품 구입 시 공급자의 허가증과 식품합격증명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식품경영기업은 식품구입 검사기록제도를 수립해야 하며 식품 명칭, 규격, 수량, 생산일련번호, 유통기한, 공급자 이름 및 연락처, 구입일자 등의 내용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 제40조 식품구입 검사기록은 사실에 부합되어야 하며 보관기한은 2년이상이어야 한다. 총괄배송의 운영방식을 실시하는 식품경영기업은 기업본부에서 공급자의 허가증과 식품합격증명서류를 총괄 검사하며 식품구입검사기록을 실시한다. 식품경영자는 식품안전보증의 요건에 의거하여 식품을 저장해야 하고 재고식품을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하며 변질 또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 제41조 식품경영자가 낱개 포장식품 저장 시에는 저장장소에 식품의 명칭, 생산일자, 유통기한, 생산자 명칭 및 연락처 등의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식품경영자가 낱개 포장식품을 판매할 경우 낱개 포장식품의 용기, 외포장에 식품의 명칭, 생산일자, 유통기한, 생산·경영자 명칭 및 연락처 등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 제42조 사전포장식품(prepackage foods)의 포장에는 라벨이 부착되어야 하며 라벨에는 아래 사항을 표기해야 한다:
 - (1) 명칭, 규격, 순수함량, 생산일자;
 - (2)성분 또는 원료배합표;
 - (3)생산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 (4)유통기한;
 - (5)제품표준코드;
 - (6)보관 조건;
 - (7)사용한 식품첨가제의 국가표준에서의 통용명칭;
 - (8)생산허가증번호;
 - (9)법률, 법규 또는 식품안전표준에서 규정한 필히 표기해야 할 기타 사항; 영·유아와 기타 특정대상에 공급되는 주·보조식품의 라벨에는 주요영양성분 및 그 함량도 표기해야 한다.
- 제43조 국가는 식품첨가물의 생산에 대해 허가제도를 실시한다. 식품첨가물 생산허가 신

- 청의 조건, 절차는 국가의 공업제품 생산허가증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 제44조 새로운 식품원료를 사용하여 식품생산에 종사하거나 식품첨가제 신품종, 식품관 련제품의 신품종 생산활동에 종사할 것을 신청하는 업체나 개인은 국무원 위생행 정부문에 관련 제품의 안전성 평가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은 신청접수일로부터 60일내에 관련 제품의 안전성 평가자료에 대해 심사해야 한다. 식품안전 요건에 부합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비준 및 공표하며 식품안전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비준불가를 결정하고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한다.
- 제45조 식품첨가제는 기술상 필요하고 위험평가를 통해 안전성과 확실성이 증명되면 허가받은 사용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은 기술필요성과 식품 안전 위험평가결과에 근거하여 적기에 식품첨가제의 품종, 사용범위, 사용량 표준에 대해 개정해야 한다.
- 제46조 식품생산자는 식품안전표준에 규정된 식품첨가제의 품종, 사용범위, 사용량에 의 거하여 식품첨가제를 사용해야 하며 식품생산과정에 식품첨가제외의 화학물질 및 기타 인체건강에 해가 되는 물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47조 식품첨가제는 라벨, 설명서와 포장이 있어야 하며 라벨, 설명서에는 본 법 제42조 (1)~(6), (8)~(9)항에서 규정한 내용 및 식품첨가제의 사용범위, 사용량, 사용방법을 표기해야 하며 라벨에 문자로 "식품첨가제"라 표기해야 한다.
- 제48조 식품과 식품첨가제의 라벨, 설명서에는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질병예방, 치료기능에 관련된 용어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생산자는 라벨, 설명서에 표기된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진다. 식품과 식품첨가제의 라벨, 설명서는 반드시 뚜렷해야 하며 식별이 용이해야 한다. 해당 라벨, 설명서에 표기된 내용과 부합하지 않은 식품과 식품첨가제는 출시 및판매해서는 아니된다.
- 제49조 식품경영자는 식품라벨에 표시된 경고표시, 경고설명 또는 주의사항의 요건에 의거하여 포장식품을 판매해야 한다.
- 제50조 생산·경영하는 식품에 약품을 첨가해서는 아니 된다. 단, 전통에 의거하여 식품 인 동시에 한약재인 물질은 첨가할 수 있다. 전통에 의거하여 식품인 동시에 한약 재인 물질의 목록은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이 제정 및 공포한다.
- 제51조 국가는 특정 보건기능을 주장하는 식품에 대해 엄격한 관리감독을 실시한다. 관련 관리감독부문은 법에 의거하여 직책을 이행하고 책임져야 하며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국무원 규정에 따른다.

특정 보건기능을 주장하는 식품은 인체에 급성, 이급성 또는 만성위해를 초래해서는 아니 되고 해당 라벨, 설명서에 질병예방, 치료기능에 관련된 내용을 표기해서는 아니 되며 내용은 반드시 사실에 부합되고 적절한 대상, 부적절한 대상, 효능성분 또는 대표성분 및 그 함량 등을 표기해야 한다. 제품의 기능과 성분은 반드시 라벨, 설명서에 표기된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제52조 집중 교역시장의 개설기업, 판매대 대여업무 경영기업, 전시회 개최기업은 시장 진입 식품경영자의 허가증을 심사해야 하고 시장진입 식품경영자의 식품안전 관 리책임을 명확히 해야 하며 시장진입 식품경영자의 경영환경, 조건에 대해 정기 적인 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식품경영자가 본 법을 위반한 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제지하고 소재지 현급 공상행정관리 또는 식약품관리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집중 교역시장의 개설기업, 판매대 대여업무 경영기업, 전시회 개최기업이 윗 조 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본 시장에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제53조 국가는 식품리콜제도를 수립한다. 식품생산자는 자체 생산한 식품이 식품안전표 준에 부합되지 않음을 발견했을 경우 즉시 생산을 멈추고 이미 출시 판매된 식품을 리콜하고 관련 생산·경영자 및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리콜 및 통지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식품경영자는 자체 경영하는 식품이 식품안전표준에 부합되지 않음을 발견했을 경우 즉시 경영을 정지해야 하며 관련 생산·경영자 및 소비자에게 통보하고 경영 정지 및 통지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식품생산자가 리콜해야 한다고 인정할 경우 즉시 리콜해야 한다.

식품생산자는 리콜한 식품에 대해 보완, 무해화처리, 폐기 등 조치를 취해야 하고 식품리콜 및 처리현황을 현급이상 품질감독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식품생산·경영자가 본 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리콜하지 않았거나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에 대한 경영을 정지하지 않았을 경우 현급이상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약품관리부문은 리콜 또는 경영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제54조 식품광고 내용은 반드시 진실하고 합법적이어야 하며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을 포함해서는 아니 되며 질병예방, 치료기능에 관련된 용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식품안전관리감독부문 또는 식품검사직책을 맡은 기구, 식품협회, 소비자협회는 광고 또는 기타 형식으로 소비자에게 식품을 추천해서는 아니 된다.

제55조 사회단체 또는 기타 조직, 개인이 허위광고에서 소비자에게 식품을 추천하여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보게 하였을 경우, 식품생산·경영자와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제56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식품 규모화생산, 연계경영·배송을 권장한다.

제5장 식품검사

- 제57조 식품검사기구는 국가 관련 인증인가규정에 의거하여 자격인증을 취득 후 식품검 사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식품검사기구의 자격인증조건과 검사규범은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이 규정한다. 본 법 실시 전 국무원의 관련주요부문의 비준으로 설립 또는 법에 의거하여 인증된 식품검사기구는 본 법에 의거하여 계속하여 식품검사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 제58조 식품검사는 식품검사기구가 지정한 검사원이 독자적으로 실시한다. 검사원은 관련 법률, 법규, 식품안전표준과 검사규범에 의거하여 식품에 대한 검 사업무를 전개해야 하며 과학을 존중하고 직업윤리를 충실히 지키며 발급한 검사 데이터, 결론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보장해야 하고 가짜 검사보고서를 발급해서 는 아니 된다.
- 제59조 식품검사는 식품검사기구와 검사원 책임제를 실시한다. 검사보고서에는 식품검 사기구의 공인을 날인해야 하고 검사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식품검 사기구와 검사원은 발급한 검사보고서에 대해 책임진다.
- 제60조 식품안전관리감독부문은 식품에 대해 검사면제를 실시해서는 아니 된다. 현급 이상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약품관리부문은 식품에 대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인 표본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표본검사 시 추출한 샘플을 구입해야 하며 검사비와 기타 임의 비용을 수취하지 않는다.

현급 이상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약품관리부문이 법 집행 과정에서 식품검사가 필요한 경우 본 법의 규정에 부합되는 식품검사기구에 의뢰하고 관련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검사결론에 이의가 있을 경우 법에 의거하여 재검사를 실시할수 있다.

제61조 식품생산·경영자가 식품검사기구에 자체 생산·경영하는 식품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경우 본 법의 규정에 부합되는 식품검사기구에 식품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식품협회 등 조직, 소비자가 식품검사기구에 식품검사를 의뢰할 필요가 있을 경 우 본 법의 규정에 부합되는 식품검사기구에 의뢰해야 한다.

제6장 식품수출입

- 제62조 수입 식품, 식품첨가제 및 식품관련제품은 중국의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되어 야 한다.
 - 수입식품은 출입경검험검역기구의 검사에 합격 후 세관이 출입경검험검역기구가 서명 발급한 통관증명에 근거하여 통과시킨다.
- 제63조 식품안전 국가표준이 없는 식품 또는 처음으로 수입되는 식품첨가제 신품종, 식품관련제품의 신품종에 대해 수입상은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에 신청을 제출하고 관련 안전평가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은 본 법의 제4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적시에 상응한 식품안전 국가표준을 제정해야 한다.
- 제64조 외국에서 발생한 식품안전사고가 중국 국내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수입식품에서 심각한 식품안전문제를 발견했을 경우, 국가출입경검험검역부문은 즉시 위험조기경보 또는 통제조치를 취하고 국무원 위생행정, 농업행정, 공상행 정관리와 관리부문에 통보해야 한다. 통보를 받은 각 부문은 즉시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65조 중국에 식품을 수출하는 수출상 또는 대리상은 국가출입경검험검역부문에 등록 해야 하며, 중국에 식품을 수출하는 국외 식품생산기업은 국가출입경검험검역부 문에 등록해야 한다.
 - 국가출입경검험검역부문은 등록한 수출상, 대리상과 국외 식품생산기업명단을 정기적으로 공표해야 한다.
- 제66조 수입포장식품은 중문 라벨, 중문 설명서가 있어야 한다. 라벨 및 설명서는 본 법 및 중국의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와 식품안전 국가표준의 요건에 부합해야 하며 식품 원산지 및 국내 대리상 명칭, 주소, 연락처를 표기해야 한다. 포장식품에 중문 라벨, 중문 설명서가 없거나 또는 라벨 및 설명서가 본 조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수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67조 수입상은 식품 수입 및 판매기록제도를 수립하고 식품의 명칭, 규격, 수량, 생산 일자, 생산 또는 수입 일련번호, 유통기한, 수출상과 구매상 명칭 및 연락방식, 납품일자 등 내용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식품의 수입 및 판매기록은 사실에 부합되어야 하고 보관기한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68조 수출식품은 출입경검험검역기구에서 감독, 표본검사를 실시하며 세관은 출입경 검험검역기구가 서명 발급한 통관증명에 근거하여 통관을 허용한다. 수출식품생산기업과 수출식품 원료재배, 양식장은 국가출입경검험검역부문에 등 록해야 한다.

제69조 국가출입경검험검역부문은 수출입식품의 안전정보를 수집, 총괄하고 제때에 관련 부문, 기구와 기업에 통보해야 한다.

국가출입경검험검역부문은 수출입식품의 수입상, 수출상과 수출식품 생산기업의 신용기록을 수립하여 이를 공표해야 한다. 불량기록의 수입상, 수출상과 수출식 품 생산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수출입식품에 대한 검험검역을 강화해야 한다.

제7장 식품안전사고조치

제70조 국무원은 국가식품안전사고 응급방지책을 조직 제정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관련 법률 법규과 상급 인민정부의 식품안전사고 응급 방지책 및 본 지역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해당 행정구역의 식품안전사고 응급방 지책을 제정하고 한 급 높은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식품생산·경영기업은 식품안전사고 처리방안을 제정하고 정기적으로 본 기업의 제반 안전방지조치의 실행상황을 검사하며 제때에 사고 위험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제71조 식품안전사고 발생업체는 즉시 조치하여 사고의 확대를 방지해야 한다. 사고발생 업체와 피해자의 치료를 맡은 업체는 즉시 사고발생지의 현급 위생행정부문에 보 고해야 한다.

농업행정,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약품관리부문은 일상적인 관리감독과정에서 식품안전사고를 발견했거나 또는 식품안전사고 관련 신고를 접수했을 경우 즉시 위생행정부문에 통보해야 한다.

중대한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고를 받은 현급 위생행정부문은 규정

- 에 의거하여 본급 인민정부와 상급 인민정부 위생행정부문에 보고해야 하며 현급 인민정부와 상급 인민정부 위생행정부문은 규정에 의거하여 위에 보고해야 한다. 어떠한 업체나 개인이든 식품안전사고에 대해 숨기거나 허위보고, 지연보고를 해 서는 아니 되며 관련 증거를 인멸해서는 아니 된다.
- 제72조 현급 이상 위생행정부문은 식품안전사고 보고 접수 후 즉시 농업행정,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약품관리감독과 함께 조사처리하고 아래 조치를 취하여 사회에 대한 위해요소를 방지하거나 줄여야 한다:
 - (1) 응급구조사업을 전개하고 식품안전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인원에 대해 위생 행정부문은 즉시 응급치료를 실시해야 한다.
 - (2)식품안전사고 초래가능성이 있는 식품 및 해당 원료를 봉인하여 저장하고 즉시 검사를 실시한다. 오염된 식품 및 해당 원료에 대해서는 식품생산·경영자에게 본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리콜, 경영정지 및 폐기할 것을 명한다.
 - (3)오염된 식품용 도구와 설비를 봉인하여 저장하고 소독 세척하도록 명한다.
 - (4)정보 공개사업을 제대로 실시하고 법에 의거하여 식품안전사고 및 해당 처리 현황에 대해 발표하며 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해요소에 대해 해석 및 설명한다. 중대한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즉시 식품안전사 고처리지휘기구를 설립하고 응급방지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앞 조항 규정에 의거 하여 처리해야 한다.
- 제73조 중대한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할 시 시급이상 인민정부 위생행정부문은 즉시 관련 부문과 함께 사고책임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부서의 직책 이행을 독촉하며 본급 인민정부에 사고책임조사 처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대한 식품안전사고가 2개 이상의 성, 자치구, 직할시에 관련될 경우,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이 앞 조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고책임조사를 실시한다.
- 제74조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현급 이상 질병예방통제기구는 위생행정부문과 관련 부문을 협조하여 사고현장에 대해 위생처리를 해야 하며 식품안전사고와 관련한 원인에 대해 유행병학조사를 전개한다.
- 제75조 식품안전사고 조사 시, 사고업체의 책임을 조사하는 것 외에 관리감독과 인증직 책을 담당한 관리감독부문, 인증기구 업무인원의 직무상 과실, 독직상황에 대해 서도 조사해야 한다.

제8장 관리감독

- 제76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 급 위생행정, 농업행정,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약품관리부문이 해당 행정구역의 식품안전 연도관리감독계획을 제정하도록 조 직하며 연도계획에 의거하여 업무를 전개한다.
- 제77조 현급 이상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약품관리감독은 각자의 식품안전 관리감독 직책을 이행하고 아래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
 - (1)생산·경영장소에 대한 실사를 실시한다.
 - (2)생산·경영되는 식품에 대해 표본검사를 실시한다.
 - (3)관련 계약서, 어음, 장부 및 기타 관련 자료를 검열, 복사한다.
 - (4)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증거가 있는 식품, 불법으로 사용한 식품원료, 식품첨가제, 식품관련제품, 위법생산 경영에 사용 또는 오염된 도구, 설비를 차압. 압류한다.
 - (5)불법종사의 식품생산·경영활동 장소를 차압한다.
 - 현급 이상 농업행정부문은 《농산물품질안전법》에 규정된 직책에 의거하여 식용 농산물을 관리감독한다.
- 제78조 현급 이상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약품관리부문은 식품생산·경영자에 대해 감독검사하며 감독검사현황과 처리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감독검사기록은 감독 검사원과 식품생산·경영자가 서명 후 분류하여 보존해야 한다.
- 제79조 현급 이상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약품관리부문은 식품생산·경영자 식품안 전신용기록부를 수립하여 허가발급, 일상 감독검사결과,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처리 등 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식품안전신용기록부의 기록에 근거하여 신용불량기록의 생산·경영자에 대한 감독검사 횟수를 늘인다.
- 제80조 현급 이상 위생행정,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약품관리부문은 조회, 신고와 고발 접수 후 본 부문 직책범위에 속하는 내용은 수리해야 하고 즉시 답변, 확인, 처리해야 한다. 본 부문 직책범위에 속하지 않는 내용은 처리권이 있는 부문에 서면으로 통지함과 동시에 인계하여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처리권이 있는 부문은 즉시 처리해야 하고 책임을 전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품안전사고에 속할 경우 제7장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 제81조 현급 이상 위생행정,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약품관리부문은 법적 권한과 절

차에 의거하여 식품안전 관리감독직책을 이행해야 한다. 생산·경영자의 동일 위법행위에 대하여 2차 이상의 벌금 행정처벌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범죄를 구성한 혐의가 있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공안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 제82조 국가는 식품안전정보 총괄 공표제도를 수립한다. 아래 정보는 국무원 위생행정부 문이 총괄 공표한다:
 - (1)국가 식품안전 총 현황
 - (2)식품안전 위험평가정보와 식품안전 위험경고정보
 - (3)중대 식품안전사고 및 해당 처리 정보
 - (4)기타 중요한 식품안전정보와 국무원에서 확정한 총괄 공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2), (3)에 규정된 정보의 영향이 특정지역에 한정될 경우 관련 성, 자치구, 직할 시 인민정부 위생행정부문이 공표할 수도 있다. 현급 이상 농업행정,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약품관리부문은 각자의 직책에 의거하여 식품안전 일상 관리감독 정보를 공표한다.

식품안전관리감독부문은 정보 공표 시에 정확성, 적시성, 객관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83조 현급이상 지방위생행정, 농업행정,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약품관리부문은 본 방법 제82조 (1)에 규정된 총괄 공표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인지한 경우 상급 주관부문에 보고해야 하며 상급 주관부문은 즉시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에 보고한다. 필요시에는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에 직접 보고할 수 있다.

현급이상 위생행정, 농업행정,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약품관리부문은 보유 한 식품안전정보를 서로 통보해야 한다.

제9장 법률책임

제84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허가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식품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식품첨가제를 생산한 경우, 관련 주관부서에서 각자의 직책에 의거하여 업무를 분담하고 위법소득, 위법생산·경영된 식품, 식품첨가제와 이에 사용된 도구, 설비, 원료 등 물품을 몰수한다. 위법생산·경영된 식품, 식품첨가제의 가치금액이 1만 위안 미만일 경우 2천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품가치금액이 1만 위안 이상일 경우 가치금액의 5배 이상 10배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85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관련 주관부서에서 각자의 직책에 의거하여 업무를 분담하고 위법소득, 위법생산·경영된 식품과 이에 사용된 도구, 설비, 원료 등 물품을 몰수한다. 위법생산·경영된 제품가치금액이 1만 위안 미만일 경우 2천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품가치금액이 1만 위안 이상일 경우 가치금액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허가증을 말소한다.
 - (1)비식품원료를 사용하여 식품을 생산하거나 또는 식품에 식품첨가제이외의 화학물질 및 기타 인체건강에 해가 될 수 있는 물질을 첨가하거나 또는 회수식품을 원료로 식품을 생산
 - (2)병원성 미생물, 농약잔류물, 수의약 잔류물, 중금속, 오염물질 및 기타 인체건강에 해가 되는 물질함량이 식품안전표준의 한계치를 초과한 식품을 생산 경영
 - (3)영양성분이 식품안전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영·유아와 기타 특정대상에 공급되는 주·보조식품을 생산 경영
 - (4)부패되어 변질된 것, 유지(油脂)가 쉬고 부패한 것, 곰팡이·벌레가 생긴 것, 불결한 것, 이물질 또는 가짜를 섞었거나 또는 감각기관에 이상한 느낌을 주는 식품 경영
 - (5)병사(病死), 독사(毒死) 혹은 사인이 불명확한 가금, 가축, 짐승, 해양동물 육류 경영 또는 그 제품을 생산 경영
 - (6)동물위생감독기구의 검역을 받지 않았거나 또는 검역부적합의 육류 경영 또는 그 제품을 생산 경영
 - (7)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경영
 - (8)국가가 질병 예방 등 특수목적을 위해 생산 경영을 금지한 식품을 생산 경영
 - (9)안정성 평가를 받지 않고 새로운 식품원료를 사용하여 식품생산에 종사하거나 또는 식품첨가제가 신품종, 식품관련제품의 신품종의 생산에 종사
 - (10)관련 주관부문이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에 대해 리콜 또는 경영 정지를 명한 후에도 해당 식품생산·경영자가 여전히 리콜 또는 경영정지를 거 부할 경우
- 제86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관련 주관부서에서 각자의 직책에 의거하여 업무를 분담하고 위법소득, 위법생산·경영된 식품과 이에 사용된 도구, 설비, 원료 등 물품을 몰수한다. 위법생산·경영된 제품가치금액

- 이 1만 위안 미만일 경우 2천 위안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품가치금액이 1만 위안 이상일 경우 가치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황이 엄중할 경우 생산정지, 영업정지를 명하며 허가증을 말소한다.
- (1)포장재, 용기, 운반도구 등에 의해 오염된 식품 경영
- (2)라벨이 없는 포장식품, 식품첨가제 또는 라벨, 설명서가 본 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 식품첨가제를 생산 경영
- (3)식품생산자가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원료, 식품첨가제, 식품관련 제품을 구입, 사용
- (4)식품생산·경영자가 식품에 약품 첨가
- 제87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관련 주관부서에서 각자의 직책에 의거하여 업무를 분담하고 즉시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준다. 시정을 거부할 경우 2천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생산정지, 영업정지를 명하고 허가증을 말소한다.
 - (1)구입한 식품원료와 생산한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관련제품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2)검사기록제도, 출하검사기록제도를 수립하지 않거나 준수하지 않은 경우
 - (3)식품안전기업표준을 제정하고 본 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등록하지 않은 경우
 - (4)규정한 요건에 따르지 않고 식품을 저장, 판매하거나 재고식품을 처리한 경우
 - (5)구입시 허가증과 관련 증명서류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 (6)생산한 식품, 식품첨가제의 라벨, 포장, 설명서에 질병예방, 치료기능 관련 용 어 사용
 - (7)본 법 제34조에 열거된 질병에 걸린 인원을 직접 먹는 식품과 접촉하는 업무에 배치한 경우
- 제88조 본 법의 규정을 어기고 사고업체가 식품안전사고 발생 후 처리 및 보고하지 않은 경우 관련 주관부서에서 각자의 직책에 의거하여 업무를 분담하고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준다. 관련 증거를 인멸할 경우 생산정지, 영업정지를 명하고 2천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 원 증서발급부서에서 허가증을 말소한다.
- 제89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1)중국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 수입

- (2)식품안전 국가표준이 없는 식품을 수입하거나 또는 식품첨가제 신품종, 식품 관련제품의 신품종을 처음 수입 시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않은 경우
- (3)수출상이 본 법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식품을 수출한 경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수입상이 식품수입 및 판매기록제도를 수립 및 준수하 지 않은 경우, 본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 제90조 집중 교역시장의 개설기업, 판매대 대여업무 경영기업, 전시회 개최기업이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허가를 받지 못한 경영자가 시장에 진입하여 식품을 판매하도록 허가했거나 또는 검사, 보고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관련 주관부문에서 각자의 직책에 의거하여 업무를 분담하고 2천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심각한 결과 초래 시 영업정지를 명하고 원 증서발급부서에서 허가증을 말소한다.
- 제91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요구에 따르지 않고 식품을 운송할 경우, 관련 주관부문에서 각자의 직책에 의거하여 업무를 분담하고 즉시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주며, 시정을 거부할 경우 영업정지 시정을 명하고 2천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원 증서발급부서에서 법에 의거하여 허가증을 말소한다.
- 제92조 식품생산, 식품 유통 및 요식서비스 허가증을 취소당한 업체는 처벌 결정이 내려 진 날부터 향후 5년간 식품 생산·경영관리업종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식품 생산·경영자가 식품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되는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했을 경우 해당 허가 증명서 발급기관에서 해당 업체의 허가 증명을 취소한 다.
- 제93조 식품검사기구, 식품검사원이 본 법의 규정을 어기고 허위 검사보고서를 작성 발행한 경우 해당 자격을 부여받은 주관부문 또는 기구에서 동 검사기구의 검사자격을 취소한다. 법에 의거하여 검사기구의 직접 책임을 진 주관인원과 식품검사원에 대해 면직 또는 해고 처분을 내린다.

본 법의 규정을 어기고 형사책임이나 해고처분을 받은 식품검사기구 인원은 형벌 집행기간 완료 또는 처분결정일로부터 10년간 식품검사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된다. 식품검사기구에서 식품검사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인원을 고용할 경우, 해당 자격을 부여받은 주관부서 또는 기구에서 동 검사기구의 검사자격을 취소한다.

제94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광고에서 식품품질에 대해 허위홍보하여 소비자를 속일

경우 《광고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식품안전관리감독부문 또는 식품검사직책을 담당한 기구, 식품협회, 소비자협회가 본 법의 규정을 어기고 광고 또는 기타 형식으로 소비자에게 식품을 추천할경우, 주관부문에서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법에 의거하여 직접 책임을 진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에 대해 중과실로 기록에 남기거나 유급 또는 면직처분을 내린다.

제95조 본 법의 규정을 어기고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가 식품안전 관리감독과정에서 직책을 이행하지 않아 해당 행정구역내에서 중대한 식품안전사고가 발생되고 심 각한 사회영향을 초래하였을 경우, 법에 의거하여 주요 담당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이 있는 주요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이 있는 인원에 대해 중과실로 기록에 남기거나 유급, 면직 또는 해고처분을 내린다.

본 법의 규정을 어기고 현급 이상 위생행정, 농업행정,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약품관리부문 또는 기타 행정부문이 본 법에서 규정한 직책을 이행하지 않거나 직권 남용, 직무를 소홀히 하고,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부정을 초래할 경우법에 의거하여 직접 책임을 진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에 대해 중과실로기록에 남기거나 유급처분을 내린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 면직 또는 해고처분을 내리며 해당 주요책임자는 인책 사직하도록 한다.

제96조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신체, 재산 또는 기타 손해를 초래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을 생산하거나 또는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임을 알면서 판매할 경우, 소비자는 손해배상 요구 외에 생산자 또는 판매자에게 제품가격의 10배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요구할 수도 있다.

제97조 본 법의 규정을 어길 경우 민사배상책임과 과료, 벌금 부과책임을 져야 하며 그 재산이 동시 지불하기에 부족할 경우 우선 민사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98조 본 법의 규정을 어기고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10장 부칙

제99조 본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식품: 사람에게 제공되는 식용 또는 음용의 완제품과 원료 및 전통에 의거하여 식품이면서

- 약품인 물품, 단 치료를 목적으로 한 물품은 불포함.
- 식품안전: 식품이 무독, 무해하고 정해진 영양요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인체건강에 어떠한 급성. 아급성 또는 만성위해를 초래하지 않음을 말한다.
- 사전포장식품: prepackage foods, 미리 정량으로 포장되었거나 포장재와 용기내에 제조 된 식품을 말한다.
- 식품첨가제: 식품의 품질과 색, 향, 맛을 개선하고 부패방지와 신선도 보장 및 가공공법의 수요로 식품에 첨가한 인공합성 또는 천연물질을 말한다.
- 식품포장재와 용기: 식품 또는 식품첨가제를 담거나 포장하는 종이, 대, 나무, 금속, 법랑, 도자기, 플라스틱, 고무, 천연섬유, 화학섬유, 유리 등 제품과 식품 또는 식품첨가제에 직접 접촉되는 도료를 말한다.
- 식품용 도구, 설비: 식품 또는 식품첨가제의 생산, 유통, 사용 과정 중 식품 또는 식품첨가 제와 직접 접촉하는 기계, 파이프, 컨베이어 벨트, 용기, 도구, 식기 등을 말한다.
- 식품용 세척제, 소독제: 식품, 식기 및 직접 식품과 접촉하는 도구, 설비 또는 식품포장재 와 용기를 직접 세척하거나 소독하는데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 유통기한: 포장식품의 라벨에 표시한 저장조건하에 품질을 보존하는 기한을 말한다.
- 식이성 질병: 식품 중 발병 요인이 인체에 들어와 초래하는 감염성, 중독성 등 질병을 말한다.
- 식중독: 유독 유해물질에 오염된 식품 또는 유독 유해물질을 함유한 식품을 섭취 후 나타 난 급성, 아급성 질병을 말한다.
- 식품안전사고: 식중독, 식이성 질병, 식품오염 등 식품에서 오는 인체건강에 해가 되거나 해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고를 말한다.
- 제100조 식품생산·경영자가 본 법 시행 전에 이미 관련 허가증을 취득했을 경우 해당 허가증은 유효하다.
- 제101조 우유제품, 유전자 변형 식품(GMO), 돼지도축, 주류와 식염의 식품안전관리는 본 법을 적용하며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 제102조 철도 운영 중의 식품안전 관리방법은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이 국무원 관계부문과 함께 본 법에 의거하여 제정한다.
 - 군용식품과 자급식품의 식품안전관리방법은 중앙군사위원회에서 본 법에 의거하여 제정한다.
- 제103조 국무원은 실제수요에 근거하여 식품안전 관리감독체제에 대해 조정할 수 있다.
- 제104조 본 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이와 동시에 《식품위생법》은 폐지된다.

《전국 토지이용 총계획 요강》 (2006-2020)

머리말

- 중국에서는 과학발전관을 철저히 관철하고 합리적으로 토지를 이용하여 경지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 정책을 구체화시키고 있음. 또한 토지자원의 개발, 이용 및 보호를 총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더욱 더 촉진시키기 위하여 『토지관리법』 등의 법규와 국가 토지이용 관련 방침인 《전국 토지이용 총계획 요강(1997~2010년)》에 기초하여 《전국 토지이용 총계획 요강(2006~2020년》을 제정하였음.(이하 《요강》이라 칭합.)
- 《요강》은 주로 계획기간 내의 국가 토지이용에 대한 전략을 서술하고 있으며, 정부의 토지이용 관리 목표, 임무, 정책을 명확히 하고 있음. 또한 전 사회적으로 토지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보호하도록 하고 있음.
 - ≪요강≫은 가장 엄격한 토지관리제도로서 강제성 문건에 해당하며, 토지의 거시적 조정과 토지 용도의 통제, 도시와 농촌 건설계획의 실행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요강≫은 2005년에 시작되어 2020년에 종료되며 계획 범위에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와 대만은 제외됨.

1. 토지이용

1.1 토지이용 현황

^{*《}全國土地利用總體規劃綱要(2006~2020年)》중 농업관련 부분을 발췌하여 번역, 정리하였음.

- 전국 토지이용 변경조사에 따르면 2005년 말 현재 전국 농업용지 면적은 65,704.7만 ha, 건설용지 면적은 3,192.2만 ha이며 나머지는 이용하지 않는 면적임. 농업용지 중, 경지 면적은 12,208.3만 ha, 과수원 면적은 1,154.9만 ha, 임지 면적은 23,574.1만 ha, 목초지 면적은 26,214.4만 ha, 기타 농업용지 면적은 2,553.1만 ha 임. 건설용지 중, 거주지구 및 광공업용지 면적은 2,601.5만 ha, 교통운수용지 면적은 230.9만 ha, 수리시설용지 면적은 359,9만 ha임.
- 당 중앙 및 국무원은 토지이용 및 관리를 매우 중시하여 《전국 토지이용 총계획 요 강(1997~2010년)》을 비준, 실시해온 이래 토지 거시조정 및 관리를 강화하는 일련 의 정책 조치의 제정과 실시를 통해 토지용도관리제도가 점차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
 - 농업용지 중 경지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어 비농업 건설에 사용되는 경지 면적이 점차 감소하고 있음. 1997~2005년 전국 비농업 건설에 사용된 경지 면적은 20.4만 ha를 차지했음. 이는 1991~1996년 29.4만 ha에 비해 31% 감소한 수치임.
 - 건설용지의 절약적·집약적 이용 또한 점차 제고되어 경제부문 각 사업의 발전에 필요한 용지를 보장할 수 있게 되었음. 기관 건설용지의 ha당 총생산액은 1996년 19.6만 위안에서 2005년 50만 위안으로 1.5배 증가하였음.
 - 토지정리 및 개간 사업이 확대되어 농지점용과 농지보충이 균형을 이루었음. 1997~2005년 동안 국가투자를 통한 토지개발 및 정리 중점 대상은 2,259개였으며, 각 성(자치구·직할시)에서 지정한 토지개발 및 정리 항목은 2만여 개에 달했음. 전국적으로 보충경지는 227.6만 ha, 연평균 보충경지는 25.29만 ha에 달했음.
 - 국토종합관리가 점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토지생태환경 또한 점차 개선되고 있음. 1997∼2005년 동안 전국 퇴경환림면적은 686.3만 ha에 달했고 사막면적은 19.5만 ha로 감소했으며, 흙이 드러난 토지면적 또한 5.01만 ha로 감소했음.
- 《요강》의 효과적인 실시는 국가식량안전과 국민경제의 안정 및 빠른 발전을 촉진 시키는 동시에 생태환경 파괴의 속도를 완화시킴. 그러나 이는 거대한 중국인구로 인한 땅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함. 따라서 중국의 토지이용 및 관리는 여전히 몇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음.

- 현재 중국은 1인당 평균 경지가 적고, 양질의 경지가 적으며, 예비 경지자원이 적음. 2005년 전국 1인당 평균 경지가 0.094ha(1.4무)로 세계 평균수준의 40%에도 이르지 못함. 양질의 경지 또한 전 경지 면적의 1/3에 불과함. 경지의 예비자원 잠재력은 약 1,333만 ha로, 60% 이상이 수자원이 부족하고 생태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분포되어 있어 개발 및 이용에 많은 제약이 있음.
- 양질의 경지가 감소하고 공업용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1997~2005년 동안 전국적으로 관개 논과 관개 밭 면적이 각각 93.1만 ha, 29.9만 ha 감소하였으며, 동기간 배수시설을 갖춘 경지는 전체의 40%에도 이르지 못함. 신규 건설용지 중 광공업용지 비율은 40%에 달하며, 지역에 따라 최대 60%에 달함. 소도시 주민 생활의편의를 위한 용지 공급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 건설용지의 낭비가 비교적 심한 편임. 조사에 의하면 전국 소도시 계획 범위 내의 휴경지는 총 26.7만 ha임. 전국 공업용지 용적율은 0.3~0.6%이며, 공업용지의 평균 산출율은 선진국 수준을 한참 밑돌고 있음. 1997~2005년 동안 농촌인구는 9,633만 명으로 감소하였으나, 농촌주민의 토지 점용면적은 11.8만 ha로 오히려 증가하여 농촌 건설용지의 이용효율은 낮아졌음.
- 일부 지역의 토지 악화 및 훼손이 심각함. 2005년 전국 수토 유실면적은 35,600만 ha에 이르며, 퇴화·사막화된 초지면적은 13,500만 ha에 달함. 또한 일부 지역에서 는 무질서한 산업용지 이용으로 토지오염을 가속화시키고 있음. 도시 주변 및 일부 주요 교통간선, 강·하천 연안 경지의 경우 중금속 및 유기오염물 함유량이 기준을 초과하고 있음.
- 토지의 불법 사용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2007년 시작한 "백일행동(百日行動)" 은 이와 관련한 자세한 조사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전국적으로 임대 수용 면적은 2.2만 ha이며, 불법적으로 신설되거나 확대된 각종 개발 면적은 6.1만 ha, 비준되지 않았으나 불법 이용된 토지 면적은 15만 ha에 이름. 총체적으로 불법적인 용지이용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임.

1.2. 기회와 도전

○ 2020년은 중국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회의 시기인 동시에 자원환경 파괴의

모순이 함께 나타나는 때이기도 함. 전면적인 샤오캉(小康) 사회를 건설하고, 경제 글로벌화에 전면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공업화·지식화·도시화·시장화·세계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해 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동시에 중국 토지이용 및 관리가 직면한 도전을 충분히 인식해야 함.

- 농업용지, 특히 경지의 보호가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음. 2010년과 2020년에 이르면 중국 인구는 각각 3.6억 명, 14.5억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2033년을 전후해서는 최고조인 15억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국가 식량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 면적의 경지를 가지고 있어야 함. 또한 국가 생태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생태기능을 가진 농업용지 특히 경지에 대한 보호가 적극적으로 실시되어야 함. 도시화, 공업화가 추진되면 토지의 점용은 피할 수 없으므로 현대농업 발전 및 생태건설을 위해 경지에 대한 조정을 실시해야 함. 그러나 경지의 예비자원이 적고, 생태환경의 제약이 큰 상황은 중국 경지 자원의 보충 능력을 제약하는 동시에 농업용지 특히 경지의 보호를 더욱 어렵게 할 것임.
- 건설용지의 수급의 모순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 중국은 현재 도시화, 공업화를 통한 빠른 발전을 지속하고 있음. 2010년, 2020년에 이르면 도시화율이 각각 48%, 58%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도시의 광공업용지 수요는 장기간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임. 도시, 농촌지역의 일체화된 발전을 촉진해야 하며, 지역의 기초 건설 용지를 증가시켜야 함. 경지보호와 생태건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건설용지로 전용 가능한 토지자원이 매우 제한적이므로 각종 건설용지의 공급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보임.
- ≪요강≫의 조정은 어렵고도 방대한 작업임. 국제화, 정보화, 시장화는 경제발전 방식의 변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음. 따라서 토지이용 방식 또한 시급한 변화가 요구되며, 토지 이용구조의 최적화가 필요함. 지역발전전략을 실시하여 도시·농촌 총계획및 지역 간 조정을 실현하고 국토개발의 신국면을 형성해야 하며, 지역별 토지이용조정에 대한 더 높은 요구를 제시해야 함. 그러나 지역 간 경제사회 발전의 불균등과각 지역의 토지이용 목표의 다원화는 토지 이용구조 조정 및 최적화, 배치의 어려움을 극대화시키고 있음. 이에 따라 업무별, 지역별 토지이용 총계획의 조정 작업이중요해지고 있는 실정임.

- 중국은 현재와 미래의 토지이용에 유리한 기반을 조성해야 함. 현재의 토지이용 상황을 살펴볼 때, 건설용지의 이용은 절약적·집약적 이용 공간이 비교적 큼. 경지자원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초 조건을 보장해야 함. 경제의 세계화, 과학기술 혁명 및 산업구조의 향상은 중국 경제발전 방식의 변화에 유리하며, 자원절약형사회를 건설하는데 유리함. 당 중앙, 국무원은 토지관리를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이는 토지의 거시적 조정에 유리함.
- 중장기적으로 중국 토지이용 및 관리에서 기회와 도전이 공존하고 있음. 중국이 장기 적으로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처해 있고, 날로 증가하는 국민의 물질적 수요와 낙후된 사회생산 간의 모순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토지자원의 개발 및 이용, 보호를 총괄하고, 토지이용의 새로운 모델을 적극적으로 탐색하여 토지자원의 지속가능한 이 용을 촉진시켜야 함.

2. 지도원칙, 목표 및 임무

2.1. 지도원칙

- 등소평의 이론과 "삼개대표(三個代表)" 중요 사상을 지도원칙으로 하여 과학발전관을 철저히 실행해야 하며, 자원절약과 환경보호의 기본 정책을 견지해야 함. 또한 경지 보호와 집약 용지 절약의 근본적인 지도방침을 견지해야 하며, 토지관리제도를 엄격하게 실시해야 함. 전면적인 샤오캉(小康)사회 건설의 목표와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에 대한 요구에 따라 토지이용과 경제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총괄해야 하며, 토지자원 배치에서 시장체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거시적 조정을 확대하고, 공동책임제를 실시해야 함. 또한 수자원을 개발하여 물의 유실을 억제하는 사업을 중시하고, 과학기술의 혁신 및 국제협력을 추진해야 하며, 보장 체계를 세우고 과학발전의 새로운 기제를 촉진시켜야 하며, 토지자원이 경제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보장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을 준수해야 함.
- 경지를 엄격히 보호해야 함. 농업의 기초 적 지위 제고를 위해 농촌 민생문제를 해결 해야 하며, 경지 특히 절대농지를 엄격히 보호해야 함. 토지정리, 개간 등 경지 보충

사업을 늘리고, 농업 종합생산능력을 제고시켜야 하며, 이를 통해 국가의 식량안전을 보장해야 함.

- 토지를 절약적·집약적으로 사용해야 함. 자원절약형 사회 건설의 요구에 따라, 과학적 발전을 보장하고 이를 촉진시켜야 함. 건설 규모를 합리적으로 통제해야 하며, 건설용지의 새로운 공간을 적극적으로 확장시켜야 함. 용지사용 방식을 외연확장에서 내부 잠재력의 발굴로, 조방적인 저효율에서 집약적 고효율로 빠르게 전환시켜야함. 용지의 낭비를 막고 산업구조의 최적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경제발전방식의 전환을 촉진시켜야함.
- 각 사업별 용지에 대한 전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함. 국가지역발전의 전체적인 전략 수립의 요구에 따라 국토개발의 신국면을 형성해야 하며, 각 사업별 용지 배치를 최적화 시켜 인구·산업 요소의 합리적 유동을 유도해야 하며, 동시에 도시·농촌과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시켜야 함.
- 토지 생태건설을 강화해야 함. 환경친화형 사회 건설의 요구에 따라 사람이 살기에 양호한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생활·생태·생산 용지를 적절히 안배하여 우선적으로 자연생태 공간을 보호하고, 생태문명의 발전을 촉진시켜야 함.
- 토지의 거시적 조정을 강화해야 함. 국민경제의 발전 요구에 부응하여 과학적 발전 의 새로운 기제를 보장하는 동시에 촉진시켜야 하며, 계획 실시를 위한 보장조치를 강화. 개선해야 함. 또한 토지관리 및 참여의 거시적 조정을 효과적으로 실시해야 함.

2.2. 계획 목표

- 12,060만 ha(18억 무)의 경지 유지. 전국 경지면적은 2010년과 2020년에 이르면 각 각 12,120만 ha, 12,033만 ha가 됨. 계획 기간 내에 10,400만 ha의 기본 농지를 확보하고, 토질을 향상시켜야 함.
- 과학적 발전을 위한 건설용지를 보장해야 함. 새로운 건설용지는 현재 미사용 되었거 나 저효율인 건설용지를 충분히 이용해야 함. 건설용지 공간을 부단히 확장시켜야 하 며, 절약적·집약적 용지 사용 수준을 부단히 제고시켜야 함. 과학적 발전을 위한 용 지수요를 효과적으로 보장해야 함. 계획 기간 내에 건설용지에서 2. 3차 산업 생산액

이 연평균 6% 이상 제고되도록 해야 하며, 특히 "제10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 내에 연평균 10% 이상 제고되도록 해야 함. 2010년과 2020년에 이르러서는 전국의 신규 건설용지가 195만 ha, 585만 ha에 달해야 함. 미사용 용지의 개발을 통하여 125만 ha 이상의 새로운 건설용지를 형성해야 하며, 그 중 "제10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 내에 38만 ha를 형성해야 함.

- 토지 이용구조를 최적화 시켜야 함. 농업용지의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시켜야 하며, 건설용지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동시에 미사용 용지를 합리적으로 개발해야 함. 도 시·농촌의 용지구조를 부단히 최적화시켜야 하며, 도시 건설용지의 증가와 농촌 건설 용지의 감소를 상호 연계시켜야 함. 2010년과 2020년에 이르러서는 농업용지가 각 각 66,177.1만 ha, 66,883.6만 ha가 되어야 하며, 건설용지의 총면적은 각각 3,374 만 ha, 3,724만 ha 이내가 되어야 함. 2005년 도시 광공업용지는 도시·농촌건설용 지 총량의 30%임. 이를 2020년까지 40%로 조정해야 함. 그러나 도시 광공업용지 중 공업용지의 비율은 엄격히 통제해야 함.
- 토지정리, 재개간을 통한 토지개발을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함. 논, 수자원, 도로, 임 야, 농촌의 종합적 정비와 건설용지 정리를 효과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광공업에서 페기한 토지를 전면적으로 재개간하고, 예비 경지 자원을 개발해야 함. 2010, 2020 년에 이르러서는 전국적으로 토지정리, 재개간을 통해 개발된 보충경지가 114만 ha, 367만 ha를 넘도록 해야 함.
- 토지 생태의 보호와 건설을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실시해야 함. 퇴경환림환초 조치가 공고한 성과를 거두도록 해야 하며, 수토유실 및 토지 사막화와 "삼화"(퇴화, 사막화, 알칼리화)를 막기 위한 초지정리를 실시하여 괄목할만한 진전을 이룩해야 함. 또한 농업용지, 특히 경지의 오염방지 작업을 적극 추진해야 함.
 - 거시적 관점에서 토지관리를 실시해야 함. 토지법제를 수립하고 시장기제의 지속적 인 완비를 시도하여, 토지관리에서 법률·경제·행정·기술 등의 수단을 지속적으로 완비시켜야 함. 이를 통해 토지관리의 효율성을 부단히 제고시켜야 함.

2.3. 주요 임무

- 계획된 목표의 실현을 위해서는 아래의 주요 임무를 명확히 수행해야 함.
- 엄격한 경지보호의 전제 하에 농지 안배를 총괄적으로 실시해야 함. 경지의 수량, 품질, 생태 환경에 대한 전면적인 관리·보호를 실시해야 하며, 비농업건설을 위해 절대농지를 점용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하는 동시에 절대농지의 건설을 강화해야 함. 토지정리 및 재개간을 확대하고 지력을 보강하여 경지의 질량을 높여야 함. 각종 농업용지의 안배를 총괄하여, 농업용지의 구조와 배치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함.
- 토지의 절약적·집약적 이용을 통해 건설용지 보장 능력을 제고해야 함. 수급조절을 통해 건설용지의 규모와 구조를 합리적으로 정해야 하며, 건설용지 총규모를 엄격히 통제해야 함. 건설용지 공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도시·농촌 건설용지의 변경을 엄격히 제한하고, 건설용지의 무질서한 확장을 통제해야 함. 비축 건설용지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미사용 용지와 광공업 폐기지를 충분히 활용하여 건설용지 공간을 확장시켜야 함.
- 국토 종합관리의 강화를 통해 토지이용과 생태건설을 조화롭게 해야 함. 각종 농업용지와 미사용 용지가 생태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고, 기초성 생태용지에 대한보호를 강화해야 함. 토지정리, 재개간을 중점으로 하는 국토 종합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토지이용 및 생태환경 건설을 총괄적으로 수행해야 함. 각 지역마다 환경보호 관련 용지 정책을 수립하고, 각지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토지 생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함.
- 지역토지의 이용에 대한 조절과 통제를 강화하고, 지역토지의 이용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함. 차별화된 토지이용 정책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성급 토지이용의 조절과 통 제를 강화하여 토지이용 계획, 목표와 공간관리 관련 조치를 실시해야 함.
- 공동책임에 기초하여 계획 실시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완비해야 함. 경지보호 및 용지 절약·집약 목표 책임제를 엄격히 실시하고, 토지이용 총계획의 전체적인 조절 및 통제 작용을 강화해야 함. 차별화된 토지이용계획 정책을 실시하고, 경지보호와 용지 절약·집약의 시장조절 메커니즘을 완비해야 하며, 토지이용계획의 동태적인 조절 매커니즘을 건립하여 토지이용계획 목표의 실현을 확보해야 함.

3. 농업용지 보호 및 합리적 이용

○ 12,060만 ha(18억 무)의 경지 한계선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경지 유실을 엄격히 방지해야 하며, 경지 보충 및 절대농지 건설과 보호를 강화해야 하며, 경지의 질을 높이고, 기타 농업용지의 안배를 총괄적으로 실시하여 농업용지의 종합적 생산능력과 이용효과를 제고시켜야 함.

3.1. 경지유실 억제

- 비농업 건설 목적으로 경지를 점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여 비농업 건설 시 경지를 점용하지 않거나 적게 점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함. 또한 불가피하게 점용할 경우 되도록이면 등급이 낮은 경지를 점용하여 우수 경지의 감소를 줄여야 함. 이를 통해 비농업건설의 신규 경지 점용면적이 2010년과 2020년에 각각 100만 ha, 200만 ha 이내가 되도록 통제해야 함.
- 독단적으로 생태 퇴경을 실시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해야 함. 국가 생태 퇴경정책을 착실히 수행해야 하며, 국가 생태 퇴경계획과 정책에 부합하지 않거나 생태 퇴경계획 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기한 내에 경작조건을 복구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경지의 수 량. 질량을 보충해야 함.
- 농업용지 구조조정을 강화해야 함. 재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합리적으로 실시하되 이로 인해 경지 보유량이 감소하지 않도록 해야 함. 각종 방호림, 그린벨트 등의 생태 건설이 경지를 점용하는 것을 최대한 피하고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기존 원칙에 따라 경지 보충의 의무를 이행해야 함. 경제적 보상, 시장수단을 통해 경지를 증가시키는 데 유리한 방향으로 농업구조 조정을 실시해야 함.
- 경지 훼손 방지 노력을 강화해야 함. 자연재해로 인한 경지 손실을 감소시키고, 훼손 된 경지를 즉시 복구해야 함. 계획기간 동안 재해로 인해 훼손되는 경지를 73.3만 ha 이내로 통제해야 함.

3.2. 경지조성 강화

○ 비농업 건설 시 경지를 점용하는 경우 보상제도를 엄격히 실시하기 위해 경지보충 법

인책임제를 실행해야 함. 경지의 점용과 보충이 균형을 이루도록 성(자치구·직할시)에서는 경지 보충 의무를 엄격히 수행해야 함. 조건을 갖춘 지역이 경지 보충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경지 보충 임무를 추가하고, 경지보호의 목표를 확실히 달성하도록 해야 함. 국가의 중요 건설 항목의 경지 보충 임무에 대해 국무원의 비준을 거치도록함. 토지정리·재개간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경지를 보충하는 동시에 자금원을다양한 경로로 확보하고. 시장화 운용 모델을 지속적으로 탐색해야 함.

- 농촌의 토지정리를 적극적으로 강화해야 함. 농촌의 생산 및 생활 조건, 생태환경을 개선시키는 동시에 효과적으로 경지면적을 증가시켜야 하며, 경지의 질 또한 제고시 켜야 함. 토지정리를 통해 2010년과 2020년에 각각 63만 ha, 182만 ha의 경지를 보충하도록 함.
- 광공업 폐기지를 적극적으로 재개간해야 함. 폐광 등의 폐기지를 적극적으로 재개간 하여 우선적으로 농업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여러 용도로도 사용하여 생태환 경의 개선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또한 재개간 토지의 이용 방향, 규모, 순서를 합리적으로 안배해야 함. 공광업 폐기지의 재개간을 통해 2010년과 2020년에는 각 각 17만 ha, 46만 ha의 경지를 보충하도록 함.
- 황무지를 농업용 예비 토지로 적절히 개발해야 함.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개선시킨다는 전제 하에, 토지이용 조건에 의거하여 계획적으로 예비 토지자원의 개발 및 이용을 추진하고 토지개발 사업을 실시해야 함. 미사용 토지의 개발을 통해 2010년과 2020년에는 각각 34만 ha, 139만 ha의 경지를 보충하도록 함.

3.3. 절대농지의 보호 강화

○ 절대농지의 수량 및 질량을 안정시켜야 함. 절대농지 확정과 관련된 규정 및 표준에 의거, 농용지의 등급을 참고하여 계획 기간 내에 절대농지를 확정하고 확정된 절대 농지의 평균 등급이 원래 등급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해야 함. 절대농지 보호제도를 엄격히 실시하고, 법규 외에도 기타 각종 절대농지의 점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해야 함. 점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국무원의 비준을 받도록 하고 "경지 보충 후 점용" 원칙에 따라 절대농지의 수량 및 질에 상당하는 절대농지를 보충하도록 해야 함.

○ 절대농지의 건설을 강화해야 함. 절대농지 건설 집중투입제도를 수립하여 식량주산지 및 절대농지 보호지역 건설에 대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절대농지의 토지정리를 확 대하는 동시에 생산조건을 개선시켜야 하며, 절대농지의 질을 제고시켜야 함. 경제, 행정 등의 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절대농지 보호 시범지역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3.4. 경지의 질 향상

- 경지의 관리 및 보호를 강화해야 함. 경지 등급에 따라 차별적인 관리 및 보호를 실시하고 양질의 경지에 대해서는 특별보호를 실시해야 함. 경지보호 대장 관리제도를 수립하여 경지보호의 책임자, 면적, 경지 등급 등 기본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함. 생산능력이 저조한 농지 개조 작업을 강화해야 하며, 수리시설 건설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동시에 비탈을 계단식 논으로 개조하는 등 수토유지 사업을 강화해야 함. 절수 및 가뭄 극복 기술을 적극 보급하고 "옥토공정(沃土工程)", "이토배비(移土培肥)" 등 사업을 실시하여, 경지의 종합적 생산능력을 제고시켜야 함.
- 보충경지의 품질 확보. 농용지의 등급 판정 결과에 의거하여 경지의 점용 및 보충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수량 및 생산능력 두가지 방면에서 경지 점용 및 보충의 균형 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보충 경지의 품질이 점용 경지의 품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품질환산에 근거하여 경지면적을 보충하도록 해야 함.

3.5. 기타 농용지의 분배

- 과수용지의 이용 효율을 제고시켜야 함. 양질의 과수원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고, 우수한 과일 생산기지를 건설하도록 함. 또한 품종구조 조정 및 상품의 품질을 제고시켜야 함. 과수용지의 분배를 조정하고, 입지조건이 좋은 구릉, 대지, 비탈지에 새로운 과수원을 건설토록 해야 함. 생산이 저조한 과수용지에 대한 개조 및 관리를 강화시켜야 하며, 과수용지의 단수 및 수익을 제고시켜야 함.
- 임지를 엄격히 보호해야 함. 임지 점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훼손된 임지의 재개 간 및 불법적인 임지의 점용을 금지시켜야 함. 각종 건설사업이 국가중점 공공림, 천

연림, 자연보호구역, 삼림공원 및 강하천 등 생태가 취약한 지역의 임지를 점용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해야 함. 현재의 임지를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는 한편, 저효율 임지에 대한 개조를 강화하고, 적지 갱신 및 훼손된 임지의 회복 사업을 빨리 실시해야함. 황폐한 산, 비탈지를 충분히 활용하여 조림 사업을 실시해 임지면적을 증가시켜야함.

- 목초지의 종합적 관리를 추진해야 함. 목초지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용량을 초 과하여 방목하는 것을 금지하고 남벌·남채를 금지해야 하며, 방목 용량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통제해야 함. 천연 초지의 생산력을 제고시켜야 함. 방목지역을 점차 천 연 초지에 기반한 방목으로 전환하고 생산성이 높은 인공 초지와 사료작물 생산기지 를 건설해야 함. 반농반목지역에서는 인공초지를 발전시키고 목초와 작물의 윤작을 실시해야 함. 초지 생태의 회복·재건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 가축·가금 사육용지를 합리적으로 안배해야 함. 가축·가금 사육 용지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규모화 사육을 장려해야 함. 공광업 폐기지와 황폐화된 산, 비탈 등 미사용 지를 이용한 가축사육장 건설을 장려하여 가축 사육의 발전을 도모 함.

4. 건설용지의 절약적·집약적 이용

4.1. 건설용지 규모 통제

- 신규 건설용지의 규모를 엄격히 통제해야 함. 수급상황에 맞추어 건설용지 규모를 합리적으로 확정하고, 토지이용 총계획과 연간 계획에 의거하여 신규 건설용지의 규모, 구조, 순서를 조정하도록 함. 신규 건설용지의 경우, 특히 점용 경지의 규모를 제한함으로써 토지이용모델 혁신과 토지이용 효율을 제고하고 토지공급의 경성제약을 통해경제발전 방식의 근본적 전환을 촉진하도록 함.
- 건설용지의 개발능력을 강화해야 함. 잠재된 건설용지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하며, 도시의 미사용 용지에 대한 조정을 강화하고, 저효율 용지에 대한 개조 및 심도 있는 개발 사업을 장려해야 함. 토지절약형 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여 도시와 농촌을

개조시켜야 하며, 특히 촌의 개조에 중점을 두어야 함. 각종 토지절약 기술과 모델을 연구하여 보급시켜야 하며, 용지의 절약적·집약적 건설을 촉진시켜 현재의 건설용지 가 사회경제발전에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신규 건설용지를 적극 개발해야 함. 생태환경을 파괴시키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완만 한 구릉지·알칼리성 토지·잡초지 등 미사용 되고 있는 토지와 폐기지에 대한 개발을 우선해야 함. 지상 및 지하 건설을 적극 추진하여 건설용지의 공간을 확대해야 함.

4.2. 도시 광공업 용지 배치의 최적화(생략)

4.3. 농촌 건설용지의 규범화

- 신농촌 건설의 요구에 따라 현급 토지이용 총계획 및 향·진계획을 철저히 실행하고, 농민주택의 집약적 건설을 통해 자연촌락이 적절히 통폐합될 수 있도록 함. 농업생산 및 농민생활에 필수적인 건설용지를 중점적으로 보장하고, 농촌도로·수리 등의 기초 시설 건설 및 교육·위생·인구 계획 등 사회사업의 발전을 촉진해야 함.
- 농촌 택지관리를 강화해야 함. 농촌 택지의 부지를 합리적으로 안배하고, 표준을 초 과한 주택 건축을 금지시켜 현재의 주택용지 과다 문제를 해결해야 함. 신축 주택은 우선 촌내 유휴지, 유휴 주택용지를 이용하도록 하고, 촌내에 유휴지, 유휴 주택용지 가 있을 경우 주택용지를 새로 증가시키지 않도록 해야 함. 농촌 택지의 합리적인 유 통을 유도하고 규범화시켜 효율적 이용을 제고시켜야 함.
- 농촌 건설용지의 정비를 점진적으로 실시해야 함. 민의존중, 민생개선, 실정에 맞는 대책 수립의 원칙에 따라 논·수로·산림·마을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를 실시하고, "공 심촌(空心村)1"용지에 대한 개조를 강화시켜야 함. 2020년까지 90만 ha의 농촌 건 설용지에 대한 정비를 완성하고, 이 중 30만 ha는 "제 1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 간 내에 정리하도록 함.

¹ 빈집이 많고 주민이 적은 마을

4.4. 기초시설 용지 보장(일부 생략)

- 2006~2020년 동안 145만 ha의 도로용지를 증가시키고 그 중 30만 ha는 농촌도로 용지가 되도록 해야 함. "제1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기간에 신규 도로용지 55만 ha를 안배하고, 그 중 농촌 도로용지가 12만 ha가 되도록 해야 함.
- 수리시설 관련 용지를 합리적으로 안배해야 함. 농촌 수리시설의 건설을 촉진하고 관개지구의 지속적인 절수 개조, 빗물 저장 이용, 농촌 식수안전을 중점 내용으로 농촌수리시설 용지를 보장하여 농업생산과 농촌 생활기반의 개선을 촉진시켜야 함. 계획기간 내에 수리시설 용지를 45만 ha 증가시키고, 그 중 22만 ha를 "제11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기간 내에 증가시켜야 함. 남수북조 프로젝트 중 장강의 물을 화북지역으로 끌어들이는 동선 프로젝트와 중선 프로젝트에 9.7만 ha의 용지를 안배해야 함.

4.5. 건설용지의 공간 관리 강화(생략)

5. 토지이용과 생태건설의 조화

5.1. 생태용지에 대한 보호 강화(일부 생략)

- 천연림, 천연 목초지와 습지 등 기초성 생태용지에 대한 개발 및 이용과 간석지 등의 토지에 대한 개발을 엄격히 규제하고, 생태기능의 보호와 개선을 위한 총계획을 철저 히 실시해야 함. 계획기간 내에 중요 생태기능을 지닌 경지, 과수원, 임지, 목초지, 수역과 미사용 용지가 전국 토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5% 이상이 되도록 함.
- 5.2. 토지 생태환경의 정비 강화(생략)
- 5.3. 토지 생태 환경의 개선(생략)

6. 지역 토지이용 총계획

6.1. 지역토지 이용방향의 구체화

○ 각 지역의 자원 조건, 토지이용 현황, 경제사회 발전단계 및 지역발전전략의 차이에 의거하여 전국을 9개의 토지이용지역으로 구분하고, 토지이용 및 관리의 중요성에 기초하여 각 지역의 토지이용계획을 조정해야 함.

□ 서부지역

○ 경지 면적을 안정시키고 경지의 질을 제고하며, 기본식량 생산 농지를 명확히 확정해야 함. 기초시설, 생태환경 건설, 특색 있는 산업 발전용지를 계획적으로 분배하고, 교통 간선 개발을 지원해야 함. 용지의 집약 수준을 점차 제고시켜야 함.

○ 서북지역

- 천연 가스와 고체 광산자원의 개발, 지역 간 철도건설, 서부지역의 석탄을 동부지역으로 운송하는 도로 건설용지를 보장해야 함. 기초시설 용지의 비중을 점차 제고시키고, 도시·농촌 1인당 평균 건설용지 면적을 적절히 낮추어야 함. 수리건설과 절수농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평야지역과 오아시스지역의 경지 보호 및 절대농지 건설을 강화하고, 예비 경지자원을 개발해야 함. 생태용지 용도관리를 엄격히 하고, 농목교차지대·황량한 초원지역·사막 지대 등의 토지 생태보호 및 건설을 강화해야 함. 유실지역의 종합적인 정비와 토지 사막화 방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함.

0 서남지역

- 국도, 성 간 도로, 서전동송(西電東送)² 프로젝트를 위한 용지건설을 보장해야 함. 도시 건설용지를 적절히 증가시키고, 재해의 방지 및 용지 이전을 합리적으로 실시 해야 함. 중경시와 성도시에 대한 총계획을 통해 도농 통합발전을 위한 개혁을 강화 시켜야 함. 평야 및 경지 보호를 강화하고 절대농지 건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 사 막화 방지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해하고 천연림 및 수원 함유림의 보호. 방호림 조

² 서부지역의 전기를 동부지역으로 공급하는 사업

중국농업동향

성 등의 사업을 지원함. 생태용지의 용도 변경을 제한하고, 생물다양성의 보호 및 자연회복 위주의 생태건설을 촉진시켜야 함.

○ 청장(青藏)지역

- 기초시설 건설에 필요한 건설용지의 수요를 보장하고, 농목지역의 도시와 농촌의 건설용지 면적을 적절히 증가시키는 한편, 소수민족지역과 변경지역의 발전을 지원함. 천연 식생 및 고원 습지의 보호를 강화하고, 황폐 목초지의 정비 및 "삼강원(三江源)" 자연보호구역 보호 등의 생태환경 건설을 지원함.

□ 동북지역

- 장비, 강재, 자동차와 농업부산물 가공, 에너지 등의 산업발전을 보장하고, 기초시설 건설용지를 강화하여 현대농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현재의 자원고갈형 모델의 전환을 촉진시켜 토지자원의 수익을 제고시켜야 함. 새로운 건설용지를 적절히 증가시키고, 도시 광공업 건설용지의 조정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현존 건설용지의 활용을 활성화시 켜야 함.
- 동북지역 철로와 각 성간 도로 등 건설용지를 집중적으로 보장해야 함. 토지이용 정책과 기제에 대한 혁신을 이루어야 하며, 부신(阜新), 대경(大慶), 이춘(伊春), 료원(遼源), 백두산(長白山), 반진(盤錦) 등의 도시를 자원형 도시로 전환하는 연계산업에 사용되는 용지의 제공을 보장해야 함. 절대농지의 토지정리와 건설을 강화하고, 식량기지 건설을 지원함. 천연림, 목초지 및 습지 보호를 강화하고, 수토유실 방지, 동북지역 서부의 사막화를 억제해야 함. 공광업 폐기지의 재사용을 확대하고, 석탄채취로 인한 토지 침하 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광산지역의 토지 생태환경을 개선시켜야 함.

□ 중부지역

○ 경지정리를 강화하고, 식량생산기지 건설을 촉진시켜야 함. 장비제조업, 고부가 기술 산업, 신형 건축재료업, 농산물 가공업 등의 산업과 대형 석탄채굴 에너지기지, 종합 적 교통운수 시스템 건설을 위한 용지를 확보해야 하며, 연간 신규 건설용지의 규모를 적절히 증가시켜 중부지역의 부흥을 촉진시켜야 함.

○ 산서성, 하남성(晉豫)

- 기초시설 용지를 합리적으로 안배하고, 서부·하남의 대형석탄 전기 건설과 도로 건설을 위한 용지를 중점적으로 보장해야 함. 도시 광공업 용지를 적절히 증가시키고 농촌 건설용지 정비를 강화하여 1인당 평균 도시·농촌 건설 용지를 점차적으로 낮춰야 함. 광공업 폐기지의 재개간, 오염방지, 석탄채굴지역 정비를 강화하고, 농업용지의 정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농업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곡물과 면화 상품기지의 건설을 지원해야 함. 농산물 생산능력을 제고하고, 농산물 가공을 통한 수익 증대를 촉진시켜야 함. 산서성 황토구릉지역과 하남성 서부산간지역의 생태를 위한 퇴경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예동 황하 옛길의 사막화된 토지의 정비를 강화하여 지역생태 환경을 개선해야 함.

○ 호남성, 호북성, 안휘성, 강서성(湘鄂皖贛)

- 철로, 주요 도시 간 고속 교통도로 등 기초시설과 회북, 회남의 석탄기지 건설을 지원해야 함. 도시화와 공업화에 부응하고 건설용지의 비중을 적당히 제고시켜야 함. 무한성(武漢省) 권역과 장주탄(長株潭) 지역의 자원절약형, 자연친화적 종합개혁 시험지역의 토지이용에 대한 정책적 지도를 강화해야 함. 절대농지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고효율의 식량·면화·석유 기지 건설을 촉진시켜야 함. 장강, 회하, 동정호, 파양호의 침수, 오염 정비를 계획적으로 실시하고, 남수북조(南水北調) 프로젝트 실시과정에서 수원 보호, 장강 방호림 건설을 위한 용지를 보장해야 함. 동정호, 파양호등 지구의 습지를 보호하고 호수를 막아 농지를 조성하는 것을 금지해야 함.

□ 동부지역

○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경지와 절대농지를 엄격히 보호하고, 경지의 보호와 건설을 강화하여 현대농업의 발전을 촉진시켜야 함. 건설용지에 대한 조정을 통하여 건설용지를 최적화하고, 연간 신규 건설용지의 규모를 낮추어야 함. 도시와 공업용지의 확장을 통제하고 현존하는 토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함.

- 북경시, 천진시, 하북성, 산동성(京津冀魯)
 - 산업용지를 계획적으로 안배하고 도시 광공업 건설용지를 저가로 확장하는 것을 통제하여 1인당 평균 소도시 광공업 용지 수준을 낮추어야 함. 천진·임해 지역의 개발, 조비전(曹妃甸) 철강기지 및 수도를 중심으로 하는 종합교통 시스템 건설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함. 도시농업, 관광산업, 평야 생태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북경·천진의 모래바람 정비구역의 생태 퇴경, 만리장성 연변 모래바람지역의 정비와 황하옛도로 사막화 정비 등의 생태환경 건설을 추진해야 함. 연해 간석지자원을 보호하는 동시에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비농업 건설이 간석지자원을 점용하는 것을 방지해야 함.

○ 강소성, 절강성, 상해시(蘇浙滬)

- 토지이용 모델을 혁신하고 공업의 집중화, 거주지의 집중화, 도시·농촌 건설용지의 조화로운 공간 배치를 유도해야 함. 건설용지의 규모를 통제하고, 1인당 평균 도시 광공업 용지면적을 적절히 낮추어야 함. 지역성 기초시설 용지를 계획적으로 안배하고 중복적인 건설을 방지해야 함. 상해 및 소주, 무석, 상주 지역의 지면 침하, 균열 등의 지질재해를 적극적으로 방지해야 함. 우량 경지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태호 (太湖)·항주만(杭州灣) 등 지역의 오염된 토지 정비를 강화하고, 습지보호를 강화하며 연해 간석지 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해야 함.

○ 복건성, 광동성, 해남성(閩粤瓊)

- 건설용지의 잠재력을 발굴하고 조정을 통해 용지 사용을 최적화시켜야 함. 주강 삼 각주 등 도시 밀집지역의 신규 건설용지 규모를 엄격히 통제하고, 도시·농촌 건설용 지의 무질서한 확장해야 함.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경지와 절대농지를 엄격히 보호하고, 산업과 생태 건설용지를 계획적으로 안배하여 해협서안 경제구역과 남해 및 기타 섬 생태여행 건설용지를 계획적으로 안배해야 함. 주강 삼각주, 복건성 연해지구의 오염 토지에 대한 정비를 강화하며, 하구 습지, 간석지 등의 생태용지를 적극 보호해야 함.

6.2. 차별화된 토지이용 정책 실시(생략)

6.3. 성급 토지이용 통제 강화

- 토지이용 지역의 지역토지 이용정책에 근거하여 경제사회 발전 수준, 발전 추세, 자원환경 조건, 토지이용 현황, 잠재력 등의 요소를 종합해야 함. 각 성(자치구·직할시)의 경지보유량, 절대농지 보호면적, 도시·농촌 건설용지 규모, 1인당 평균 도시 광공업 용지, 신규 증가된 건설 점용 경지 규모 등 토지이용의 예속성 지표와 과수원 면적, 임지면적, 목초지면적 등 예기성 지표(부표 1-4)를 각각 확정해야 함. 성급정부의 토지이용 통제 책임을 강화해야 함.
- 《요강》에서 확정된 주요 목표와 지표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추진시 철저히 집행해야 함. 경지보유량, 절대농지 보호면적 등 예속성 지표를 각각 각 성(자치구· 직할시)에 하달하여 철저히 관철하도록 하고, 경제·법률 및 필요한 행정 수단을 통하여 예기성 지표를 실현하도록 해야 함.
- 각 성(자치구·직할시)에서는 《요강》에서 확정된 원칙, 목표 및 주요 임무에 따라 지역발전전략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지역의 토지이용 정책에 부합하도록 해야 함. 국가 및 성급 지역의 공간 배치와 정책 간의 상호 연계를 통하여 조화로운 토지이용 질서를 형성하도록 해야 함.

7. 보장조치의 계획적 실시

7.1. 토지이용에 대한 조정계획 수립

○ 경지보호 및 용지 절약·집약 책임제를 실시해야 함. 《요강》에서 확정한 목표와 임무에 따라 각 성(자치구·직할시)에서는 경지보호와 용지 절약·집약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함. 실제 경지 보유량, 절대농지 보호면적, 보충경지 면적과 질, 신규 건설용지면적을 경지보호 책임과 용지 절약·집약 목표 심사의 중요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함. 토지이용계획실시 관련 문책제도를 수립하고, 지방 각급 정부의 주요 책임자는 해당행정구역 내 토지관리와 경지보호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함. 엄격한 경지보호, 절약적·집약적 용지 사용 내역을 지방경제발전 평가와 간부심사의 중요 요소로 반영하여

관련 평가와 심사방법을 완비해야 함.

- 각 지역·각 부문·각 사업에 편성된 도시, 촌·진, 교통, 수리, 에너지, 여행, 생태건설등의 관련 계획은 마땅히 토지이용 총계획과 상호 연관성을 가져야 함. 또한 경지보호와 용지 절약·집약 요구에 반드시 부합해야 하며, 토지이용 총계획에서 확정한 용지규모와 총 배치 계획과도 부합해야 함. 토지이용 총계획에 의거하여 각종 계획의용지규모와 표준을 엄격히 심사하고, 토지용도 관리제도를 성실히 수행해야 함. 토지이용 총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즉시 조정하고 수정해야 하며, 용지 규모를 심사하여 삭감하는 동시에 용지 배치를 조정해야 함.
- 토지이용 총계획과 관련하여 상명하달식 통제를 강화해야 함.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반드시 하급계획이 상급계획에 복종하도록 하고, 《요강》에서 확정한 각종 목표와 임무를 실행해야 함. 성급 토지이용 총계획은 전략성과 정책성을 강화하여 해당 행정 구역 토지이용의 목표·지표와 임무를 확정해야 함. 지급(地級) 및 현급 토지이용 총계획은 공간성과 구조성을 강화하여 토지 이용구조와 배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중심 도시지역과 소도시 건설용지지역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함. 향급 토지이용 총계획은 목적성과 실용성을 제고시켜, 토지이용 총계획의 통제와 지도하에 토지정리, 재개간, 개발 등을 구체화시켜야 함.

7.2. 관리제도의 계획적 실시

- 단기 계획과 연도별 계획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함. 토지이용 총계획,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국가의 거시적 조정 요구에 의거하여 토지이용 5개년 단기 계획을 편 성하여 실시하고, 각종 용지의 규모·배치·시간 배치를 명확히 해야 함. 토지이용 총 계획과 단기계획에 의거하여 연도별 계획을 편성하여 실시하고, 용지계획 분류에 따 른 관리를 실시해야 함. 계획 집행상황에 대한 평가와 심사를 강화하고, 차별화된 계 획관리 정책을 실시해야 함. 실제 용지심사 계획을 엄격히 집행하여, 실제 용지가 계 획 면적을 초과한 경우 이용계획을 초과한 토지에 대한 이용 허가를 금지하여 토지이 용계획이 제대로 실행되도록 해야 함.
- 토지이용 심사를 강화하고 개선시켜야 하며, 건설항목 비준 전에 토지계획 심사와 허

가를 강화하여 토지이용 총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토지이용 심사를 통과할 수 없도록 해야 함. 심사·비준 부문의 상호 연동 기제 및 정보 공유 기제를 구축하여 건설기관이 심사를 신청하거나 건설사업을 신청할 경우 토지이용 심사의견을 반드시 첨부하여 심사에서 통과하지 못한 것은 비준되지 않도록 해야 함.

- 농용지 전용(轉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함. 토지이용 총계획은 일단 비준을 받으면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위반할 수 없음. 각급 인민정부의 비준은 반드시 토지이용 총계획에 부합해야 함. 토지이용 총계획에 기초하여 토지용도 관리제도를 부단히 완비시켜야 하며, 도시·농촌 건설, 토지개발 등 각종 토지이용 활동은 반드시 토지이용 총계획에 부합해야 함. 농용지 전용 문제는 반드시 토지이용 총계획과 연도별 계획에 의거하여 엄격히 심사해야 하며, 반드시 농용지 전용 허가를 받도록 해야 함.
- 토지이용 총계획을 개정해야 함. 토지이용 총계획의 동태적 평가기제를 건립하고, 계획실시 평가보고는 계획 심사기관과 동급인 국토자원관리부문의 인정을 받은 후에 계획을 개정할 수 있음. 토지이용 총계획 개정 시에는 개정 필요성, 합리성, 합법성 등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진행하고, 전문가 검토를 거쳐 이를 공시하도록 함. 토지이용 방향, 규모 등 원칙적 항목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비준 기관이 독단적으로 하급 기관의 토지이용 총계획을 수정할 수 없음. 절대농지 점용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국무원의 비준을 받아야 함.
- 계획 실시에 대한 능동적 관리를 강화해야 함. 건전한 감독조사제도를 건립해야 하며, 전문 검사항목 및 일상적 감독조사를 상호 연결시켜 실시해야 하며, 위성 원격 탐지 등의 기술 수단을 통하여 계획 실시의 관리 범위를 확대시켜야 함. 법 집행 정도를 강화하고, 위법적으로 토지이용 총계획을 개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 관련 책임자가 행정적 책임을 지도록 함. 계획을 어기고 토지이용을 허가하여 토지를 이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른 조사 및 처리를 실시하고, 위법으로 점유하여 지은 건축물은 기한 내에 책임지고 철거하도록 함. 이를 위반하고 집행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신청하여 강제적으로 집행하도록 함.

7.3. 이익조정 메커니즘의 정비

- 농지보호를 위한 경제적 상벌 메커니즘을 완성해야 함. 비농업건설을 위한 토지이용 특히 절대농지 이용비용을 증대시키고, 현존 토지와 미사용 용지의 이용을 장려해야 함. 경지, 특히 절대농지 보호에 대한 재정보조를 강화해야 함. 경지 보유량과 절대농 지 보호에서 기층 정부조직이 충분히 적극성을 발휘하도록 해야 함. 경지 보호기금을 만들고 농가의 보호 경지에 대해 직접보조를 실시하여 농민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경지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보충 경지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해야 함. 신규 증가된 건설용지의 유상 사용을 통해 얻은 수입이 절대농지의 건설, 보호, 토지정리, 경지개발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해야 함. 성(자치구·직할시) 및 식량주산지와 토지개발 중점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정리와 재개간, 미사용 토지의 개발, 절대농지 건설 및 농업생산 조건 개선 등의 토지개발을 지원하도록 함. 시장 메커니즘을 충분히 운용하여 펀드를 적극적으로 늘려야 하며. 사회자금이 경지 보충에 사용되도록 격려하고 유도해야 함.
- 용지의 절약·집약에 가격조절 메커니즘을 강화해야 함. 토지수용제도의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토지수용 보상 기준을 합리적으로 확정하여 용지의 절약·집약에 유리한 수용가격 형성 메커니즘을 점진적으로 건설해야 함. 토지 양도와 입찰경매를 통한 토지임대 제도를 완비해야 하며, 토지가격이 지렛대 작용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공업용지 임대 최저가 기준을 향상시키고, 토지 임대가격을 규범화 시켜야 함. 미사용 토지에 대한 처분 정책을 엄격히 집행하고, 미사용 토지 특히 부동산 용지에 대해서는 토지가격을 평가절상하여 토지의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절약적·집약적 토지 이용을 촉진하는 세수조정 메커니즘을 형성해야 함. 경지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토지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해야 하며, 도시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최대한 제한적으로 이용하는데 유리한 세수정책을 실시해야 함. 사용되지않고 효율성이 낮은 용지에 대한 세수 조정능력을 강화시켜 건설용지의 조정을 유도해야 하며, 용지의 수익을 제고시켜야 함. 건설용지의 세수 조정능력을 강화하고, 토지가 집약적으로 사용되고 효율적으로 회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함. 토지의 심도 있는 개발에 대한 세수 지원을 강화하고, 현존 건설용지의 잠재력 발굴을 장려하고, 규칙

에 부합하고 용도변경을 하지 않는 전제 하에 토지이용률을 제고시키는 공업을 장려하여 용지 절약 및 집약적 사용을 촉진시켜야 함.

7.4. 계획 실시를 위한 기초건설 강화

- 토지계획 관련 법률의 지위를 부단히 제고시켜야 함. 토지이용계획의 입법 작업을 적 극적 추진하고, 토지이용계획의 편제와 비준을 엄격히 실시하며, 토지이용계획의 법 적 기초를 공고히 해야 함. 공정하고, 공개적이며, 대민봉사 원칙에 의거한 토지계획 관리 및 증언 청취 제도를 완비해야 하며, 계획 위반 시 처벌제도를 명확히 하여 토지 계획 집행 정도를 강화시켜야 함.
- 토지조사 통계와 모니터링 평가를 강화해야 함. 국가의 토지분류 기준에 근거하여 토지이용 현황에 대한 조사, 통계, 변경 조사를 성실히 수행해야 함. 농용지의 등급을 구분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작업을 완성해야 함. 토지 적절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소도시·개발구역 용지의 집약적 이용 잠재력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야 함. 토지이용과 토지시장 동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국의 토지이용에 대한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토지이용 변경에 대한 조사를 연도별로 실시하고, 이를 위한 토지이용계획 및 계획실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토지사용 관련 기준과 토지공급 정책을 엄격히 수립해야 함. 절약적·집약적 토지사용 의 원칙에 따라 에너지, 교통, 공용시설, 공공시설 등 각종 건설용지의 표준을 완비하고, 이 표준에 근거하여 각종 건설공정의 토지이용을 엄격히 심사해야 함. 토지이용 계획 목록을 제때에 조정하고, 군사·사회보장성 용지와 특수용지를 제외한 기타토지에 대해서는 유상사용을 실시하도록 함.
- 토지계획의 정보 서비스 수준을 제고시켜야 함. "금토공정(金土工程)"의 건설을 서둘 러야 하며, 토지이용 현황, 토지이용계획, 토지소유권, 토지시장, 토지정리, 재개간 개발 등 기초데이터를 포함한 토지행정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함. 토지관리의 심사·비준, 공급, 사용, 경지 보충 등 각 부분과 관련된 정보 플랫폼을 만들어야 하 며, 토지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토지이용계획의 목표 달성을 보장해야 함. 정보자원의 이용을 가속화하고, 기초성·공익성 정보에 대한 사회서비스 수준을 제고시켜야 함.

○ 과학기술 혁신과 인재 양성을 추진해야 함. 토지계획 이론, 방법과 기술수단에 관한 연구를 강화하고, 토지이용계획의 과학적 발전을 촉진시켜야 함. 각급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규정, 각종 용지계획 표준과 계획 성과에 대한 규범을 제정 혹은 개정해야함. 토지이용과 관련하여 국제협력 관리데스크를 만들어야 하며, 토지이용과 관리 등에서 외국의 선진 경험과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토지관리에 대한 전문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계획의 실시를 위한 직원의 업무 및 자질 인증제도를 완비하여토지사용계획과 인재관리와 관련된 전문 소양을 제고시켜야함.

7.5. 민주적 방법을 통한 계획의 추진

- 계획 추진 방식을 개선시켜야 함. 각급 토지이용 총계획 편성시 정부조직, 전문가 그룹, 부문 합작, 대중 참여, 과학적 정책 결정 등의 사업방침을 견지하여 계획 결정 수준을 제고시켜야 함. 계획 편성에서 전문가 자문제도와 협조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대표성을 지닌 계획전문가위원회를 설립하여 정책 결정에서 과학화와 민주화 수준을 제고시켜야 함.
- 건전한 대중참여제도를 수립해야 함. 각급 토지이용 총계획 편성에서 대중의 참여를 확대하고, 계획의 공개성과 투명도를 제고해야 함. 현급과 향급 토지이용 총계획의 토지이용, 토지정리·재개간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청취해야 함. 비준을 통과한 토지이용 총계획은 법에 의거하여 공고되어야 하며, 인민의 감독을 받도록 함.
- 계획에 대한 선전을 강화해야 함. 각종 매체를 충분히 활용하여 계획의 주요 내용을 광범위하게 선전하여 전 사회적으로 준법적 토지사용 의식을 제고해야 함. 과학적 토 지사용, 절약적 토지사용, 자원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증대시키고, 모든 국민 이 토지이용법률, 계획, 정책을 준수하도록 해야 함.
- 토지문제는 중국의 현대화 사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토지이용 총계획의 편성 과 실시는 국가와 국민의 장기적 이익과 관련됨. 각급 인민정부는 토지이용 총계획을 조직적으로 실시해야 함. 또한 지방 인민정부의 주책임자는 해당 행정지역 내의 토지 이용 총계획과 연도별 계획 집행 상황에 대한 총 책임을 져야 함. 각 유관부문은 책임 성을 가지고 밀접히 협력해야 하며, 각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계획의 원활한 실시 를 보장해야 함.

부표 1. 경지 보유량, 절대농지 보호 면적 지표

	200513 7			 경지 J	 보유량		71-111 -1	
지역	2005년 경	명시 면석	201	0년	2020)년	절대농지	보오 면석
	만 ha	만 무	만 ha	만 무	만 ha	만무	만 ha	만무
전 국	12,203.3	183,124	12,120.0	182,800	12,033.3	180,500	10,400.0	156,000
북경시	23.3	350	22.6	339	21.5	322	18.7	280
천진시	44.4	658	44.2	663	43.7	656	35.7	535
하북성	541.0	9,516	833.3	9,500	530.3	9,454	554.4	8,316
산서성	408.2	6,122	405.0	6,075	400.3	6,004	339.2	5,088
내몽고	710.1	10,651	705.1	10,577	697.7	10,456	508.1	0,122
요녕성	409.1	6,136	208.0	5,120	406.3	6,095	354.1	3,312
 길림성	553.7	8,305	553.0	8,295	551.9	8,279	483.4	7,251
흑룡강성	1,165.9	17,504	1,163.2	17,448	1,158.3	17,374	1,017.6	15,264
상해시	27.3	410	25.8	387	24.9	374	21.9	328
	480.1	7,202	476.2	7,143	475.1	7,127	421.5	6,323
절강성	194.8	2,922	191.6	2,874	159.1	2,836	166.7	2,500
 안휘성	573.5	8,602	571.8	8,577	569.3	8,540	490.7	7,361
 복건성	135.4	2,031	132.4	1,986	127.3	1,910	114.0	1,710
강서성	285.9	4,289	282.5	4,238	281.3	4,220	242.7	3,641
산동성	751.9	11,278	750.3	11,254	747.9	11,218	665.3	9,980
하남성	792.5	11,838	791.5	11,872	789.8	11,847	579.3	10,175
호북성	467.3	7,013	465.9	6,987	463.1	6,947	383.3	3,750
호남성	381.6	5,724	378.7	5,681	377.0	5,655	323.5	4,853
광동성	295.3	4,429	291.4	4,371	290.9	4,363	255.6	3,834
광 서	424.7	6,371	421.3	6,320	420.8	6,312	360.3	3,404
해남성	72.8	1,091	72.3	1,084	71.8	1,077	62.3	935
중경시	226.3	3,394	221.7	3,325	217.1	3,256	183.3	2,750
사천성	599.6	8,994	594.8	5,922	588.8	8,832	513.7	7,705
귀주성	450.5	6,737	443.8	6,657	437.1	6,556	361.7	3,426
운남성	509.4	9,142	504.9	9,073	598.0	8,970	495.4	7,431
서 장	35.1	541	35.7	536	35.3	529	29.2	438
섬서성	408.9	6,134	399.1	5,956	389.1	5,837	352.3	5,284
감숙성	466.8	7,002	465.6	6,984	464.6	6,969	381.7	3,725
청해성	54.2	813	54.0	810	53.6	804	43.4	651
영 하	109.9	1,650	109.5	1,642	108.7	1,630	88.5	1,328
신 강	406.3	6,095	404.9	6,074	402.7	6,041	358.3	5,299

부표 2. 건설용지 지표

	2010년 건설용지 총 규모 2020년 건설용지 총 규모											
		201				202						
	2005년		도시·농	촌 건설용	지 규모		도시·농	촌 건설용	지 규모			
	건설용지			2010년			2020년					
지역	총규모			소도시	1인당 평균				1인당 평균			
			소도시	광공업	소도시		소도시	광공업	소도시			
					공광업용지				공광업용지			
	만ha	만ha	만ha	만ha	평방미터	만ha	만ha	만ha	평방미터			
_전 국	3,192.2	3,374.0	2,488.0	848.0	129	3,724.0	2,665.0	1,065.0	127			
북경시	32.3	34.8	25.2	16.9	120	38.2	27.0	19.7	120			
천진시	34.6	37.5	23.5	14.9	162	40.3	25.0	17.5	146			
하북성	173.3	179.3	141.6	44.6	146	191.1	149.8	57.0	136			
산서성	84.1	88.8	72.0	23.3	142	98.3	77.0	28.5	141			
내몽고	143.9	151.3	105.8	36.3	279	162.3	110.0	42.0	255			
요녕성	137.0	143.3	106.4	40.0	145	155.6	113.1	47.6	144			
 길림성	104.9	108.8	75.2	21.1	127	117.4	79.2	24.1	127			
흑룡강성	147.4	152.8	113.0	37.7	167	164.8	118.8	44.0	163			
상해시	24.0	25.9	23.0	18.3	106	29.8	26.0	22.0	110			
강소성	183.2	191.9	147.7	56.7	132	206.2	156.0	65.8	125			
절강성	94.1	102.3	74.2	39.0	121	113.3	79.8	46.6	121			
안휘성	162.2	169.0	129.5	27.5	103	160.3	136.2	35.5	108			
복건성	58.9	64.8	46.0	20.1	115	74.4	52.6	26.9	105			
강서성	90.6	96.2	64.1	21.5	151	106.8	69.5	27.5	115			
산동성	242.2	252.3	192.0	72.7	150	266.9	200.7	84.5	146			
하남성	215.2	225.2	186.0	48.0	103	240.7	194.0	66.0	128			
호북성	136.8	143.3	99.9	28.7	103	155.7	106.7	37.3	104			
호남성	133.9	140.4	106.4	26.0	90	152.6	113.9	36.3	96			
광동성	171.5	152.6	140.0	75.0	119	200.6	152.3	91.3	119			
광 서	90.9	100.2	69.0	23.1	116	112.6	76.5	32.1	116			
해남성	29.3	31.8	20.4	8.4	194	35.7	22.2	10.5	184			
중경시	56.9	61.9	49.8	14.0	84	70.4	54.7	19.4	90			
사천성	156.2	165.1	137.0	34.5	106	181.3	148.6	47.2	107			
귀주성	54.1	60.0	46.0	12.5	93	71.4	50.7	17.9	97			
운남성	77.5	83.1	59.7	17.5	109	94.8	66.8	25.3	110			
<u>서</u> 장	6.3	7.3	4.0		207	9.9	4.9	2.3	209			
섬서성	79.9	84.6	68.4	16.7	98	93.9	73.5	23.2	105			
감숙성	96.7	100.3	58.0	14.9	156	106.6	62.0	19.4	153			
청해성	31.9	34.3	11.2	4.5	178	39.1	12.7	5.9	176			
<u>영</u> 하	20.3	22.4	17.1	6.0	192	26.5	19.3	7.5	197			
<u>신</u> 강	122.1	128.5	76.0	27.0	292	149.4	85.3	34.2	271			
								I.				

부표 3. 과수원 지표

기어	2005	년	201	0년	2020	년
지역	만 ha	만 무	만 ha	만 무	만 ha	만 무
 전 국	1,154.9	17,323	1,211.7	18,175	1,332.8	19,992
북경시	12.4	186	13.0	195	14.4	216
 천진시	3.7	56	3.7	56	3.7	56
 하 북 성	60.9	914	59.2	888	60.6	909
산서성	29.5	442	35.6	535	45.0	676
내몽고	7.3	109	8.3	124	9.7	145
요녕성	59.8	897	63.2	947	68.7	1,000
 길림성	11.6	173	11.8	177	12.0	180
 흑룡강성	6.0	90	6.6	99	7.2	107
상해시	1.1	17	1.3	20	1.5	23
 강소성	31.8	476	31.5	473	31.7	475
 절강성	65.5	983	57.4	860	56.8	852
 안휘성	34.2	513	33.9	509	33.8	506
 복건성	61.9	929	63.1	947	63.9	959
 강서성	27.3	410	31.6	474	38.9	584
산동성	102.1	1,531	103.3	1,549	103.4	1,550
하남성	31.8	477	32.9	493	34.1	512
호북성	42.7	640	44.6	668	46.4	696
 호남성	49.8	746	49.7	746	49.8	747
 광동성	92.5	1,387	88.8	1,333	93.1	1,396
광 서	50.9	763	57.1	857	69.5	1,042
해남성	53.3	800	55.3	830	60.0	900
중경시	23.5	353	26.0	390	33.9	509
사천성	72.1	1,082	81.2	1,218	95.7	1,436
귀주성	12.0	180	13.1	196	15.7	236
운남성	82.8	1,242	94.5	1,418	112.0	1,680
서 장	0.2	3	0.2	3	0.2	3
섬서성	68,7	1,030	71.9	1,078	77.5	1,162
감숙성	19.8	297	22.0	330	25.6	383
 청해성	0.7	11	0.9	13	0.9	15
영 하	3.4	51	5.7	85	8.0	120
신 강	35.4	531	44.4	665	61.0	916

부표 4. 임지 지표

7)64	2005	i년	201	0년	2020)년
지역	만 ha	만 무	만 ha	만 무	만 ha	 만 무
전 국	23,574.1	353,612	24,091.5	361,372	24,992.0	374,880
북경시	69.1	1,036	69.8	1,047	71.8	1,076
 천진시	3.7	55	3.7	56	4.2	63
하북성	439.3	6,589	482.3	7,235	571.0	8,566
산서성	439.2	6,588	490.8	7,362	580.2	8,704
내몽고	2,168.7	32,531	2,208.3	33,124	2,419.0	36,285
요녕성	569.0	8,535	592.3	8,884	621.9	9,328
 길림성	924.4	13,866	936.7	14,050	957.9	14,368
흑룡강성	2,288.5	34,328	2,317.3	34,760	2,366.7	35,500
상해시	2.1	31	2.2	33	2.7	41
 강소성	32.8	492	41.3	620	54.1	812
절강성	562.1	8,431	563.5	8,452	567.3	8,509
 안휘성	359.9	5,399	366.8	5,501	375.6	5,634
 복건성	832.5	12,488	838.8	12,582	841.9	12,628
 강서성	1,031.1	15,466	1,040.3	15,604	1,044.7	15,671
산동성	135.2	2,027	142.2	2,133	144.9	2,175
하남성	301.9	4,529	314.9	4,723	338.3	5,074
호북성	793.9	11,908	810.4	12,156	819.1	12,286
호남성	1,189.2	17,838	1,196.7	17,950	1,198.9	17,983
광동성	1,015.7	15,236	1,024.7	15,370	1,026.2	15,392
 광 서	1,161.5	17,422	1,190.2	17,853	1,194.6	17,919
해남성	148.3	2,225	151.6	2,274	155.6	2,334
중경시	327.3	4,910	337.0	5,055	342.3	5,135
 사천성	1,962.8	29,442	1,978.9	29,684	1,997.7	29,966
 귀주성	792.1	11,882	805.9	12,088	819.2	12,288
 운남성	2,212.9	33,193	2,269.6	34,044	2,278.1	34,172
 서 장	1,268.0	19,021	1,268.8	19,032	1,269.1	19,037
 섬서성	1,028.5	15,429	1,044.0	15,660	1,074.9	16,124
감숙성	513.2	7,698	546.7	8,201	682.4	10,235
청해성	263.8	3,957	278.7	4,181	321.2	4,818
영 하	60.4	906	65.4	980	90.1	1,351
신 강	677.1	10,156	711.8	10,676	760.4	11,406

V. 농업통계

- ■한·중 간 농림축수산물 수출입 통계
- 중국 농산물 도매시장 가격지수(월별, 일별)

1. 한국의 대 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출, 1992~2009.3

단위: 백만 달러, 천 톤

						단기	• 역단 글이,	
연 도	대 중국 수출액	전년대비 성장률(%)	대 세계 수출 총액	점유율 (%)	대 중국 수출량	전년대비 성장률(%)	대 세계 수출 총량	점유율 (%)
1992	13.6	0.0	2,837.0	0.5	20.2	0.0	1,624.1	1.2
1993	34.1	150.3	2,645.4	1.3	34.3	69.4	1,452.4	2.4
1994	69.8	104.6	3,012.6	2.3	72.1	110.4	1,599.7	4.5
1995	160.5	129.8	3,418.8	4.7	158.6	120.0	1,640.8	9.7
1996	155.9	-2.8	3,412.9	4.6	147.3	-7.1	1,735.1	8.5
1997	200.7	28.7	3,346.9	6.0	239.2	62.4	1,893.4	12.6
1998	174.6	-13.0	2,999.0	5.8	259.2	8.4	2,026.0	12.8
1999	149.3	-14.5	3,198.2	4.7	197.0	-24.0	1,830.0	10.8
2000	201.7	35.1	3,012.4	6.7	271.2	37.7	1,860.2	14.6
2001	164.4	-18.5	2,851.5	5.8	221.1	-18.5	1,880.4	11.8
2002	178.2	8.4	2,801.3	6.4	206.5	-6.6	1,865.4	11.1
2003	237.1	33.1	2,990.6	7.9	245.7	19.0	1,874.8	13.1
2004	338.2	42.6	3,365.2	10.0	297.9	21.2	1,898.8	15.7
2005	339.8	0.5	3,415.8	9.9	267.0	-10.4	1,894.4	14.1
2006	335.6	-1.2	3,394.8	9.9	246.4	-7.7	1,802.0	13.7
2007	452.1	34.7	3,759.3	12.0	374.9	52.2	2,051.0	18.3
2008	536.6	18.7	4,402.8	12.2	374.3	-0.2	2,150.9	17.4
2009.1	28.4	-45.4	301.4	9.4	17.6	-24.4	164.4	10.7
2009.2	68.7	-19.0	653.5	10.5	47.1	-5.2	358.0	13.2
2009.3	105.4	53.4	982.3	10.7	74.3	57.7	549.3	13.5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http://www.kati.net/web_trade/jsps/tr/tr05rl.jsp)

2. 한국의 대 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입, 1992~2009.3

단위: 백만 달러, 천 톤

							12 2 17	
연 도	대 중국 수입액	전년대비 성장률(%)	대 세계 수입 총액	점유율 (%)	대 중국 수입량	전년대비 성장률(%)	대 세계 수입 총량	점유율 (%)
1992	1,070.6	0.0	6,304.0	17.0	6,150.3	0.0	29,646.9	20.7
1993	1,047.9	-2.1	7,258.9	14.4	6,834.1	11.1	28,218.7	24.2
1994	1,179.5	12.6	8,214.5	14.4	5,915.1	-13.4	29,214.5	20.2
1995	725.7	-38.5	9,839.0	7.4	1,647.5	-72.1	31,086.7	5.3
1996	1,003.0	38.2	11,875.3	8.4	2,069.4	25.6	34,073.8	6.1
1997	1,528.6	52.4	11,255.1	13.6	5,520.8	166.8	33,270.2	16.6
1998	945.8	-38.1	6,971.6	13.6	3,839.6	-30.5	26,830.0	14.3
1999	1,154.1	22.0	8,563.8	13.5	3,348.7	-12.8	32,127.1	10.4
2000	1,867.9	61.8	9,818.5	19.0	8,722.6	160.5	33,543.8	26.0
2001	1,719.6	-7.9	10,079.2	17.1	5,504.9	-36.9	34,588.9	15.9
2002	2,324.3	35.2	11,471.5	20.3	9,316.9	69.2	37,017.2	25.2
2003	2,775.7	19.4	12,185.2	22.8	11,477.4	23.2	36,292.1	31.6
2004	2,421.6	-12.8	13,484.1	18.0	5,090.6	-55.6	35,540.7	14.3
2005	3,155.0	30.3	14,275.7	22.1	9,061.2	78.0	35,806.5	25.3
2006	3,236.1	2.6	16,100.9	20.1	6,220.2	-31.4	36,872.5	16.9
2007	4,173.4	29.0	19,242.3	21.7	8,723.5	40.2	38,025.3	22.9
2008	3,627.1	-13.1	23,198.6	15.6	4,910.1	-43.7	41,751.8	11.8
2009.1	299.9	-23.3	1,538.6	19.5	491.9	-11.3	2,712.1	18.1
2009.2	526.2	-24.4	2,921.6	18.0	898.3	-13.3	5,454.1	16.5
2009.3	826.9	57.1	4,438.4	18.6	1,419.6	58.0	8,400.3	16.9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http://www.kati.net/web_trade/jsps/tr/tr05rl.jsp)

3. 한국의 대 중국 농산물 수출, 1992~2009.3

						211	· 기년 크기,	
연 도	대 중국 수출액	점유율 ¹ (%)	대 세계 수출 총액	점유율 ² (%)	대 중국 수출량	점유율 ¹ (%)	대 세계 수출 총량	점유율 ² (%)
1992	5.3	38.5	678.8	0.8	9.1	44.7	618.0	1.5
1993	6.7	19.5	694.7	1.0	9.9	28.9	622.3	1.6
1994	12.2	17.4	835.2	1.5	23.4	32.4	771.1	3.0
1995	44.9	27.9	1,081.5	4.1	43.3	27.3	775.5	5.6
1996	27.0	17.3	1,156.3	2.3	27.8	18.9	899.8	3.1
1997	46.6	23.2	1,187.9	3.9	68.4	28.6	978.8	7.0
1998	39.0	22.3	1,002.2	3.9	64.2	24.8	1,048.2	6.1
1999	37.9	25.4	1,003.4	3.8	69.0	35.0	982.7	7.0
2000	59.0	29.3	1,133.5	5.2	91.6	33.8	1,133.5	8.1
2001	68.4	41.6	1,251.9	5.5	114.2	51.7	1,178.1	9.7
2002	95.6	53.6	1,374.5	7.0	126.2	61.1	1,239.2	10.2
2003	116.8	49.3	1,563.2	7.5	144.5	58.8	1,242.9	11.6
2004	151.0	44.6	1,758.5	8.6	157.4	52.8	1,258.9	12.5
2005	184.5	54.3	1,898.8	9.7	175.0	65.5	1,293.5	13.5
2006	216.4	64.5	2,008.2	10.8	172.6	70.0	1,263.9	13.7
2007	257.4	56.9	2,222.5	11.6	208.8	55.7	1,336.5	15.6
2008	300.3	56.0	2,621.0	11.5	187.7	50.1	1,390.2	13.5
2009.1	16.9	59.5	301.4	5.6	8.1	46.0	164.4	4.9
2009.2	39.4	57.4	653.5	6.0	23.5	49.9	358.0	6.6
2009.3	61.3	58.2	585.3	10.5	37.7	50.7	200.9	18.8

주: 1. 한국의 대 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출총액 및 수출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한국의 대 세계 농산물 수출총액 및 수출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http://www.kati.net/web_trade/jsps/tr/tr19rl.jsp)

4. 한국의 대 중국 농산물 수입, 1992~2009.3

						단위	: 백반 날려,	선 돈
연 도	대 중국 수입액	점유율 ¹ (%)	대 세계 수입 총액	점유율 ² (%)	대 중국 수입량	점유율 ¹ (%)	대 세계 수입 총량	점유율 ² (%)
1992	941.9	88.0	3,404.0	27.7	6,017.0	97.8	14,197.7	42.4
1993	906.2	86.5	3,839.2	23.6	6,568.5	96.1	18,276.0	35.9
1994	932.5	79.1	4,475.3	20.8	5,495.0	92.9	19,030.8	28.9
1995	396.3	54.6	5,537.6	7.2	935.1	56.8	20,003.0	4.7
1996	528.9	52.7	6,867.0	7.7	1,205.6	58.3	22,840.9	5.3
1997	933.5	61.1	6,284.7	14.9	4,457.5	80.7	21,613.5	20.6
1998	621.6	65.7	4,663.9	13.3	3,275.2	85.3	20,841.7	15.7
1999	551.6	47.8	4,681.3	11.8	2,382.3	71.1	22,206.9	10.7
2000	1,152.0	61.7	5,104.5	22.6	7,706.0	88.3	23,113.8	33.3
2001	846.1	49.2	5,325.3	15.9	4,388.7	79.7	23,247.0	18.9
2002	1,265.9	54.5	5,701.5	22.2	8,099.1	86.9	24,376.0	33.2
2003	1,764.0	63.6	6,212.7	28.4	10,354.4	90.2	24,301.0	42.6
2004	1,125.2	46.5	7,444.6	15.1	3,824.6	75.1	24,317.4	15.7
2005	1,757.0	55.7	7,397.4	23.8	7,815.5	86.3	24,765.5	31.6
2006	1,550.8	47.9	8,117.2	19.1	4,668.8	75.1	25,142.1	18.6
2007	2,375.2	56.9	10,089.0	23.5	7,320.3	83.9	25,973.9	28.2
2008	1,949.7	53.8	13,904.6	14.0	3,572.6	72.8	27,842.8	12.8
2009.1	157.8	52.6	906.7	17.4	264.1	53.7	1,664.3	15.9
2009.2	282.7	53.7	1,764.8	16.0	493.6	54.9	3,402.7	14.5
2009.3	439.0	53.1	2,656.8	16.5	763.6	53.8	5,189.9	14.7

주: 1. 한국의 대 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입총액 및 수입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한국의 대 세계 농산물 수입총액 및 수입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http://www.kati.net/web_trade/jsps/tr/tr19r1.jsp)

5. 한국의 대 중국 축산물 수출, 1992~2009.3

 연 도	대 중국 수출액	점유율 ¹ (%)	대 세계 수출 총액	점유율 ² (%)	대 중국 수출량	점유율 ¹ (%)	대 세계 수출 총량	점유율 ² (%)
1992	0.03	0.2	95.9	0.0	0.01	0.1	55.3	0.0
1993	0.1	0.3	89.1	0.1	0.02	0.1	23.8	0.1
1994	0.09	0.1	116.0	0.1	0.03	0.0	61.3	0.0
1995	1.1	0.7	155.5	0.7	0.7	0.4	76.7	0.9
1996	0.7	0.4	260.0	0.3	0.4	0.3	98.9	0.4
1997	1.9	0.9	319.9	0.6	1.0	0.4	125.1	0.8
1998	2.6	1.5	388.5	0.7	1.3	0.5	169.1	0.8
1999	3.1	2.1	407.8	0.8	1.2	0.6	167.4	0.7
2000	3.1	1.5	121.0	2.6	1.0	0.4	86.3	1.2
2001	3.8	2.3	117.8	3.2	1.0	0.5	110.1	0.9
2002	3.1	1.7	98.5	3.1	1.0	0.5	82.8	1.2
2003	3.3	1.4	119.5	2.8	1.4	0.6	92.6	1.5
2004	3.7	1.1	162.7	2.3	2.3	0.8	85.8	2.7
2005	6.2	1.8	172.7	3.6	6.1	2.3	95.9	6.4
2006	5.3	1.6	172.2	3.1	1.6	0.6	87.1	1.8
2007	6.8	1.5	181.0	3.8	2.0	0.5	93.0	2.2
2008	14.5	2.7	215.1	6.7	3.4	0.9	98.3	3.5
2009.1	0.3	1.1	9.2	3.3	0.1	0.6	4.2	2.4
2009.2	1.0	1.5	19.1	5.2	0.3	0.6	8.7	3.4
2009.3	2.2	2.1	30.2	7.3	0.6	0.8	13.2	4.5

주: 1. 한국의 대 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출총액 및 수출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한국의 대 세계 축산물 수출총액 및 수출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http://www.kati.net/web_trade/jsps/tr/tr19r1.jsp)

6. 한국의 대 중국 축산물 수입, 1992~2009.3

			ı		ı		, , , , , , , , , , , , , , , , , , , ,	
연 도	대 중국 수입액	점유율 ¹ (%)	대 세계 수입 총액	점유율 ² (%)	대 중국 수입량	점유율 ¹ (%)	대 세계 수입 총량	점유율 ² (%)
1992	27.6	2.6	874.4	3.2	4.6	0.1	435.7	1.1
1993	27.8	2.6	631.6	4.4	5.4	0.1	347.0	1.6
1994	37.2	3.2	932.3	4.0	8.9	0.1	453.7	2.0
1995	35.1	4.8	1,224.1	2.9	10.1	0.6	555.5	1.8
1996	40.8	4.1	1,240.1	3.3	15.6	0.8	518.6	3.0
1997	47.8	3.1	1,324.4	3.6	22.5	0.4	520.9	4.3
1998	13.8	1.5	756.0	1.8	7.2	0.2	348.9	2.1
1999	15.1	1.3	1,245.2	1.2	7.2	0.2	653.9	1.1
2000	23.4	1.3	1,676.2	1.4	12.3	0.1	771.7	1.6
2001	32.3	1.9	1,466.3	2.2	19.2	0.3	705.7	2.7
2002	43.0	1.9	1,948.5	2.2	19.0	0.2	902.1	2.1
2003	38.5	1.4	2,115.6	1.8	21.5	0.2	883.6	2.4
2004	38.3	1.6	1,755.3	2.2	23.4	0.5	711.9	3.3
2005	71.2	2.3	2,360.5	3.0	39.9	0.4	0.888	4.5
2006	93.5	2.9	2,748.5	3.4	48.8	0.8	1,065.1	4.6
2007	100.5	2.4	3,235.3	3.1	48.6	0.6	1,092.3	4.4
2008	85.0	2.3	3,352.2	2.5	35.0	0.7	1,004.3	3.5
2009.1	3.8	1.3	207.1	1.8	1.6	0.3	68.1	2.3
2009.2	6.7	1.3	393.3	1.7	2.7	0.3	135.1	2.0
2009.3	10.9	1.3	585.8	1.9	4.3	0.3	211.4	2.0

주: 1. 한국의 대 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입총액 및 수입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한국의 대 세계 축산물 수입총액 및 수입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http://www.kati.net/web_trade/jsps/tr/tr19r1.jsp)

7. 한국의 대 중국 임산물 수출, 1992~2009.3

			ľ	:			, , , , , , , , , , , , , , , , , , , ,	
연 도	대 중국	점유율 ^l	대 세계	점유율 ²	대 중국	점유율 ^l	대 세계	점유율 2
	수출액	(%)	수출 총액	(%)	수출량	(%)	수출 총량	(%)
1992	7.7	56.5	575.5	1.3	10.9	53.9	519.6	2.1
1993	17.9	52.3	450.0	4.0	20.7	60.3	445.3	4.6
1994	39.1	56.0	508.4	7.7	42.0	58.2	410.0	10.2
1995	48.9	30.5	499.8	9.8	66.5	41.9	355.9	18.7
1996	60.2	38.6	281.5	21.4	67.6	45.9	144.9	46.7
1997	36.5	18.2	251.2	14.5	36.8	15.4	157.5	23.4
1998	35.7	20.4	244.4	14.6	55.1	21.3	217.5	25.3
1999	49.2	33.0	268.7	18.3	73.5	37.3	204.2	36.0
2000	55.5	27.5	254.5	21.8	85.4	31.5	197.3	43.3
2001	36.5	22.2	210.0	17.4	52.1	23.6	157.0	33.2
2002	31.1	17.5	166.9	18.6	36.0	17.4	113.1	31.8
2003	46.0	19.4	177.1	26.0	43.9	17.9	114.1	38.5
2004	59.0	17.4	163.9	36.0	69.9	23.5	146.4	47.7
2005	40.5	11.9	150.0	27.0	26.3	9.9	92.1	28.6
2006	37.7	11.2	124.0	30.4	27.1	11.0	82.6	32.8
2007	30.4	6.7	128.3	23.7	21.1	5.6	84.4	25.0
2008	31.5	5.9	118.4	26.6	22.7	6.1	77.1	29.4
2009.1	0.6	2.1	8.0	7.5	1.0	5.7	5.7	17.5
2009.2	1.7	2.5	13.4	12.7	2.0	4.2	10.3	19.4
2009.3	2.7	2.6	19.7	13.7	2.8	3.8	15.7	17.8

주: 1. 한국의 대 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출총액 및 수출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한국의 대 세계 임산물 수출총액 및 수출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http://www.kati.net/web_trade/jsps/tr/tr19r1.jsp)

8. 한국의 대 중국 임산물 수입, 1992~2009.3

<u>연</u> 도	대 중국 수입액	점유율 ^l (%)	대 세계 수입 총액	점유율 ² (%)	대 중국 수입량	점유율 ¹ (%)	대 세계 수입 총량	점유율 ² (%)
1992	60.9	5.7	1,618.5	3.8	113.0	1.8	14,770.0	0.8
1993	74.3	7.1	2,268.8	3.3	244.7	3.6	9,245.2	2.6
1994	98.0	8.3	2,086.9	4.7	372.4	6.3	9,350.2	4.0
1995	165.9	22.9	2,249.6	7.4	655.9	39.8	10,114.8	6.5
1996	459.1	45.8	2,635.6	17.4	552.7	26.7	9,882.4	5.6
1997	226.6	14.8	2,497.7	9.1	661.1	12.0	10,248.7	6.5
1998	113.1	12.0	967.2	11.7	445.5	11.6	5,261.3	8.5
1999	180.9	15.7	1,478.2	12.2	666.4	19.9	8,524.7	7.8
2000	217.0	11.6	1,652.8	13.1	726.1	8.3	8,915.1	8.1
2001	279.9	16.3	1,656.7	16.9	629.6	11.4	9,580.9	6.6
2002	292.6	12.6	1,934.3	15.1	705.5	7.6	10,544.2	6.7
2003	297.7	10.7	1,892.9	15.7	636.4	5.5	9,861.9	6.5
2004	347.7	14.4	2,019.9	17.2	745.0	14.6	9,221.6	8.1
2005	388.3	12.3	2,130.7	18.2	695.9	7.7	8,882.4	7.8
2006	554.8	17.1	2,461.6	22.5	939.0	15.1	9,272.3	10.1
2007	625.0	15.0	2,858.2	21.9	810.8	9.3	9,553.7	8.5
2008	587.8	16.2	2,863.6	20.5	646.0	13.2	8,880.9	7.3
2009.1	65.3	21.8	186.7	35.0	138.4	28.1	623.7	22.2
2009.2	109.1	20.7	347.0	31.4	235.6	26.2	1,212.4	19.4
2009.3	186.3	22.5	565.8	32.9	431.5	30.4	1,945.0	22.2

주: 1. 한국의 대 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입총액 및 수입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한국의 대 세계 임산물 수입총액 및 수입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http://www.kati.net/web_trade/jsps/tr/tr19r1.jsp)

9. 한국의 대 중국 수산물 수출, 1992~2009.3

단위: 백반 달러, 선 돈								신 돈
연 도	대 중국 수출액	점유율 ¹ (%)	대 세계 수출 총액	점유율 ² (%)	대 중국 수출량	점유율 ¹ (%)	대 세계 수출 총량	점유율 ² (%)
1992	13.6	0.0	2,837.0	0.5	20.2	0.0	1,624.1	1.2
1993	34.1	150.3	2,645.4	1.3	34.3	69.4	1,452.4	2.4
1994	69.8	104.6	3,012.6	2.3	72.1	110.4	1,599.7	4.5
1995	160.5	129.8	3,418.8	4.7	158.6	120.0	1,640.8	9.7
1996	68.0	43.6	1,592.5	4.3	51.4	34.9	446.7	11.5
1997	114.9	57.3	1,494.2	7.7	132.5	55.4	510.3	26.0
1998	97.4	55.8	1,363.9	7.1	138.7	53.5	591.2	23.5
1999	59.1	39.6	1,518.4	3.9	53.2	27.0	475.7	11.2
2000	84.2	41.7	1,503.3	5.6	93.2	34.4	533.5	17.5
2001	55.8	33.9	1,271.8	4.4	53.7	24.3	435.2	12.3
2002	48.4	27.2	1,161.3	4.2	44.3	21.5	430.3	10.3
2003	71.0	29.9	1,130.8	6.3	55.9	22.8	425.2	13.1
2004	124.6	36.8	1,280.2	9.7	68.3	22.9	407.7	16.8
2005	108.6	32.0	1,194.3	9.1	65.7	24.6	412.9	15.9
2006	76.1	22.7	1,090.4	7.0	45.1	18.3	368.5	12.2
2007	157.5	34.8	1,227.5	12.8	143.0	38.1	537.0	26.6
2008	190.3	35.5	1,448.3	13.1	160.4	42.9	585.3	27.4
2009.1	10.6	37.3	115.0	9.2	8.4	47.7	56.8	14.8
2009.2	26.6	38.7	231.9	11.5	21.2	45.0	107.6	19.7
2009.3	39.2	37.2	347.1	11.3	33.1	44.5	163.9	20.2

주: 1. 한국의 대 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출총액 및 수출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한국의 대 세계 수산물 수출총액 및 수출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http://www.kati.net/web_trade/jsps/tr/tr19r1.jsp)

10. 한국의 대 중국 수산물 수입, 1992~2009.3

						271	. 70 27,	
연 도	대 중국 수입액	점유율 ¹ (%)	대 세계 수입 총액	점유율 ² (%)	대 중국 수입량	점유율 ¹ (%)	대 세계 수입 총량	점유율 ² (%)
1992	40.3	3.8	407.2	9.9	15.7	0.3	243.6	6.4
1993	39.7	3.8	519.3	7.6	15.5	0.2	350.4	4.4
1994	111.7	9.5	720.0	15.5	38.7	0.7	379.9	10.2
1995	128.4	17.7	827.8	15.5	46.5	2.8	413.5	11.2
1996	206.9	20.6	1,019.6	20.3	74.7	3.6	507.9	14.7
1997	272.1	17.8	1,050.7	25.9	117.3	2.1	528.8	22.2
1998	197.3	20.9	584.4	33.8	111.7	2.9	378.2	29.5
1999	406.6	35.2	1,159.0	35.1	292.8	8.7	741.6	39.5
2000	475.4	25.5	1,385.0	34.3	278.3	3.2	743.2	37.4
2001	621.4	36.1	1,630.9	38.1	467.3	8.5	1,055.2	44.3
2002	719.8	31.0	1,887.2	38.1	493.4	5.3	1,194.9	41.3
2003	714.1	25.7	1,964.1	36.4	465.2	4.1	1,245.5	37.4
2004	910.5	37.6	2,264.2	40.2	497.7	9.8	1,289.8	38.6
2005	938.5	29.7	2,387.1	39.3	509.8	5.6	1,270.5	40.1
2006	1,036.9	32.0	2,773.6	37.4	563.7	9.1	1,393.1	40.5
2007	1,072.7	25.7	3,059.8	35.1	543.9	6.2	1,405.4	38.7
2008	1,004.6	27.7	3,078.3	32.6	656.5	13.4	4,023.8	16.3
2009.1	72.9	24.3	238.0	30.6	87.8	17.8	356.0	24.7
2009.2	127.7	24.3	416.5	30.7	166.4	18.5	703.8	23.6
2009.3	190.6	23.0	630.0	30.3	220.2	15.5	1,054.0	20.9

주: 1. 한국의 대 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입총액 및 수입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한국의 대 세계 수산물 수입총액 및 수입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http://www.kati.net/web_trade/jsps/tr/tr19rl.jsp)

11. 중국의 농산물 도매시장 가격지수(월별), 2006~2009.3

 년 월			전체 농산물 E매시장가격 지 ·	 수	"채람자"농산물 도매시장가격 지수			
L E	₫.	기준대비	전년 동기대비	전월대비	기준대비	전년 동기대비	전월대비	
2006.	1	134.8	109.4	107.1	135.3	111.8	108.5	
	2	133.7	101.2	99.2	134.0	102.0	99.0	
	3	130.5	102.8	97.6	129.5	103.1	96.6	
	4	132.6	106.4	101.6	132.0	107.4	101.9	
	5	130.6	105.7	98.5	129.4	106.5	98.0	
	6	126.2	104.0	96.6	124.1	104.0	95.9	
	7	124.6	99.0	98.7	122.3	98.3	98.5	
	8	129.2	101.8	103.7	127.6	101.7	104.3	
	9	133.7	105.3	103.5	133.0	105.9	104.2	
	10	125.6	101.1	93.9	123.2	100.7	92.6	
	11	125.9	102.5	100.2	123.3	102.1	100.1	
	12	132.4	105.2	105.2	130.6	104.7	105.9	
2007.	1	134.3	99.6	101.4	132.9	98.2	101.8	
	2	136.0	101.7	101.3	134.4	100.3	101.1	
	3	136.6	104.7	100.4	135.1	104.3	100.5	
	4	136.0	102.6	99.6	134.3	101.7	99.4	
	5	136.8	104.7	100.6	135.2	104.5	100.7	
	6	143.5	113.7	104.9	142.6	114.9	105.5	
	7	148.0	118.8	103.1	147.8	120.9	103.6	
	8	151.6	117.3	102.4	151.9	119.0	102.8	
	9	150.1	112.3	99.0	150.0	112.8	98.7	
	10	149.8	119.3	99.8	149.7	121.5	99.8	
	11	149.6	118.8	99.9	148.9	120.8	99.5	
	12	152.1	114.9	101.7	151.4	115.9	101.7	
2008.	1	161.0	119.9	105.9	161.7	121.7	106.8	
	2	174.2	128.1	108.2	176.8	131.5	109.3	
	3	168.8	123.6	96.9	168.4	124.6	95.2	
	4	168.9	124.2	100.1	168.5	125.5	100.1	
	5	163.3	119.4	96.7	161.6	119.5	95.9	
	6	160.9	112.1	98.5	158.4	111.1	98.0	
	7	162.8	110.0	101.2	160.3	108.5	101.2	
	8	162.0	107.0	99.6	160.3	105.5	100.0	
	9	160.7	107.1	99.1	159.3	106.2	99.4	
	10	153.6	102.5	95.6	151.2	101.0	94.9	
	11	147.5	98.6	96.0	144.8	97.2	95.8	
	12	149.8	98.5	101.6	147.7	97.6	102.0	
2009.	1	158.5	98.4	105.4	157.0	97.1	106.3	
	2	159.2	91.4	100.4	158.4	89.6	100.9	
	3	160.0	94.8	100.5	159.5	94.7	100.7	

주: 기준대비지수는 2000년=100, 전년동기대비지수는 전년=100, 전월대비지수는 전월=100. 자료: 農業部. "全國農產品批發價格指數一月度指數"(http://www.agri.gov.cn/xxfb)

12. 중국의 농산물 도매시장 가격지수(일별), 2009.1~3

 날짜	전체 농산물 도매시장가격지수	"채람자"농산물 도매시장가격 지수	날짜	전체 농산물 도매시장가격지수	"채람자"농산물 도매시장가격 지수
1.1	154.1	151.6	2.18	158.3	157.4
1.2	153.8	151.3	2.19	156.4	155.1
1.5	154.2	151.6	2.20	156.8	155.4
1.6	159.2	157.8	2.23	157.1	155.7
1.7	155.3	152.9	2.24	157.1	156.7
1.8	155.7	153.4	2.25	158.7	157.4
1.9	156.0	153.8	2.26	158.4	157.4
1.12	157.5	155.6	2.27	159.3	158.4
1.13	158.3	156.6	3.2	158.7	157.8
1.14	159.1	157.6	3.3	159.7	159.0
1.15	159.9	158.6	3.4	159.6	158.9
1.16	159.4	158.6	3.5	160.1	159.4
1.17	159.8	159.0	3.6	160.3	159.7
1.18	160.8	160.2	3.9	160.3	159.7
1.19	160.8	160.2	3.10	160.1	159.6
1.20	161.4	160.9	3.11	160.7	160.3
1.21	162.6	162.3	3.12	160.8	160.4
1.22	163.0	162.8	3.13	160.4	160.0
1.23	164.2	164.2	3.16	160.7	160.4
2.2	163.5	163.4	3.17	161.3	161.1
2.3	163.8	163.7	3.18	161.2	160.9
2.4	162.3	162.2	3.19	160.3	159.9
2.5	161.4	161.1	3.20	160.1	159.6
2.6	160.9	160.5	3.23	158.6	157.9
2.9	160.3	159.8	3.24	158.5	157.7
2.10	158.6	157.8	3.25	159.1	158.5
2.11	158.0	157.0	3.26	159.2	158.6
2.12	158.4	157.2	3.27	159.6	159.0
2.13	157.9	156.9	3.30	159.9	159.4
2.16	157.9	156.9	3.31	161.0	160.6
2.17	158.4	157.5			

_____ 주: 기준연도 2000년=100

자료: 農業部. "全國農產品批發價格指數一日度指數"(http://www.agri.gov.cn/xxfb)

E 09-2009-01

중국농업동향(봄호) 제2권 제1호/통권5호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09. 4. 30.

발 행 2009. 4. 30.

발행인 오세익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 쇄 (주)문원사

02–739–3911~5 E–mail: munwonsa@chol.com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